

일시

장소

2019

06.21^{FRI}
|
22^{SAT}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19년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초국가적 이민

주최 한국이민학회 | 주관 전남대학교 BK21+글로벌 디아스포라 사업팀, 전남대학교 다문화사회 연구소 | 후원 한국이민재단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이민학회에서는 2019년 6월 21일(금)-22일(토)에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이민학회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BK21+글로벌 디아스포라 사업팀, 전남대학교 다문화사회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이민재단이 후원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재외동포법 제정 20주년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면서, 미래 20년과 100년을 설계하는 작업이 긴요합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학술회의의 대주제를 ‘초국가적 이민’(transnational migration)이라 설정하였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의 이민 양상은 과거와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달라졌고, 또 한국사회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이민 수용과 통합의 필요성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재한조선족동포, 이민의 정치경제, 이민과 소통,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유학생 등 여섯 개 세션에서 16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해석을 담은 발표를 토대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한국이민학회 회장 설동훈

JUNE 21, FRIDAY

13:00 – 13:20 학술대회 등록

13:20 – 13:30 개회사 및 축사

13:30 – 15:30 세션1 재한조선족동포 장소 교수회의실 / 사회 이정은 (창원대학교)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변화와 최근 이슈들

발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토론 송영호 (IOM이민정책연구원) 05

중국동포 밀집지역 자율방범대 활동과 역할

발표 황용화 (중국동포 밀집지역 자율방범대) 토론 한준성 (한양대학교) 19

국내 중국동포 차세대 실태

발표 강미선 (서울대학교) 토론 박천웅 (전북대학교) 21

세션2 이민의 정치경제 장소 135호실 / 사회 김경학 (전남대학교)

재미한인의 주류화

발표 윤인진 (고려대학교) 토론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23

미국 – 멕시코 장벽 건설의 이민 정치경제학적 함의: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을 중심으로

발표 김영술 (전남대학교) 토론 이충훈 (전북대학교) 47

Recent trends of Migration to Rwanda: Policy and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발표 Ntegamaherezo Emmanuel (전남대학교) 토론 김철호 (전북대학교) 73

세션3 이민과 소통 장소 136호실 / 사회 한건수 (강원대학교)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의 언론 뉴스 내용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사를 중심으로

발표 안형준 (전북대학교) 설동훈 (전북대학교) 토론 신지원 (전남대학교) 93

페이스북 그룹 중심으로 본 다국적 이주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발표 Ines Miranda de Dios (전남대학교) 토론 신난딩 (전남대학교) 95

사이버공간에서 '맞는 장소' 찾기: 온라인 공동체의 이주 사례 연구

발표 윤지원 (서울대학교) 토론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109

15:30 – 15:50 휴식

15:50 – 17:50 세션4 이주노동자 장소 교수회의실 / 사회 이해경 (배재대학교)

이주노동자 고용주 제재 방안

발표 김철호 (전북대학교)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토론 서선영 (연세대학교) 133

계절노동자제도의 현황과 쟁점: 캐나다와 한국의 비교

발표 송영호 (IOM이민정책연구원) 한준성 (한양대학교) 토론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135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시사점

발표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한준성 (한양대학교) 155

세션5 이주아동 장소 135호실 / 사회 윤인진 (고려대학교)

아동친화도시는 다문화(이주) 아동을 고려하고 있는가?: 놀이권과 놀이공간을 중심으로

발표 백일순 (서울대학교) 토론 선봉규 (전남대학교) 183

이주배경 청년의 배움터를 거쳐 일터에서 겪은 경험

발표 최희진 (서울대학교) 토론 박천웅 (전북대학교) 241

세션6 유학생 장소 136호실 / 사회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초국적 연결망과 학생 이동성: 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을 중심으로

발표 김도혜 (대구대학교) 최희정 (전북대학교) 토론 전의령 (전북대학교) 249

한국 내 인도출신 연구자의 노동 경험: 노마드성 인재인가 불안정한 노동자인가?

발표 현채민 (성균관대학교) 이상지 (서울대학교) 토론 지충남 (전남대학교) 273

17:50 – 18:10 총회

JUNE 22, SATURDAY

10:00 – 14:00 광주 고려인 마을 현장답사

학술대회 참가등록

등록비 정회원 3만원 / 준회원 1만원 (등록비에는 만찬과 학술대회 자료집이 포함됩니다.)

기타사항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2019년도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 회 비 정회원 5만원 / 준회원 3만원

납부방법 · 현장납부

· 계좌이체 IBK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한국이민학회

오시는 길



- 고속버스 · 시외버스 이용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풍암26, 첨단30, 상무64, 518 탑승 → 전남대 정류소(정문) 하차

- 철도편(광주역) 이용시

첨단30, 금남57, 두암81(상행), 일곡 180, 518 탑승 → 전남대 정류소(정문) 하차

- 철도편(KTX-송정역) 이용시

송정리역 정류장에서 좌석02, 송정19, 일곡 38 탑승 → 전남대 정류소(정문) 하차

※ KTX를 이용하실 분들은 송정역에서 전남대까지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송정역에서 환승하여 광주역까지 오시는 철도편을 추천해드립니다.

SESSION 1

중국동포 밀집지역 변화와 최근 이슈들

김 용 필 (동포세계신문)

I. 대표적인 중국동포 밀집지역은?

- 서울권: 가리봉동, 대림동, 자양동, 종로구(창신동, 동대문일대), 천호동, 신대방동, 구로동, 신림동 재래시장을 끼고 확장
- 경기권: 수원 팔달구(지동, 고등동, 매산동) 안산 원곡동, 화성 발안, 군포(금정역), 시흥 정왕동, 부천(소사, 부천역), 부평(부평사거리시장) 신흥 밀집거주지역으로 부상, 평택항
- 충청권: 천안, 아산, 진천 등

중국동포들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몰려 거주하고 있다. 충청권도 지하철 노선을 따라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인노동자와는 달리 밀집거주지역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신집거지로의 이주현상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장기체류자의 정착이 트렌드화 되면서 빌라, 아파트를 매매해 거주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형 신축빌라를 매매해 살고 있는 중국동포가 많아지고 있다.

II.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 형성 변화(연도별) 분석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안산 원곡동 1988년 처음 중국동포 거주 시작

1992년 한중수교/ 1993년 연수제 도입(산업연수제+기업연수제)으로 중국동포 입국자 증가

- 노태우 대통령 200만호 주택건설 공약 시행

(1989년 4월 27일 5개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90만호 서울내 110만호 지방도시)

분당 9만7500호, 일산 6만9000호, 중동/평촌/산본 각각 2만5천호 씩 신도시 건설
신도시 아파트 건설 붐으로 건설인력이 많이 필요로 할 때 1992년 한중수교와
1993년 연수생 제도 도입과 맞물려 중국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건설현장에서 일
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신도시 건설현장과 가까운 지역에 집거지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곳이 1990년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을 이룬 경기도 고양
시 일산동, 성남시 수진동,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일대를 꼽을 수 있다.

1996년 - 국내거주 중국동포 14,213(4,868)명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 2000년대 - 친척초청범위 확대 (취업관리제 f-1-4 시행)

2001년 - 국내 거주 중국동포 101,068 (55,193) *실제 불법체류자는 10만명추산

2002년 - 한일월드컵 개최 앞두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시 임시합법화 조치 시행
으로 외국인 25만6천여명 자진신고(그중 중국동포 10만명에 이름). 이를 계기로 안산
원곡동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이 대표적인 밀집거주지역으로 부상하였다.

물론 1호선 수원역을 끼고 있는 매산동, 지동, 고등동에, 부천역을 낀 소사지역 등
에 중국동포 식품점, 식당 등이 생기고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지만 눈에 띄게
많은 곳은 안산 우원곡동과 가리봉동이었다.

중국식품, 중국식당(양꼬치, 연변 개고기집), 국제전화카드 판매소(전화방), 환전
소, 직업소개소, 노래방, 다방 (노래방과 다방에 중국동포 여성 도우미)이 눈에 많이
띄는 상호였다.

△ 가리봉동에 중국동포들이 많아진 이유

- 1) 방값이 저렴한 쪽방(별집)이 많은 지역
- 2) 대표적인 건설인력시장 (남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음)
- 3) 1호선 가리봉역(2005년 이후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남구로역 연결로 교통 편리
- 4) 마리오아울렛, 봉제공장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안산 원곡동에 중국동포들이 많아진 이유

- 1) 반월공단, 시화공단 인접한 지역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많아짐
- 2) 건설인력

2003년 -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과 동시에 임시합법화 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로 또다시 전락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많아짐,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 이때 가리봉동, 안산 원곡동 등 외국인과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동포 이산 현상 뚜렷이 나타났다.

가리봉동 거주 중국동포 다른 지역으로 이주 분산, 이때 새로운 거주지로 형성된 곳이 신림동, 신대방동, 자양동 새로운 뒷골목길에 중국식당, 식품점이 들어서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2005년 1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시행으로 단순 불법체류 중국동포 5만8천여명 자진출국, 2006년 2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시행으로 불법입국 중국동포 2만 5천여명 자진출국 2005년 2006년 2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으로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이 해소되고

2007년 방문취업제 본격시행으로 무연고 동포들도 들어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체류 중국동포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맞기 시작했다.

중국동포 관련 비자정책은 07.3 방문취업제 시행, '09.12 재외동포 비자발급확대, '10.7 재외동포기술연수제 도입 등으로 2011년 국내 체류 중국동포는 470,570(17,284)에 이른다. 이 당시 전체 체류외국인 1,395,077(167,780)이었다.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동포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안산 원곡동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 가리봉동은 균형개발촉진지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규 투자, 시설 개선 등이 규제되고 있어서 침체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 대림동과 자양동(당시 노유동)은 중국동포 상업투자가 본격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또한 시흥시 정왕동, 수원 고등동에서 중국동포 상업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2010년 이후 중국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식당 창업을 지원해줌으로써 30대 젊은 사장 등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면 중국에 돈을 부치거나 중국 도시 내에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동시에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 산둥성 청도에서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홍보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2010년경에는 한국 인천, 평택과 가까운 중국 산둥성 위해시 룡천시, 석도에 부동산 투자가 늘었고 북경, 상하이 등 대도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둔 동포들도 많았다.

△아래는 2008년 8월 기준 서울지역내 주요 중국동포 집거지 형성 비교한 표이다.(김용필)

지역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광진구 자양동 (구 노유동)
형성 시기	1990년중반부터(2010.4재개발예정), 2002년 중반부터 활성화	2000년초부터 2005년부터 활성화	2004년부터 조성 2007년부터 활성화
거주 인구 (08.8월 말 기준)	구로구내 외국인 28천여명(조선족 25천여명)/ 가리봉동 조선족 약 7천5백여명	영등포구내 외국인 35천여명(조선족 32천여명), 대림동 조선족 약1만명	광진구내 외국인 11천여명(조선족 8천3백여명), 자양동 조선족 약 2천3백명
주요 상가 건물	식당가, 노래방,건설인력소개소, 건두부공장 가리봉시장	식당가, 식품점, 직업소개소, 목욕학원, 여행사, 행정사, 병원, 대림중앙시장	식당가(양꼬치 거리) 노론시장
특징	1) 저렴한 쪽방 다수 동포 집중거주지, 2) 연변출신 조선족여성들이 식당 운영을 많이 함. 3) 이곳에서 초창기 장사를 시작하여 타지역으로 사업확장한 상인들 많음, 4) 초기입국자, 건설노동자 다수	1) 2,7호선 환선지역, 교통편리, 가리봉동과 인접지역 2)가리봉재개발에 따라 제2의 고향으로 부상, 방값(보증금 500~1000만원/월세 20~30만원대), 3) 지속적인 상권확대 유입인구증가 4) 가족단위 거주자 우세,	1) 2,7호선 환선지역, 교통편리, 2)성수공단 인근지역, 주거지는 제한되어 있지만 대학가, 중국유학생, 중국에 다녀온 한국인 고객 유동인구 많음, 3)강남 근무 동포들 거주, 생활계층(上)

2012년 ‘12.4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재외동포 자격부여 등 동포정책 실시 국내 체류 중국동포 467,981/ 이중 재외동포(F-4)체류자 증가 함 (H-2:267,345 / F-4 : 101,422)

2014년부터 F-4/H-2 동포 체류자의 자녀동반이 가능해져 중도입국 중국동포 청소년 증가하게 되고 2015년 4.13일부로 F-4/H-2 동포 체류자의 외국인 배우자 F-1부여로 조선족이 아닌 한족 등 타민족 배우자 입국 늘어나기 시작한다.

2015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중국국적 조선족 65만명/한국국적 취득자 1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 방문취업(H-2) 281,065명, 재외동포(F-4) 234,873명, 영주자격(F-5)는 79,479명이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와 영주자격자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국동포들의 거주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Ⅲ. 재한 중국동포 집거지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2015년 이후 국내 체류 중국동포 사회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정착하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중국 부동산을 처분하고 한국 부동산 매입 현상이 두드러지고 가족단위의 한국생활자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신축빌라를 매입해 사는 가구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부천지역과 인천 부평지역에 중국동포 거주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홍보 매매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동포는 ‘큰손’ 중국인을 끌어들이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중국동포 집거지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극단화 되어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2004년~2007년경 가리봉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와 관련된 연변 흑사파 검거 등 사건과 2012년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등이 소재가 되어 한국영화계에서는 황해(2010) 신세계(2012), 차이나타운(2014) 청년경찰(2017), 범죄도시(2018) 등으로 중국동포를 청부살인, 야만인, 장기매매 범죄자 등으로 악의 무리로 그리는 영화를 상영하기 시작한다. 이것에 대해 중국동포단체들은 2017년 <청년경찰>과 <범죄도시> 상영 등을 계기로 대림동 등에서 반발시위를 하게 되어 한국언론의 관심을 받기에 이른다.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위험한 범죄지역, 중국동포에 대한 폄하 등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미지화 되면서 내국인의 중국동포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침체된 지역을 활기찬 곳으로 바꾸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VS “내국인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고 있다” 는 이야기가 쌍벽을 이룬다.

가리봉동, 대림동, 안산 원곡동의 경우 중국동포 등 외국인 유입이 늘어남과 동시에 내국인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특히 초중고 학생을 둔 내국인 학부모들이 아이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이곳 학교에 내국인 학생 수가 줄고 중국동포 자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

Ⅳ. 2018년 이후 변화 현상- 기존 중국동포 집거지의 다변화 현상 뚜렷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은 초창기 조선족 거리-중국인마을- 新 차이나타운 또는 동

남아시아, 고려인 집거지(상업거리)로 혼재해 다변화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해 보았다.

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무비자 재입국 5년 복수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 중국동포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중반 이후 한국언론에서도 가리봉동 남구로역 건설현장 새벽인력시장 풍토가 변화되었다는 보도를 자주 보게 된다. 중국인(한족)들이 들어와 건설현장 일을 많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동포 하루 일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에 거래된다면 중국인 일당은 5만원에서 10만원 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2) 이와 맞물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서 불법 인력 단속을 강화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있는 중국동포들이 큰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해 속상하다는 말도 자주 듣게 된다. 건설노조의 대기업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의 율타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3) 또한 문제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국동포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말을 한다. 4, 50대 여성들의 경우 강남 등 식당에서 일할 경우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일당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직업소개소 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주들이 인력고용자 수를 줄이고 확실히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이로 인해 직업소개소 사장들도 돈벌이가 많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4) 이런 변화 속에서 가리봉동, 대림동에는 중국동포 인력이 아니라 중국인, 동남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력소개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번기를 맞이하여 일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소개가 주를 이룬다. 이 일당으로 농촌으로 가서 일할 중국동포는 없다. 그밖에 중국인들은 일당 9만원 선에서 식당 설거지 일 등을 소개받고 식당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단기체류하며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중국동포들은 이미 한국인 수준의 일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인 고용주들은 단순노무 인력해소를 위해 중국동포 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단순노무 업무 분야에서 중국동포도 일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내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소비력이 약하고 식당에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식당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여기에 그동안 중국동포를 주 대상으로 장사를 해온 지역의 중국동포 식당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V. 최근 중국동포 집거지(상권) 내 분위기 분석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현재: 중국동포들이 줄고 중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난 현상이 뚜렷하다.

향후: 인접 디지털단지(구 구로공단) 활성화와 남부순환도로 고가도로 철폐 등 주변환경 변화와 건물주들이 쪽방을 없애고 빌라를 신축하면서 거주환경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자 하는 중국동포들이 신축빌라를 매입해 입주해 사는 경우도 많지만 디지털단지 내 젊은층 내국인을 위한 청년임대 아파트 공사 등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지역으로 변화가 될지 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다.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현재: 2018년 tvN 빅포레스트, 2019년 사시IN 대림동 신년특집기사, KBS1 거리의 만찬 등으로 新차이나타운으로 두각되면서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 중국인들의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서울 속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 중심가로 부상해 발전하고 임대료, 권리금 등 부동산이 폭등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반면 대림동 거주 중국동포들이 수원, 부천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도 두드러진다는 평가이다. 임대료 부담이 늘고 집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해 살고자 하는 중국동포들이 아예 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해 이주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대림동이 지속적으로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으로 발전할 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2015년 이후 대림동에 고비용을 들여 상가를 오픈 한 중국동포 상인들이 기대만큼 수익창출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렇다고 현재 대림동에는 이런 저런 중국동포 단체가 있지만,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상권을 유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유력한 상인회 등 단체가 잘 형성되지 않고 있다. 대림동에는 비자업무, 일자리 소개, 법률고충상담소, 은행 등 중국동포, 중국인, 외국인 업무 중심지로 중국동포, 중국인에 이어 동남아 외국인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신 차이나타운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업 발달로 대림동의 시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현재: 60여 중국동포 상가들이 건대차이나타운상인협회를 만들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부터는 매년 양꼬치 거리축제를 개최해 양꼬치 거리로 특화된 지역이미지가 있고, 중국동포 보다는 중국유학생, 내국인, 외국인이 찾는 상업거리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자양4동 내 양꼬치거리를 이루는 지역에서 패션 전문 로데오거리까지 상권이 확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향후: 중국동포 상권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이곳에서 자수성가한 중국동포들이 외지로 나갔다가도 이곳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으며 30대 사장들이 많다. 그리고 상인회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으면서 1년에 두 차례 단합대회, 양꼬치거리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자녀들의 중국어 교육을 위한 주말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중국동포 상인회의 결속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보인다.

○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일원

현재: 수원역 앞 구도심으로 전에는 교통요충지였고 경기도청 등 관공서가 위치해 있고 팔달문 등 관광지 배후지역으로 주택가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매산시장, 역전시장, 로데오거리, 남문시장이 주변에 있어 전통시장이 주변에 있다. 수원시의 영통, 동수원, 광고 신도시 개발로 지역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고 지역민의 이주가 많은 곳이다. 이곳에 중국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고등동 일대는 제2의 대림동이라 할 정도로 중국동포 상가거리를 이루고 있고 거주자도 많다.

향후: 수원역 일대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주말, 공휴일, 명절, 휴가철 등에는 중국동포, 동남아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수원역 앞 역전시장, 매산시장은 중국식당, 식품점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식당 등 만남의 장소로 급속히 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현재: 외국인 이주민 2만 7천명, 내국인 3천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다국적 마을이다. 안산시는 다문화특구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특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별다른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 반월공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의 배후지로, 중국동포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동남아시아 상권이 구분되어 형성되어 있다. 중국동포는 원곡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외국인은 공장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동포들은 원곡동 인접지역 신길동 선부동 신축빌라에 입주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곡동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큰 변화상이다.

향후: 원곡동 중국동포 상권은 중국동포를 주대상으로 장사를 하여 상권을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동포들보다 고려인 동포들 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국동포 상권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상하고 있다. 임페리어 등 고려인 유통,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 중국동포 노동자 집거지가 고려인 동포 집거지로 변화해가고 있는 지역도 있다.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 차츰 고려인 동포들이 들어와 차지해 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년 전부터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입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고려인 동포들은 자녀동반 거주가 허용되면서 자녀와 부모까지 들어와 가족단위로 생활을 하다보니 원룸보다 투룸을 선호한다. 투룸을 갖춘 저렴한 주거지를 찾다보니 지하철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방값이 저렴한 투룸 구조를 가진 주택에서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고려인은 한국말을 잘 못해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 김포시 월곶동 등에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들어, 학교에도 고려인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 아산 지역도 고려인이 많이 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VI. 2019년 최근 이슈들은?

1) 중국-미국 간 무역전쟁

2017년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어 중국동포들이 심적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은 경험에 있다. 2019년 들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한중관계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 됨에 따라 중국동포 사회도 영향을 받고 있다.

2) 중국인 입국과 불법취업

한국경제의 침체는 중국동포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동포 밀집거주지는 중국동포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야 소비도 늘고 지역상권 경제도 활성화 된다.

가리봉동, 대림동 중국인들이 늘었지만 지역상권과 경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는다. 중국동포 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중국동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한 중국인들은 돈을 잘 쓰지 않는 성향이 라 식당 매출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3) 외국인의료보험 제도변경

7월 16일부터 외국인의료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국 체류 6개월 전까지는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고 6개월 후면 의무가입자가 된다. 이런 의료보험 가입 제도 변경으로 지역보험가입자는 까다로워진 것이다.

4)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동포의 경우 한글이름을 병기해 주기 시작했다.

5) 방문취업제 6주기술교육 폐지 이후 방문취업 비자발급

6주 기술교육 폐지에 따른 방문취업 비자발급을 7월부터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 해주게 된다.

6) 재외동포(F-4) 자격변경과 취업활동

재외동포 체류자는 단순노무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순노무종사를 하다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거나 만 60세 이상자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순노무일 근무 시 적발될 경우 고액의 벌금 부과

7) 영주자격 부여 기준 강화

8) 중국동포 집거지 내 쓰레기 문제...쓰레기 무단투기 중국동포냐? 지역주민이냐? 논쟁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동의 경우 3년전부터 구청은 중국동포들을 유급 단속요원으로 선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노력을 벌이고 있으면서 환경정화운동과 현장 감시를 하고 있다.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동포에 의하면 실제 중국동포 보다 내국인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 많다고 말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 등이 후에 체류연장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소문 등으로 중국동포들의 경우 한국 법을 어기지 않고 조심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VII. 결론

재한중국동포 집거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완전히 한국사회에 동화되어갈 것”이라는 입장과 “중국인화 되어 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경우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중국동포에 의해 형성된 상권은 차이나타운 상권으로 굳혀가는 곳도 있고, 다문화 다국적 상권과 혼재해 존재해 가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국내 입국 외국인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입국자 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해외 이주자 증가 등으로 국내 인구 감소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동포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신분으로 초창기 이주자 그룹으로 차별도 많이 받으면서 자립갱생하여 다문화, 상호문화 이해에 선두적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은 신규 입국하는 중국인은 물론 고려인과 외국인들의 집거지, 상업지역으로 나아가는데 자양분, 토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SESSION 1

중국동포 밀집지역 자유헌법대의 활동과 역할

황 용 화 (중국동포 밀집지역 자유헌법대)

SESSION 1

국내 중국동포 차세대 실태

강 미 선 (서울대학교)

국내 중국동포 전문직 종사자들은 201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이들은 한국의 1차 노동시장의 다양한 분야에 편입되었다. 때로는 이들만의 별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 중국동포 사업가 집단 역시 201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양적 팽창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동포 집거지를 주요 기반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2015년 현재 사업 외연의 확장과 공간적 범위의 확장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모의 확대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유학생이 차세대의 주요 대상으로 분류되던 데로부터 전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새로운 재한 중국동포 차세대 집단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전문직, 사업가, 일반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차세대 집단이 재한 중국동포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이들의 경제적 지위, 사회참여의 양상,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조선족 차세대의 사회경제적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강미선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재한조선족 체류현황
- 3 실태조사 자료 분석
- 4 나아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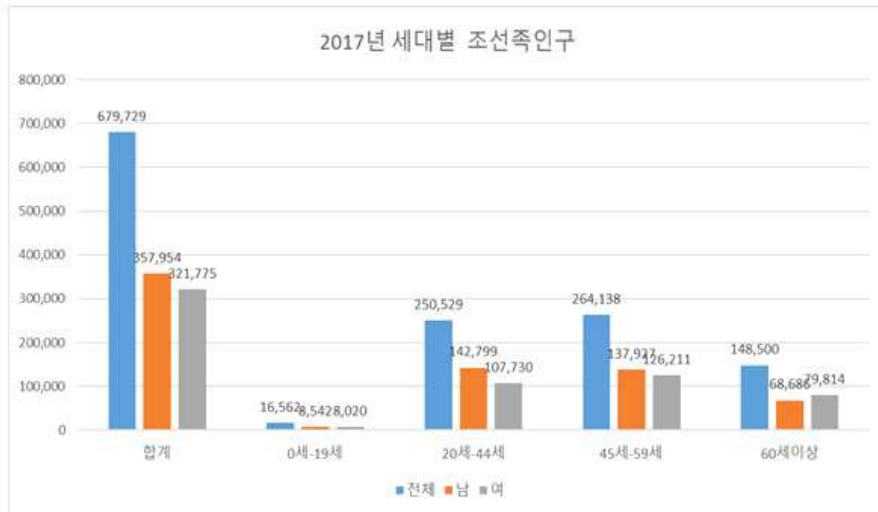
1. 들어가며

- ◆ 재한 조선족 사회는 20여 년 동안의 변화를 거쳐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으로 분화됨
- ◆ 차세대 용어는 초기 유학생집단을 지칭했음
- ◆ 2007년도 방문취업사증 및 재외동포사증 발급 시작과 함께 조선족인구 규모 확대
- ◆ 전문직, 사업가 등 새로운 집단의 출현
-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 재한중국인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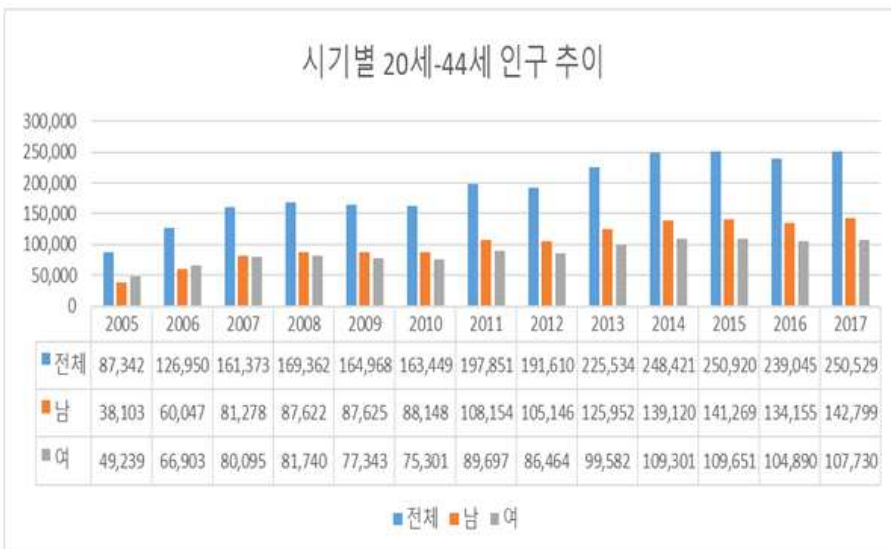
1. 들어가며

- ◆ 법무부통계
 - 재한조선족 연도별 체류인구(연령 및 성별)
- ◆ 2013년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수집된 것
 - (1) 차세대: 18세~43세 (1995년생~1970년생)
 - (2) 기초적 정보: 성별, 연령, 학력
 - (3) 직업구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2. 재한조선족 체류현황



2. 재한조선족 체류현황



2. 재한조선족 체류현황



3. 실태조사 자료

- 성별, 연령, 학력 등 기초정보

<표 1> 성 별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54)	전문직 (N=109)	사업가 (N=67)
남	55.8	40.4	56.7
여	44.2	59.6	49.1

<표 2> 연령 평균

(단위 : 세)

구 분	일반근로자 (N=147)	전문직 (N=109)	사업가 (N=60)
연령평균	31	31	33

3. 실태조사 자료

<표 3> 학력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55)	전문직 (N=108)	사업가 (N=60)
무학	0.6	1.9	--
소학교	4.5	2.8	6.0
초중	12.3	0.9	3.0
고중(중전포함)	48.4	15.7	35.8
2-3년제 전문대학	11.6	12.0	25.4
4년제 대학교	17.4	26.9	23.9
대학원 이상	5.2	39.8	6.0

3.1 경제활동 현황

<표 4> 수입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47)	전문직 (N=109)	사업가 (N=60)
100만원 이하	3.4	1.8	--
100~200만원	60.5	43.1	45.0
200~300만원	19.7	30.3	1.7
300~400만원	6.8	11.9	13.3
400~500만원	.7	10.1	15.0
500만원 이상	--	2.8	20.0
월수입 없음	8.8	--	5.0

3.1 경제활동 현황

<표 5> 일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일반근로자 (N=130)	전문직 (N=101)	사업가 (N=25)
평균 근로 시간	10.28	8.98	10.04

<표 6> 소비, 저축, 송금 평균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한국소비 평균	90.53 (N=133)	109.79 (N=96)	106.39 (N=57)
한국저축 평균	63.19 (N=113)	90.34 (N=73)	105.58 (N=52)
중국송금 평균	17.61 (N=101)	16.25 (N=56)	21.07 (N=28)

3.1 경제활동 현황

<표 7> 보험 가입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4대보험	30.8 (N=143)	64.1 (N=92)	44.8 (N=67)
기타보험	31.6 (N=155)	19.3 (N=109)	50.7 (N=67)
가입하지 않음	43.4 (N=145)	23.9 (N=92)	13.4 (N=67)

3.1 경제활동 현황

<표 8> 집세 부담금 평균

(단위 : 만원)

구 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전세 보증금	5681.82 (N=33)	16076.92 (N=26)	10333.33 (N=12)
월세 보증금	898.84 (N=86)	1541.93 (N=57)	1506.25 (N=48)
월세	32.83 (N=87)	34.62 (N=58)	42.04 (N=48)

3.2 여가와 소비

<표 9> 중국친구 외식 장소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55)	전문직 (N=109)	사업가 (N=67)
조선족 집거지의 고향음식을 파는 곳	63.9	56.9	71.6
일반 지역의 고향음식을 파는 곳	9.0	15.7	4.5
조선족 집거지의 한국음식을 파는 곳	1.9	0.9	--
일반 지역의 한국음식을 파는 곳	12.9	18.3	23.9
고향 친구들과 만나지 않는다	1.3	--	--
기타	10.9	8.3	--

3.2 여가와 소비

<표 10> 한국친구 외식 장소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55)	전문직 (N=109)	사업가 (N=67)
조선족 집거리의 고향음식을 파는 곳	12.9	6.4	31.3
일반 지역의 고향음식을 파는 곳	4.5	7.3	--
조선족 집거리의 한국음식을 파는 곳	3.9	0.9	10.4
일반 지역의 한국음식을 파는 곳	45.3	67.0	43.3
한국인 친구가 없다	0.6	4.6	--
기타	32.9	13.8	14.9

3.2 여가와 소비

<표 11> 월 평균 외식횟수

(단위 : 번)

구 분	일반근로자 (N=139)	전문직 (N=99)	사업가 (N=59)
외식횟수 평균	3.28	4.11	3.16

3.2 여가와 소비

<표 12> 미디어 접촉 빈도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텔레비전	80.9 (N=152)	72.5 (N=109)	77.7 (N=67)
라디오	16.5 (N=151)	23.8 (N=105)	18.9 (N=58)
신문	33.6 (N=150)	41.7 (N=108)	50.8 (N=65)
인터넷	76.8 (N=155)	88.8 (N=109)	69.7 (N=67)
핸드폰	83.0 (N=153)	88.1 (N=109)	68.6 (N=67)

3.2 여가와 소비

<표 13> 미디어 접촉 내용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뉴스	72.5 (N=153)	88.1 (N=109)	88.1 (N=67)
드라마·영화	69.9 (N=153)	72.9 (N=109)	74.7 (N=67)
예능·오락·음악·스포츠	85.5 (N=145)	76.7 (N=107)	82.2 (N=67)
홈쇼핑·광고	37.9 (N=153)	30.5 (N=105)	26.9 (N=67)

3.3 사회 참여

<표 14> 단체 참여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중국동포 종교단체	13.8 (N=152)	9.9 (N=101)	22.4 (N=67)
중국동포 비종교단체	18.7 (N=150)	36.1 (N=108)	26.9 (N=67)
한족 종교단체	2.0 (N=150)	2.1 (N=97)	--
한족 비종교단체	2.6 (N=150)	6.2 (N=98)	--
한국인 종교단체	6.0 (N=150)	19.9 (N=101)	--
한국인 비종교단체	7.4 (N=150)	12.6 (N=103)	10.4 (N=67)

3.3 사회 참여

<표 15> 모임 및 단체 참여 - 노동자모임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45)	전문직 (N=95)	사업가 (N=67)
5회이하	7.6	3.2	--
6~10회	0.7	3.2	--
10회이상	2.8	--	16.4
내가 단체 운영	8.3	--	--
참여하지 않음	80.7	93.7	83.6

3.3 사회 참여

<표 16> 모임 및 단체 참여 - 직장인모임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48)	전문직 (N=99)	사업가 (N=67)
5회이하	18.2	29.3	--
6~10회	2.0	9.1	10.4
10회이상	5.4	7.1	--
내가 단체 운영	--	2.0	--
참여하지 않음	74.3	52.5	89.6

3.3 사회 참여

<표 17> 모임 및 단체 참여 - 사업가모임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45)	전문직 (N=91)	사업가 (N=67)
5회이하	1.4	8.8	--
6~10회	--	1.1	--
10회이상	9.0	1.1	13.4
내가 단체 운영	--	--	--
참여하지 않음	89.7	89.0	86.6

3.3 사회 참여

<표 18> 불이익 대처 하지 않는 비율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SNS를 통한 의견	69.7 (N=155)	68.8 (N=109)	67.2 (N=67)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의견 제기	86.8 (N=153)	81.5 (N=101)	100.0 (N=67)
민원 접수	82.2 (N=152)	90.7 (N=108)	97.0 (N=67)
집합행동 조직 혹은 참여	84.2 (N=152)	87.7 (N=106)	83.6 (N=67)

3.4 사회에 대한 인식

<표 19> 기관 신뢰 평균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전문직	사업가
정 부	2.57 (N=108)	2.52 (N=85)	2.65 (N=41)
의 회	2.48 (N=83)	2.31 (N=75)	2.30 (N=41)
언 론	2.37 (N=89)	2.20 (N=76)	2.76 (N=41)
기 업	2.38 (N=104)	2.56 (N=79)	2.49 (N=38)
경 찰	3.04 (N=109)	2.73 (N=84)	3.07 (N=42)
시민단체	2.59 (N=90)	2.53 (N=66)	2.84 (N=38)

3.4 사회에 대한 인식

<표 20> 차별 이유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37)	전문직 (N=91)	사업가 (N=57)
국적	40.1	48.4	56.1
조선족	54.0	62.6	56.1
언어	25.5	37.4	17.5
학력	8.0	3.3	--
경제적 지위	5.1	6.6	24.6

3.4 사회에 대한 인식

<표 21>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일반근로자 (N=137)	전문직 (N=91)	사업가 (N=57)
차별과 소외가 매우 심한 사회	31.8	42.2	32.8
차별과 소외가 조금 심한 사회	40.9	43.1	50.0
배려와 포용이 조금 큰 사회	9.7	2.8	6.3
배려와 포용이 매우 큰 사회	0.6	--	--
잘 모르겠다	16.9	11.9	10.9

4. 나아가며

- 직업별 경제적 지위의 격차
- 한국사회 통합에 대한 시사점
- 향후 조선족 차세대 개념에 대한 규명을 목표로 이 자료를 논문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Thank you!

SESSION 2

재미한인의 주류화*

윤인진 (고려대학교)

I. 서론

19세기 중엽에 시작된 한민족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는 이제 150년이 넘는 연륜을 갖게 되었다.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일본의 재외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이민 3세부터 5세까지 출현했고,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이민 2세가 한인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와 정착이 장기화되면서 재외한인은 더 이상 거주국의 이민자 신분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위상이 바뀌었고, 거주국 주류사회의 중요한 기회구조에 주류 민족집단¹⁾과 동일하게 참여하고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주 초기에는 경제적 적응이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로 인해 자영업, 자영농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자립에 주력한 다음 축적된 자본을 자녀교육에 투자하여 세대간 신분상승을 도모했다(윤인진, 2004). 이 과정에서 주류 민족집단과 직접 경쟁하게 되는 정치 분야를 기피하는 탈정치적 적응 양식을 보였다. 하지만 재외한인사회에 거주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이민 2세와 3세가 증가하면서 이들은 주류 민족집단과 동등한 권리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전에 기피했던 분야들에까지 담대하게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한

*본 글은 2016년 4월 29일 재외한인학회·IOM이민정책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재외동포의 주류화」에서 발표된 논문(“재외동포 주류화의 개념과 지표”)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한국에서 민족과 종족은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본 글에서 민족은 영어로 nation에 해당하며 근대국가의 국민 형성과 연결된 정치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종족은 영어로 ethnicity에 해당하며 문화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김광역, 2005: 21). 한 국가에서 인구와 권력에서 지배적인 종족집단은 민족집단에 가까운 속성을 보이며(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크인 또는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인) 소수집단은 정치경제적으로 약세이면서 문화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종족집단의 속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본 글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할 때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만을 사용하겠다.

인연구의 관점은 이제는 적응 관점에서 통합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응이 경제적 자립과 같이 일차적이고 물질적이고 부분적인 대응 양식이라고 한다면 통합은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주국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라는 심리적 동일시까지를 포함한 완전한 대응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 통합(migrant integration) 개념은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정부 정책의 중심적인 관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민자를 더 이상 사회의 소외집단으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주국 사회의 생산적이고 완전한 일원으로 포섭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민자 통합정책이 실천되고 있다(Joppke, 2007; Koopmans, 2010; 구춘권, 2012; 오정은, 2013; Niessen, 2014).

주류화는 통합을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 즉 체제통합과 가치통합 중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Krechel, 1999: 90; 고상두, 2010: 272에서 재인용). 다시 말해 거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기회구조에 주류 민족집단과 동일하게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과정을 주류화라고 할 수 있다.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체제통합이 선행되어야 가치통합이 완성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제통합 다음에 가치통합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체제통합은 가치통합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재외한인이 염원하는 것은 거주국 사회로의 통합에서 우선적으로 체제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거주국의 구성원이 된지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조차 재일한인이 다수집단의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차별철폐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주류화는 재외한인이 거주국 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체제 차원에서 자기개발과 발전의 공평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류화 개념과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한 주류화 지표·지수는 재외한인이 거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합되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를 통해 한 국가 내에서 재외한인의 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 간에 재외한인의 통합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II. 재외한인 주류화 연구 현황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선행연구는 주로 재외한인이 거주국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왔다. 한국에

서 진행된 재외한인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수행한 윤인진(2011)에 따르면,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주요 연구주제로 이주/이민, 법적 지위, 청소년, 여성/가족, 정체성/민족의식, 경제활동, 동포교육, 남북관계, 재외동포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주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재외한인의 적응/정착과 모국과의 유대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즉 이민 1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경향, 가족관계, 경제활동 등을 다루거나 민족의식과 같이 거주국보다는 모국과의 사회심리적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1세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거주국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편입이나 통합보다는 갈등과 배제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재외한인의 거주국 정착의 장기화와 세대교체에 주목하면서 적응과 배제의 관점을 넘어 거주국 사회통합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이민자에 대한 수용적 정책을 가진 북미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영문으로 출판된 북미한인 연구 성과에 대해 문헌고찰을 한 민병갑(Min, 2013)에 따르면, 2000년대 이전의 재미한인에 대한 연구가 1세대 이민자들의 이민 및 정착, 경제활동, 가족관계, 그리고 종교활동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성취와 동화, 초국가적 연결망,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1.5세대와 2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통혼 또는 족외혼(inter-marriage)같은 전통적인 사회동화의 지수를 이용하여 재미한인사회의 거주국 통합문제를 다루고 있다(윤인진·임창규, 2008; Sakamoto et al., 2009). 또한 재미한인은 이민 초기의 적응 및 정착 단계를 넘어서서 향상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류노동시장 진입을 바탕으로 거주국 주류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한다. 대표적으로 재미한인의 정치 참여(D. Kim, 2011, 민병갑, 2019; 오숙희, 2019), 거주지 통합(Oh, 2015), 한인단체 활동(Chung, 2009)에 관한 연구들은 재미한인의 주류사회 편입 과정이 개인 수준의 동화가 아니라 집단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사회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재외한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1세대의 거주국 정착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최근 들어 주류사회 참여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재외한인사회에서 2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인구와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외한인의 주류화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화의 개념은 이민관련 문헌보다는 교육학 분야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체제 편입(inclusion)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후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인권운동의 확산과 아울러 여성과 소수민족의 사회통합을 지칭하는 단어로 확장되었

다. 교육학에서 주류화는 “학습 및 신체상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정규 학교와 교실에 편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Madden and Slavin, 1983; Rogers, 1993). 1975년 미국의 장애학생교육법(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의 제정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제약의 최소화를 의무화한 이래로 주류화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통합적 교육을 의미했다. 여기에서 주류화는 단순한 정규학교로의 편입이 아니라 장애학생이 정규교육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교육시킴과 동시에, 정규과정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지칭한다 (Madden and Slavin, 1983).

주류화는 이후 장애학생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 특히 인종적 소수자 집단의 교육통합과 관련된 사회운동과 연관되었다. 특히, 흑인에 대한 분리정책에 대항하는 탈격리 (desegregation) 운동의 한계를 비판하기 위해 주류화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탈격리는 인종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기계적 통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종적 차이를 인정하고 인종적 소수자에게 보다 수용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의 주류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apon-Shevin, 1979; Katz-Garris and Garris, 1981). 따라서 주류화는 소수자 집단의 주류집단으로의 수동적 편입을 넘어서 소수자 집단과 주류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평등한 기회구조의 조성을 함의하게 되었다.

주류화 개념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교육문제를 넘어 남녀평등의 이슈로 확장되었다. 1990년대 초 제안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남녀차별철폐와 같은 기계적 성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녀형평성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과 수행을 가리킨다 (True and Mintrom, 2001; True, 2003). 성주류화의 관점에 따르면, 남녀평등의 정책은 주로 제도적 차별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남녀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및 사회문화적 성차(gender difference)를 고려하여 여성이 주류영역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및 지구적 사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성주류화는 여성의 사회제도 내로의 실질적 편입을 가능케 하는 체제 통합을 가리킨다.

교육학과 젠더 연구에서 정의하는 주류화 개념의 공통점은 소수자 기회 평등의 확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민자와 소수자 연구에서 주류화 개념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민자 또는 소수자가 주류 집단 성원들과 동일한 삶의 기회와 질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Ⅲ. 주류화의 개념과 지표

1. 재외한인의 주류화 개념 정의

앞서 주류화는 통합의 일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자에 따라 통합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기존 개념들 중에서 공통적인 요인들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분리된 집단들이 하나의 단일한 체제에 참여해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은 거주국 사회의 기회구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체제통합과 거주국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는 가치통합으로 구성된다. 윤인진(2019)은 통합 개념을 이민자에 적용하여 이민자 통합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민자가 거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고유한 집단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고 안정된 생활과 평등한 기회를 영위하고 소속감을 갖고 선주민과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문화다양성의 인정과 존중, 거주국 문화의 수용, 기회평등, 소속감, 유대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주류화를 체제통합으로 본다면 위의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거주국 문화의 수용, 기회평등, 유대관계가 주류화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외한인의 주류화는 “재외한인이 거주국의 기회구조와 사회적 관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외한인이 거주국의 주류 민족집단과 비교해서 삶의 기회와 질에서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때 주류화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2. 재외한인의 주류화 지표

재외한인의 주류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기에 앞서 참고할만한 관련 지표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

선행연구에서 이민자 통합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가 있다. MIPEX는 2004년에 15개의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007년에는 25개의 EU 국가들과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를 포함해 총 28개 국

가들로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세르비아, 한국, 카자흐스탄이 참여해서 제3차 MIPEX 조사(MIPEX III)에서는 총 37개 국가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²⁾ 가장 최근 조사는 2014년에 실행됐는데 여기에 총 38개 국가들이 참여했다(윤인진, 2019).

MIPEX는 실제 이민자의 거주국 내 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정책,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민자의 통합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기반이 마련된 국가들에서는 실제 이민자의 통합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나름대로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MIPEX는 노동시장 이동,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 참여, 건강, 장기 거주, 국적 취득, 반차별과 같은 8개의 정책 영역들로 구성되고, 각 영역은 4개의 차원들로 구분되고, 다시 각 차원은 보통 3~7개의 문항들로 측정된다. 개별 문항에 대해서는 1부터 3까지의 값으로 측정하는데 이민자가 완전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 3점, 평등한 대우에서 한참 뒤쳐져 있으면 1점, 그 중간에 위치하면 2점을 부여한다(Niessen, 2014: 9).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표

국내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남북하나재단이 개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표이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최종 목표로 삼고 현재의 정착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표체계를 개발했다. 여기서 정착은 기본적인 권리와 사회진출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회’(equal opportunity), 사회적 자활 능력 및 유지능력과 그 결과인 ‘자립’(self-reliance), 탈북민과 한국사회의 조화로운 융합인 ‘통합’(integration)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정착에 해당하는 자립은 경제, 사회, 신체, 심리 역량으로 구성되고, 심리사회적 정착에 해당하는 통합은 공동체 의식, 사회적 참여, 사회적 신뢰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신효숙 외, 2017: 86). 본 글의 주제인 재외한인의 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자립이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에이저·스트랭의 이민자통합모델

이민자의 통합을 개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모델로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에이저와 스트랭(Ager and Strang, 2008: 170)이 개발한 ‘이민자통합모델’(mi-

2) MIPEX III에 사용된 지표들을 설명한 책자는 MIPEX 홈페이지를 참조

grant integration model)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에이저와 스트랭은 영국에서 난민의 사회통합을 연구하면서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표식과 수단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안했다. 여기서 통합의 토대는 이민자의 권리와 시민권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정된 법적 지위가 통합의 출발점으로 간주한다. 촉진요소는 언어문화적 지식과 안전과 안정감으로 구성된다.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이민자의 통합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안전과 안정감은 인종차별,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되는 것과 이민자가 거주국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는 이민자와 선주민 간에 형성되는 관계망을 의미하는 사회적 가교, 자국 출신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통한 결속을 의미하는 사회적 결속, 이민자가 정부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사회적 연계로 구성된다. 고용, 주거, 교육, 보전은 통합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식인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이 모델을 재외한인의 주류화에 적용하면 통합의 토대는 재외한인의 거주국 내 권리와 시민권에 해당한다. 재외한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과 같은 안정된 법적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통합을 하는데 유리하지만 불안정하거나 비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면 이후의 통합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촉진요소 중 언어문화적 지식은 재외한인이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으로 거주국의 언어 구사력이 한 가지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안전과 안정감은 재외한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거주국 정부와 사회가 재외한인에 대해 법적, 제도적, 관습적으로 차별을 하게 되면 공평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적 관계는 재외한인이 거주국의 지배민족집단과 맺는 관계망, 재외한인 간의 결속, 거주국 정부의 지원 서비스에의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지배민족집단과의 관계의 정도는 재외한인이 얼마만큼 주류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족외혼 또는 통혼(intermarriage)은 거주국 내 소수민족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끝으로 표식과 수단에서 고용, 주거, 교육, 보전은 재외한인이 거주국 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은 취업 및 직업과 관련된 것이라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를 포함하기에는 제한된 개념이라 필자는 고용을 경제로 변경했다. 그리고 정치참여를 새로운 표식과 수단으로 추가했다. 재외한인이 거주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정도는 통합의 지표인 동시에 경제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의 통합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재외한인의 주류화 모델

주: 에이저 스트랭(Ager and Strang, 2008)의 이민자통합모델에서 고용을 경제로 변경하고 정치참여를 추가함.

<표 1> 재외한인의 주류화 영역과 측정 지표

상위영역	하위영역	측정 지표
통합의 토대	국민으로서의 권리	• 시민권자 비율 , 영주권자 비율, 불법체류자 비율
	언어문화적 지식	• 영어 구사력 , 문화와 제도 관련 지식
촉진요소	안전과 안정감	• 법적, 제도적, 관습적 차별 여부, 치안과 생활 불안감 (자료 부족으로 조사 못함)
	사회적 가교	• 족외혼(통혼)율 , 주류사회 조직 및 단체 참여도
사회적 관계	사회적 결속	• 재외한인사회 참여도, 재외한인 사회적 지원 연결망 (자료 부족으로 조사 못함)
	사회적 연계	• 정부 및 지원 조직 및 단체와의 연결망(자료 부족으로 조사 못함)
표식과 수단	경제	• 취업율 , 직업, 소득, 빈곤율, 고용 안정성
	주거	• 주거 소유율 , 주거 형태, 주거 안정성
	교육	• 최종 학력
	보건	• 주관적 건강상태 , 의료보험 가입율
	정치참여	• 비선거 정치참여 , 선거 등록율, 투표율, 선출직 또는 고위 임명직 비율

4) 재외한인의 주류화 지표

앞서 논의했던 재외한인의 주류화 개념의 영역과 측정 지표는 <표 1-1>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이론적으로는 보다 많은 측정 지표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은 제한적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은 굵게 표시했다.

IV. 재미한인의 주류화 현황

1. 자료

본 연구에서 인용된 자료는 미국 통계국(Bureau of Census)에서 실시하는 인구센서스와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이다. 미국에서는 매 10년마다 인구센서스가 실행되는데 그 중간에 매년 American Community Survey를 실시하여 미국의 다양한 지역과 인종·민족집단별로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정보를 수집한다. 한인과 같은 소수집단은 American Community Survey에 포함되는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실행된 설문조사의 한인 표본들을 합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자료를 사용해서 한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Korean American Coalition Census Information Center와 Pew Research Center의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6년 아시아아메리칸사전선거 조사(National Asian American Survey 2016 Pre-Election) 자료이다. 이 조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다양한 정치활동참여를 조사하였으며,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경제, 사회, 종교, 이민자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 중 주요 9개 집단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1.8%로 총 응답자는 4,787명이며 316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그들의 인구 비율보다 더욱 높게 참여했고 투표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표집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성향과 정치활동 참여를 조사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그 외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2. 주류화 현황

1) 통합의 토대

미국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정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재미한인 중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비율은 사회통합의 가능성과 수준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미국 내 한인의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민병갑, 2019).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미국 인구센서스의 2015년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1,822,000명인데 미국 인구센서스에서 한인 인구가 축소 집계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한인의 인구는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이다. 한인의 출생지를 구분하면 외국에서 출생한 한인의 비율은 62%로서 미국에서 출생한 비율인 38%보다 1.6배 높다. 그리고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 외국 출생자 비율이 59%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의 외국 출생자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외국 출생 한인 중에서 시민권을 보유한 비율은 60%로서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58%)과 비교해서 다소 높은 시민권 보유율을 보인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한인의 규모는 2017년 3월 6일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198,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한다(Yee, Davis, and Patel, 2017). 재미한인의 인구를 200만 명으로 잡을 경우 불법체류자 비율은 대략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미한인 인구의 40% 가량이 미국 출생자이고 외국 출생자 중에서 시민권자의 비율이 60%에 달하고 불법체류자 비율은 1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미한인의 법적 신분상의 지위는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사회통합의 토대는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표 2> 한인의 출생지와 시민권 보유 현황(2015, %)

출생지	한인	아시아계
미국 출생	38	41
외국 출생	62	59
외국 출생자 중 시민권 보유율		
시민권자	60	58
비시민권자	40	42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7), “Koreans in the U.S. Fact Sheet”¹³⁾

2) 촉진요소

거주국의 언어문화적 지식은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재미한인의 경우 미국 인구센서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 영어 구사력(English proficiency)이 언어문화적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한 가지 유용한 지표이다. 2015년 기준으로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영어 능력을 ‘매우 잘함’이라고 보고한 영어 능숙자의 비율은 한인 전체에서 63%였고, 출생지에 따라 미국 출생자는 94%, 외국 출생자는 47%의 차이를 보였다. 한인의 영어 능숙자 비율은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영어 능숙자 비율(70%)과 비교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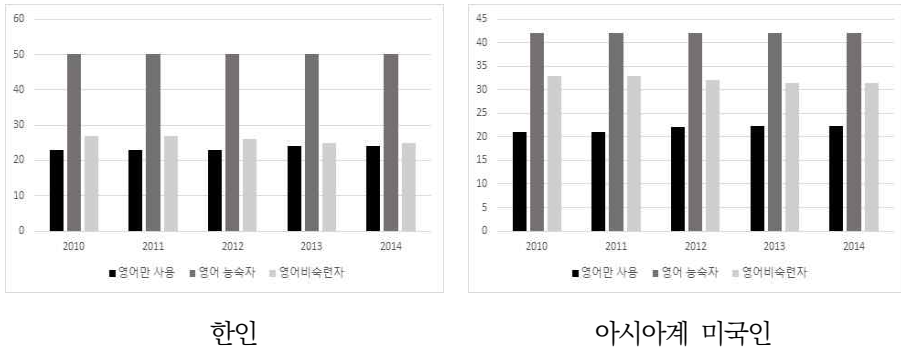
미국 인구센서스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인의 영어 구사력은 해당 기간에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만을 사용하는 한인의 비율은 2010년의 21%에서 2014년의 24%로 증가했고,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한인의 비율⁴⁾은 해당 기간에 35.3%에서 32.4%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인의 영어 구사력은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부족해서 한인 중 영어 능숙자의 비율은 낮은 반면 제한된 영어 구사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더욱 높았다. 한인 인구에서 외국 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모국이 영어문화권이 아닌 것이 한인의 영어 구사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3> 재미한인의 영어 구사력(%)

	영어 능숙자 비율
전체	63
미국 출생자	94
외국 출생자	47
성인 인구	58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	70

주: 5세 이상의 한인 인구 대상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7), “Koreans in the U.S. Fact Sheet”

3) <https://www.pewsocialtrends.org/fact-sheet/asian-americans-koreans-in-the-u-s/> (최종검색일: 2019.3.9.)
4) 미국 인구센서스에서 영어 구사력은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는지 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영어 구사력은 ‘매우 잘함’, ‘잘함’, ‘잘 못함’, ‘전혀 못함’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영어가 능숙한 사람은 집에서 영어만 사용하거나 영어를 매우 잘한다고 보고한 사람이고,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limited English proficiency)은 집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영어 구사력을 ‘잘함’, ‘잘 못함’, ‘전혀 못함’ 중의 하나를 선택한 사람이다.



<그림 1> 한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영어 구사력

자료 출처: Korean American Coalition Census Information Center, “Language and Education” (미국 인구센서스,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1년 추계 Table S0201)⁵⁾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인은 그들의 높은 학력과 중산층 계층배경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영어 구사력이 취업 및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Yu et al., 2002; 윤인진·임창규, 2008). 전체 한인의 대략 2/3이 영어가 능숙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인의 언어문화적 지식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관계

이민자통합 모델에서 사회적 관계는 주류사회와의 관계, 이민자 집단 내 결속, 지원 기관과의 연계로 측정되는데 미국 인구센서스와 같은 공식 자료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류민족집단과의 족외혼율은 한 이민자집단이 주류사회에서 얼마나 수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인의 족외혼율 자료를 통해 한인과 주류민족집단과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한다. 민병갑(2019)과 민병갑·김치곤(Min and Kim, 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인 이민 1세대의 족외혼율은 14%로 낮은 편이지만 1.5세와 미국 출생 한인의 족외혼율은 각각 46%와 5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족외혼한 한인의 배우자는 세대와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백인(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면서 개방적인 의식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한인 차세대가 빈번하게 접촉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집단이 백인이라는 점이 이들과의 족외혼율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모델 마이노리티라는 이미지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백인의 긍정적 인

5) <http://www.kacla.org/census-language-and-education.html>(최종검색일: 2019.3.9.)

식도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여 족외혼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족외혼율을 통해서 재미한인의 주류사회와의 사회적 관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표식과 수단

① 경제

가장 최근의 인구통계자료라고 할 수 있는 2013-2015년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를 사용해서 한인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고용면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38%로서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35%보다 높았다. 그리고 한인의 취업률은 58%로서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61%보다 낮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한인의 고용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낮은 취업률은 낮은 소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한인의 연 평균 가구소득(중위소득)은 60,000달러로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73,00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개인소득에서도 한인은 연 평균 35,000달러를 버는데 비해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개인소득은 35,600달러였다. 낮은 소득은 또한 높은 빈곤율로 이어지는데 한인의 평균 빈곤율은 12.8%로서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12.1%보다 높았다. 소득은 과소보고 등의 문제로 경제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일 수 있는데 주택소유율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인의 주택소유율은 47%로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57%보다 낮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인의 경제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2013-2015년 자료에서 한인의 경제상태는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 자료와 비교할 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한인의 가구소득은 45,000달러로 전체 미국인 평균인 49,800달러,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66,00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개인소득에서도 한인 전일제 노동자는 연 평균 45,000달러를 번 반면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은 연 평균 48,000달러를 벌었다. 빈곤율에서도 한인의 15.1%가 빈곤선 아래에 처했는데 이는 전체 미국인의 평균 12.8%,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11.9%보다 높았다. 주택소유율에서도 한인의 48.1%만이 주택을 소유한 반면 전체 미국인의 65.4%,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의 58.1%가 주택을 소유했다. 따라서 한인의 경제상태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체 미국인과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과 비교해서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표 4> 재미한인의 경제상태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	한인 인구		
		전체	미국 출생	외국 출생
연 중위가구소득	\$73,060	\$60,000	\$68,900	\$57,000
연 중위개인소득(16세 이상의 소득 보유자)				
전체	\$35,600	\$35,000	\$31,000	\$36,000
전일제 노동자	\$51,000	\$50,000	\$50,000	\$50,000
고용 지위(16세 이상의 민간 종사자)				
피고용자(employed)	61	58	63	56
비고용자(not employed)	4	3	5	3
노동시장 비참여자(not in the labor force)	35	38	32	41
실업률	6.0	5.6	7.0	5.0
빈곤선				
전체 연령	12.1	12.8	10.5	14.2
18세 미만	12.0	9.4	7.9	16.2
18-64	12.1	12.9	13.0	12.9
65세 이상	12.8	19.3	15.4	19.6
주택소유(가구)				
자가	57	47	42	49
임대	43	53	58	51

주: 한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구는 다인종·다민족 인구를 포함. 실업률은 16세 이상 민간분야 노동시장참여자 중 실업자 비율.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7), “Koreans in the U.S. Fact Sheet”

<표 5> 재미한인의 빈곤율(%)

집단	전체 미국인	전체 아시아계	전체 한인
전체	15.1	12.1	12.8
미국 출생	14.7	11.2	10.5
외국 출생	17.8	12.8	14.2

주: 한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구는 다인종·다민족 인구를 포함.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7), “Koreans in the U.S. Fact Sheet”

② 주거

한인의 주거 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거점유형태(housing tenure)를 사용할 수 있다. 주거점유형태는 임대 또는 주택 소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 소유가 임대보다는 선호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주거점유형태에서 한인의 53%는 세입자이고 47%가 주택 소유자이다. 앞서 한인의 경제상태를 검토할 때 확인했듯이 한인의 주택소유율은 전체 미국인과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낮았다. 2010-2014년

<표 6> 재미한인의 주택 소유율(%)

지역	집단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전역	아시아계	58.4	57.7	57.2	57.8	57.5
	한인	47.9	46.3	45.9	47.1	47.3
캘리포니아	아시아계	56.9	56.9	56.7	57.3	57.4
	한인	43.7	40.5	40.4	42.5	42.5
LA 카운티	아시아계	50.3	51.4	50.7	52.6	52.0
	한인	36.6	34.5	33.3	34.9	36.1
LA 시	아시아계	35.3	35.7	34.8	37.3	36.0
	한인	23.9	22.8	23.4	22.2	24.1

주: 한인은 한인 단일 인종만을 포함.

자료 출처: Korean American Coalition Census Information Center, “Housing and Health”(미국 인구센서스,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⁶⁾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를 통해서 미국 전역,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LA 시에 거주하는 한인의 주택소유율의 변화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하면 미국 전역에서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 LA 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다른 지역과 도시와 비교해서 캘리포니아와 LA 시의 주택가격이 비싼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인의 주택소유율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비교해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③ 교육

재미한인은 미국 내 많은 민족집단 중에서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 2013-2015년 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에 따르면 한인의 33%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20%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출생의 한인은 외국 출생의 한인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인의 교육수준은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과 전체 미국인보다 높다. 한인의 높은 교육 수준은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 자료와 2014년 American Community Survey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윤인진, 2004; 이창원, 2016). 이렇게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소득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것은 한국에서 취득한 교육 내용이 미국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6) Housing and Health 통계자료는 Korean American Coalition의 Sue Kim, Narin Chung, and Jennifer Eo가 편집. <http://www.kacla.org/census-housing-and-health.html>(최종검색일: 2019.3.9.)

<표 7> 재미한인의 학력(25세 이상, %)

집단	고등학교 이하	전문학사 또는 대학 중퇴	학사 학위	대학원 학위
전체 한인	25	21	33	20
미국 출생	15	25	37	23
외국 출생	28	20	32	20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	29	20	30	21
전체 미국인	41	29	19	11

주: 한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구는 다인종·다민족 인구를 포함.

자료 출처: Pew Research Center(2017), “Koreans in the U.S. Fact Sheet”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미한인 2세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김창환(C. Kim, 2014)의 연구에 의하면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단일인종 재미한인 1세의 비율은 52.6%에 그쳤지만 한인 1.5세 중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비율은 65.3%로 크게 성장하였고 2세의 70.5% 역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른 아시아계 미국인 2세 그룹과 비교했을 때 한인 2세는 중국계(75.3%)와 인도계(79.7%) 다음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을 받은 한인 2세의 비율은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교육을 받은 백인(3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인 2세는 1세와 비교해서 성별 교육 수준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1세의 경우 대학 교육을 받은 남성은 62%였던 반면 여성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만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2세의 경우 72.3%의 여성이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오히려 남성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다. 다인종한인의 경우 단일인종 한인보다 낮은 교육 수준을 보였다. 다인종한인 2세들의 46%만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33.5%)과 비교했을 때 다인종한인 2세의 교육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④ 건강

교육 또는 경제와는 달리 한인의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예외적으로 장서현(Jang, 2018)의 한인 이민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서현이 2016년 캘리포니아 건강설문조사(2016 California Health Interview Survey)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미국 출생 백인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 이민자들보다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한인 이민자 중에서 최상(excellent) 또는 매우 좋은(very good) 수준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은 22.2%인 반면에 백인의 51.4%, 전체 이민자의 33.5%, 중국인 이민자의 41.9%, 필리핀 이민자의 40.8%가 최상 또는 매우 좋은 상태라고 보고했다. 반면 자신의 건강 수준이 나쁘다(poor)고 보고한 한인 이민자는 13.4%인데 비해 백인의 7.5%, 전체 이민자의 7.5%, 중국인의 3.9%, 필리핀인의 8%가 건강이 안 좋다고 보고했다. 유일하게 한인 이민자보다 건강 수준이 낮은 집단은 베트남 이민자였다. 장서현은 이민자의 건강이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동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한인 이민자의 낮은 건강 수준은 이들 중 고등학교 학력 이하의 비율이 높은 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자영업 종사율이 높은 점, 영어 구사력이 낮은 점 등에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한인의 건강 지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낮은 건강보험 가입율이다. 한인 이민자 중 민간 또는 공중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20.2%인데 비해 백인의 8.8%, 전체 아시아 이민자의 13.4%, 중국인 이민자의 12.6%, 필리핀 이민자의 10%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율이 낮으면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인 이민자들은 다른 어느 아시아 이민자집단보다 높은 의료서비스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한인 이민자들이 한인 의사들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할 경우 할인을 받거나 영어 능력이 떨어져도 한국어로 소통을 해서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한인 이민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8〉 한인 이민자의 주관적 건강 수준

건강 수준	백인	전체 이민자	아시아 이민자	한인	필리핀인	중국인	베트남인
최상	18.0	13.6	13.2	10.5	13.6	14.5	4.6
매우 좋음	33.4	19.9	22.7	16.7	27.2	27.4	12.0
좋음	30.3	32.9	33.0	33.3	37.1	33.9	29.2
보통	12.9	26.1	22.4	26.1	14.1	20.5	34.4
안 좋음	5.5	7.5	8.8	13.4	8.0	3.9	19.8
N	10,758	5,633	1,947	276	213	650	349

주: 백인은 미국 출생 비히스패닉 백인을 가리킴

자료 출처: Jang(2018, 4).

<표 9> 한인 이민자의 건강보험 가입율

	미국 출생			외국 출생				
	백인 ¹	아시아인 ²	전체	아시아인	한인	필리핀인	중국인	베트남인
모든 보험	91.2	89.9	75.5	86.6	79.8	90.0	87.4	83.2
민간 보험	75.5	79.0	56.5	68.9	62.9	75.9	66.8	57.6
메디케이드 ³	10.3	10.1	14.9	14.1	11.4	10.5	16.1	21.9
N	8,203,630	134,893	1,784,203	479,594	43,689	77,016	105,787	45,425
메디케어 ⁴	97.7	95.2	91.8	90.8	94.1	90.6	90.9	94.4
N	2,108,155	14,115	308,025	77,939	7,689	15,949	18,770	6,963

주 1: 백인은 비히스패닉 백인을 가리킴

주 2: 아시아인은 단일 인종 아시아인을 가리킴

주 3: 저소득층 대상 공중건강보험

주 4: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대상 공중건강보험

출처: Jang(2018, 19)

⑤ 정치참여

윤인진(2011)의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 차세대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정치성향은 중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보수적 성향자가 진보적 성향자보다 약간 많았다. 그리고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약간 우세했지만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 중에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많았다. 오숙희(2019)가 2016년 아시아나메리칸사전선거 조사(National Asian American Survey 2016 Pre-Election) 자료를 분석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인 차세대의 정치성향과 정치참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인 2세는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압도적으로 강했고, 이들의 84%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8%만이 공화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의 정치참여 현황을 분석한 오숙희(2019)에 따르면 비선거 정치참여(예를 들어 정치 기부금, 정치인 또는 정부에 연락, 항의시위 참여, 탄원 또는 진정서 제출) 수준은 한인 1세의 경우 타 아시아계 미국인과 비교해서 낮지만 2세는 타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의 선거인 등록율은 타 아시아계 미국인과 비교해서 더욱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의 선거 등록율이 향상된 이유는 한인 2세의 증가와 한인 1세의 시민권 취득이 증가한 때문이다.

한인의 정치참여는 선거직 또는 고위 공직에 당선된 한인들의 수에 의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미국 퀸즈칼리지에 소재한 재외한인연구소(민병갑 소장)가 2016년에 발행한 연구보고서(Chung, 2016)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으로 46명의 한인(한인과

<표 10> 한인 시의원 이상의 선거직에 당선된 재미동포의 주별 수 (2016년 4월 현재)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	하와이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메릴랜드	뉴욕	미시간	몬타나	합계
작은시/카운티의원	11	6	1	1	1	2	1	0	2	0	1	25
큰시의원	0	2	1	0	0	2	0	0	0	0	0	5
시장	0	1	1	0	0	0	0	0	0	0	0	2
주상하원	1	1	1	3	1	1	1	2	2	1	0	14
합계	12	10	4	4	2	5	2	2	2	1	1	46

자료: Thomas Chung(2016), Korean-American Elected and Appointed Politicians,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Judges (4th Version).

비한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인 포함)이 시의원 이상의 선거직에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하였다. 이들 중 반수 이상 (25명)은 작은 시와 카운티의 의원이었고, 큰 시의 의원 5명, 시장 2명, 주 상하원 의원 14명이었다. 인구와 정치력에서 아직 다른 민족집단들과 비교해서 열세인 한인 정치인들은 뉴저지 주 버겐 카운티의 펠리사이트파크와 같이 한인들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작은 도시들에서 당선되는 경향이 있다. 큰 시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례는 5건인데,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 각각 한 명씩 당선되었고,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두 명의 시의원이 당선되었다.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시, 카운티, 주)와 연방정부의 국장급 이상의 한인 인사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총 89명이다. 이들 중 시정부, 카운티, 주정부 고위직 관리가 430명, 연방정부 고위직관리 17명, 백악관 고위직 관리 7명, 판사 35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한인 중 연방의원, 주지사에게 당선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계에는 1명의 상원의원과 4명의 하원의원, 중국계 3명, 인도계 1명, 필리핀 혼혈인 1명, 태국계 1명 등 11명의 아시아계가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인으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례는 1993년에 김창준 의원이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 연방 하원으로 당선되어 1999년까지 3차례 선출된 경우이다. 이후 20년 만인 2018년 11월에 한인 2세 앤디 김이 뉴저지 주에서 민주당 후보

로 출마해서 연방하원으로 당선되었다. 앤디 김과 함께 동반 당선이 기대되었던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후보 영김은 투표 막판에 아쉽게 역전패했다.

비록 한인의 정치력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역량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한인 2세의 증가와 이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과 정치 참여로 인해 한인의 정치력은 조만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재외한인사회를 주류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주류화의 관점은 이민자 사회의 다양한 양태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단일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종합적이고 비교가능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거주국과 모국의 이민정책, 인종/민족관계, 초국적 연결망과 같은 거시적 요인들과 아울러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이동, 공동체, 사회연결망, 정체성과 같은 미시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 주류화의 관점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계량화, 표준화를 통해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들간의 체계적인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이를 통해 재외한인사회 간의 사회통합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주류화의 관점은 특히 재외한인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한인 이주의 역사가 150여년을 넘어서고 한인사회에서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1세대의 이주나 적응을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재외한인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특히, 차세대들이 주류사회로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종·민족과의 결혼이 증가하고 주류문화로의 동화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주류화가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판단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류화는 재외한인사회의 주요 트렌드이며 과제로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이주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민자통합 개념을 참조하여 재외한인의 주류화를 개념화하고 측정하고자 했다. 재외한인의 주류화는 “재외한인이 거주국의 기회구조와 사회적 관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에이저와 스트랭의 이민자 통합모델을 토대로 재외한인의 주

류화 모델을 제안했다. 주류화의 토대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정의하고 이를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수 또는 비율로 측정했다. 촉진 요소는 언어문화적 지식과 안전과 안정감으로 구분했는데, 자료의 한계로 안전과 안정감 수준은 측정하지 못했다. 언어 문화적 지식은 영어 구사력으로 측정했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가교, 사회적 결속, 사회적 연계로 구분했는데, 자료의 부족으로 사회적 가교 수준만 조사했다. 사회적 가교는 족외혼(통혼)율로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표식과 수단은 경제, 주거, 교육, 보건, 정치참여로 구분했고,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사용해서 각 하위 차원에서의 주류화 수준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류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재미한인의 인구를 200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이중 40%가 미국 출생자이고, 외국 출생자 중 시민권자의 비율은 60%에 달하고, 불법체류자 비율은 10%에 불과해서 한인의 법적 신분상의 지위는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류화의 촉진요소로 언어문화적 지식을 설정했고 이를 영어 구사력으로 측정한 결과 한인의 2/3가량이 영어가 능숙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인의 언어문화적 지식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족외혼율로 측정했는데 한인 1세의 족외혼율은 14%로 낮은 편이지만 1.5세와 2세의 경우에는 각각 46%와 54%에 달해서 한인의 주류사회와의 사회적 관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류화의 수준은 경제, 교육, 주거, 건강, 정치 참여로 측정했는데 두드러진 현상은 각 하위영역별로 주류화 수준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교육에서는 백인뿐만 아니라 타 소수민족집단들보다 높은 학력을 보였으나 소득, 빈곤율, 주택소유율로 측정한 경제와 주거 영역에서는 전체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건강에서도 한인은 전체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았고 건강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하지만 한인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활용하여 언어 장벽과 건강보험 미가입의 위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 참여의 영역에서는 한인의 선거인 등록률이 타 아시아계 미국인과 비교해서 더욱 활발하다는 점과 한인 2세가 증가하고 1세 중에서 시민권 취득자 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인의 정치 참여 수준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선거직 또는 고위 공직에 당선된 한인들의 수는 타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비교해서 적은 편으로 아직 한인의 정치 참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상두. 2010.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28(2): 269-288.
- 구춘권. 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21(1): 119-154.
- 김광억. 2005.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pp. 15-84.
- 민병갑. 2019. “재미동포 차세대의 현황 :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및 언어사용에 관한 통계.” 『재외동포 차세대와 주류화』. 북코리아, 제2장.
- 신호숙 외.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 연구(2)-자립지표』. 남북하나재단.
- 오숙희. 2019. “재미동포의 정치적 성향과 참여현황.” 『재외동포 차세대와 주류화』. 북코리아, 제6장.
- 오정은. 2013. “암스테르담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 페이퍼 시리즈 No. 2012-08.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1. “재미한인 청년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로스앤젤레스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3: 129-161.
- _____. 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1): 5-36.
- 윤인진·임창규. 2008. “재미한인 차세대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세대별 및 민족집단별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26(3): 409-38.
- 이창원. 2016. 『재미한인의 세대별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IOM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No. 2016 - 04.
- Ager, A., and A. Strang. 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 Chung, Angie Y. 2009. "Ethnic Solidarity in a Divided Community: A Study on Bridging Organizations in Koreatown." In H. Ling (ed.), *Asian America: Forming New Communities, Expanding Boundaries*. New Brunswick, NJ:

- Rutgers University Press.
- Chung, Thomas. 2016. *Korean-American Elected and Appointed Politicians, Administrative Officials, and Judges (4th Version)*. Community Research Report No. 2.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Community.
- Jang, Sou Hyun. 2018. "An Overview of Korean Immigrants' Health in the United States." Statistical Reports in Korean American Data Bank.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Community at Queens College. <https://koreanamericandatabank.org/data-bank/item/104-overview-of-korean-immigrants-health-in-the-united-states.html>(최종검색일: 2019/03/9).
- Joppke, Christian. 2007. "Beyond National Models: Civic Integration Policies for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30(1): 1-22.
- Katz-Garris, Lynda, and Raymond P. Garris. 1981. "Mainstreaming and Desegreg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Negro Educational Review* 32(3): 213-229.
- Kim, ChangHwan. 2014.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Attainments." In Pyong Gap Min and Samuel Noh (eds.), *Second-Generation Korean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ondon, UK: Lexington Books, pp. 15-33.
- Kim, Dae Young. 2011.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and Electoral Politics." *Review of Korean Studies* 14(3): 123-153.
- Kreckel, Reinhard. 1999.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 Koopmans, Ruud. 2010. "Trade-Offs between Equality and Difference: Immigrant Inte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1): 1-26.
- Madden, Nancy A., and Robert E. Slavin. 1983. "Mainstreaming Students with Mild Handicaps: Academic and Social Outcom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3(4): 519-569.
- Min, Pyong Gap. 2013. "A Four-Decade Literature on Korean Americans: A Review and Comprehensive Bibliography." In Pyong Gap Min (ed.), *Koreans*

- in North America: Their Twenty-First Century Experiences*. Lanham, MD: Lexington Books.
- Min, Pyong. G., and Chigon Kim. 2009 “Patterns of Inter-marriage and Cross-Generational In-Marriage among Native-Born Asia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3(3): 447-470.
- Niessen, Jan. 2014. “The MIPEX Assess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4(2): 1-26.
- Oh, Sookhee. 2015. “Suburban Ethnic Enclaves and Spatial Assimilation: Koreans in the New York-New Jersey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5(2): 56-84.
- Rogers, Joy. 1993. "The inclusion Revolution." *Phi Delta Kappa Research Bulletin* 11.
- Sakamoto, Arthur, Kimberly A Goyette, and Chang Hwan Kim. 2009. "Socioeconomic Attainments of Asian America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255-76.
- Sapon-Shevin, Mara. 1979. "Implementing the Spirit of the Law." *Journal of Negro Education* 48(3): 364-381.
- True, Jacqui. 2003. "Mainstreaming Gender in Global Public Policy."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5(3): 368-396.
- True, Jacqui, and Michael Mintrom. 2001. "Transnational Networks and Policy Diffusion: The Case of Gender Mainstream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 27-57.
- Yu, Eui-Young, Peter Choe, and Sang Il Han.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0: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6: 71-107.

SESSION 2

미국-멕시코 장벽 건설의 이민 정치경제학적 함의: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을 중심으로

김 영 술 (전남대학교)

이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미국-멕시코 장벽 논쟁을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의 관점에서 이민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고찰하고 있다. 국경의 장벽 건설은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국경협력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발전을 추구하였지만 국경에서 많은 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경의 장벽 건설은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와 선거 정치라는 통제 장치 하에 장벽 건설의 이민정책 자체를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지역 차원에서 국경안보는 멕시코로부터 불법이주, 마약밀매 문제, 국경 범죄 등 많은 문제의 불안감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장벽 건설이 국경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 대다수는 오히려 분리와 배제보다는 연결과 협력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합의에서도 무역이 중심이어서 지역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민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협력을 위한 공동 경제 공간과 국경의 공동 생태 공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생태보호 전략 속에서 국경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경안보와 효과적인 국경협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경문제에 대한 법적인 토대의 구축과 공동 상생이라는 국경 간의 관계에 기초한 투명한 국경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장벽 건설의 이민자 정치보다는 국경 전략에 따른 지역통합과 발전이 국경안보 위협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I. 서론

세계가 이민자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연합은 난민 문제로 통합의 흔들림이 있었고, 특히 영국은 이민자 문제가 브렉시트를 진행하게 된 요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이민자 정치에서 핵심은 멕시코 장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장벽 건설을 중심으로 한 국경안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이민자 문제를 선거 정치에 이용하여 커다란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멕시코 장벽 건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멕시코 장벽 건설이라는 국경 정책으로 인하여 국경의 연결과 협력 보다는 분리와 배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멕시코 장벽 건설 문제를 두고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도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장벽이 미국으로 몰래 들어오는 국경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멕시코인 1,500만 명이 국경을 따라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¹⁾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과하는 국경 중 하나이다. 합법적으로 매일 100만 명 정도가 출퇴근 노동자로 왕래하여 매년 최소 3억 5,000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횡단을 하고 있다. 양국의 거리적인 가까움과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생활수준의 차이는 이들의 이주를 촉진하고 있다. 2016년 1,080만 명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었다. 그중의 80%는 멕시코인이며, 나머지는 중남미인들이다. 특히 불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08년 41%, 2015년 44%가 비자 연장자였다고 추정하고 있다.²⁾

이러한 상황으로 장벽 건설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

1) 2019년 4월 24일 기준 미국의 전체 인구는 328,653,017명이다. 미국 인구 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히스패닉 인구는 미국 인구의 17.8%를 차지하여 약 5,750만 명에 달했다. 2016년 히스패닉 인구가 가장 많은 5개 주로는 캘리포니아 주 1,530만 명, 텍사스 주 1,090만 명, 플로리다 주 510만 명, 뉴욕 주 370만 명, 일리노이 주 220만 명 등이다(U.S. Census Bureau/American FactFinder 2016: PEPASR6H). 멕시코 출신은 2016년 기준 36,255,589명으로 히스패닉 인구의 63.2%를 차지하고 있다(U.S. Census Bureau/American FactFinder 2016: B03001).

2)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따르면, 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는 2015년 1월 기준 1,2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주 연구센터(Center for Migration Studies)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의 수가 2016년 1,0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https://www.factcheck.org/2018/06/illegal-immigration-statistics/>

장벽 건설의 정당화를 외부에서 찾고 있지만 국가 내부 정치의 결과라는 연구가 있다.³⁾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통한 장벽 건설을 국내 선거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뒤에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외에도 다른 새로운 장벽이 전 세계의 정치적 경계로 남아 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인도-파키스탄, 사우디 오일펜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평화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장벽, 세우타-멜리야 국경선, 키프로스 그린라인, 유럽 연합의 헝가리-세르비아 국경 장벽 등은 거의가 민족차별과 분쟁, 종교분쟁, 불법이민으로 인해 세워졌다.

둘째,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은 멕시코 국경의 안보화⁴⁾, 국경 장벽과 범죄와의 연관성⁵⁾, 국경에서 마약 전쟁 등 국경안보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불법 이민, 마약 밀매 및 인신 매매 문제, 그리고 테러리즘의 위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남부 국경에 안보 차원의 물리적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장벽은 불법 이민을 막는 데 효율적인 통로가 아니지만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안보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 건설은 미국으로의 밀수입 경로를 변경하게 만들고 있다.⁶⁾ 따라서 미국-멕시코 경계 장벽 건설은 효용성이 없다고 한다. 특히 미국-멕시코 장벽이 멕시코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비밀리에 미국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패배를 가져 오게 된다고 분석한다.⁷⁾

셋째, 미국-멕시코 장벽 건설은 비효과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⁸⁾ 냉전 종식 후 세계 정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화가 자본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흐름과 함께 21세기는 문화적, 법적 및 물리적 장벽의 재검토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화 시대에 인구의 이동을 막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넷째, 장벽 건설은 국경협력에서 보면 국경 지대를 통해 살고 일하고 여행하는 사

3) Reece Jones, "Why Build a Border Wall?"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45, no.3(2012).

4) Jeremy Slack, Daniel Martínez, Alison Lee, and Scott Whiteford, "The Geography of Border Militarization: Violence, Death, and Health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atin American Geography*, vol.15, no.1(2016), pp.7-32.

5) Anna Getmansky, Guy Grossman and Austin Wright, "Border Walls and the Economics of Crime," Working paper, (2018).

6) Benjamin Laughlin, "Border Fences and the Mexican Drug War," (2019).
http://www.benjamin-laughlin.com/border_wall.pdf(검색일: 2019.0311).

7) John Sherwood, *Building the Wall: The Efficacy of a US-Mexico Border Fence*. BiblioScholar, 2012.

8) William Callahan, "The politics of walls: barriers, flows, and the sublim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018).
http://eprints.lse.ac.uk/87781/1/Callahan_Politics%20of%20walls%20barriers%2C%20flows.pdf

람들의 시민권과 인권 및 삶의 질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남부 국경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다양하고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경 장벽은 불법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미국의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것이다. 국경 공간은 미국의 영토와 노동 시장에 도착하기 위해 육로를 건너 걸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 다니는 관습적 경로였다. 국가 주권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국경은 주요 이주 원인 중 하나인 세계 자유주의 경제 논리와 이주 흐름을 다루는 국가 이민 정책 사이의 주된 모순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 고통, 굴욕, 인간 존엄성 및 위엄의 침해는 세계에서 이 지역이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⁹⁾

다섯째, 국경 장벽 건설은 생태적인 측면에서 치명적이라는 주장이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은 공유되는 사막, 산맥, 강, 습지, 강 및 다양한 기후대 및 고유종, 국립공원 및 보호 지역을 포함한 주목할 만한 생물 다양성이 걸쳐 있다. 불행하게도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는 데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한 그것은 물과 같은 다른 자연적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폭우가 장벽에 막혀 우회하여 도시와 도시로 흘러들어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섯째,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쌓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불가피하게 높다. 하지만 지역의 안전과 경제에 대한 이익은 기껏해야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¹⁰⁾

이처럼 선행연구는 장벽 건설의 내부정치 측면, 국경안보와 국경협력, 생태적 측면, 그리고 장벽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를 한 것들이 많았다. 특히 이 연구는 국경안보와 국경협력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이 오늘날 국경의 문제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는 국가 이주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교역적인 측면과 수십 년 동안 규제하고 수많은 과정을 통제하였던 거대한 국가 메커니즘적인 측면인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도 한다.

사실상 국경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교류와 협력을 위한 강력한 장애물이 되어 왔다.

9) Geneviève Jacques, Vilma Núñez, Jimena Demougin Reyes, Claire Tixeire, “United States - Mexico Walls, Abuses, and Deaths at the Borders. Flagrant Violations of the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s on their Way to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2008). <https://www.fidh.org/IMG/pdf/USAMexiquemigran488ang.pdf>

10) Colin Deeds, “Scott Whiteford.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Trump’s Wall,” *Voices of Mexico 102*, collaborative dossier, (2017). <http://www.revistascisan.unam.mx/Voices/pdfs/10207.pdf>

그동안 미국은 멕시코의 불법이주자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장벽으로 국경 문제를 고민해 왔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하여서는 국경 범죄, 불법이주 등 비군사적인 위협이 있어왔다. 실제로 미국 이민 당국은 2019년 2월 동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66,450명을 체포했다. 이는 1월보다 18,000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불법 월경자 증가와 국경에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과 범죄는 양국에 커다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국경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소로는 멕시코 국경에 접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 등이다. 미국인들은 멕시코 국경에서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 우선 국제 안보의 새로운 상황은 지역 갈등, 국제 테러리즘, 마약 밀매, 불법이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경안보는 국경에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외부 위협의 모든 스펙트럼에서 개인, 사회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이민정책을 통해 규제와 통제를 해오고 있는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이주에 대한 관련법들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국경은 미국인들에게는 자신의 영토와는 별도로 국가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 공간의 조건에서 장벽은 제한된 자원 개발과 사용에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양국의 안보 형성에 있어 불일치 또는 불충분한 작동은 국경 정책의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경의 역할과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후퇴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에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두 지역 간에 경제·사회적 국경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멕시코 수출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3년 416억 달러에서 2018년 2,650억 달러로 증가했다. 멕시코에서 미국 수입은 1993년의 399억 달러에서 2018년의 3,465억 달러로 증가했다.¹¹⁾ 매일 약 17억 달러의 양방향 무역과 수십만 명의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다. 멕시코는 캐나다에 이어 미국산 제품의 제2의 큰 시장이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 파트너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4번째로 큰 외국 원유 공급 업체가 있다.¹²⁾ 국경 2,000마일은 경제 공간이며 인적인 교류 공간이다.

국경협력은 국제 관계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경제 발전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국경협력은 공동 경제 체제로의 통합을 용이

11)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nteractive statistics, March 26, 2019.

12) Chicago Suntimes. The politics behind Donald Trump's empty threats on Mexico border. 04/08/2019.

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로 좋은 이웃 벨트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경협력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과정에서 틈새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경협력의 동인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경제적 보완성에 있으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 간의 정책과 제도에 있다.

국경협력은 지역의 국제 활동의 가장 초기 형태 중의 하나이다. 국경 장벽의 극복 필요성과 경제 관계의 발전은 국경 지역의 핵심적인 관심사이다.

이처럼 국경은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관계, 국경협력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오늘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통신과 첨단기술의 발전이 경계를 점점 모호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더 투명하고 침투성 있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경은 단지 보호만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에는 국경안보와 국경이주를 포함한 국경협력이 함께 존재하는 딜레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은 국경협력보다는 국경안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요소가 되고 있다. 멕시코 장벽 건설로 국경 지역들의 이주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인구학적이며 사회경제적인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장벽 건설은 국경 지역에서 발전보다는 후퇴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멕시코 장벽 건설 논쟁을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의 관점에서 이민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국경이주에 존재하는 불법이주, 국경을 통한 마약 밀매, 초국가 범죄 등 국경안보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국경협력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멕시코 주요 국경도시들의 경제·사회적 측면과 국제 생태 공동 공간 조성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미국-멕시코 국경 형성과 이주 및 장벽 현황

1. 미국-멕시코 국경 형성과 이주

오늘날 미국-멕시코 국경 영토에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살아왔다. 멕시코는 16세기 초반-19세기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미국이 남서부로 국경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멕시코와 충돌하게 된다. 특히 텍사스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미국은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에 대한

매입을 제안하였으나 멕시코는 이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미국인의 텍사스 이주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은 점점 더 미국화 되었다. 결국 1836년 텍사스의 미국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멕시코가 알라모 요새를 점령하여 곧 진압되었다. 요새 알라모에서 멕시코 정규군 약 1,800명에 의해 텍사스 주민 186명이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멕시코가 전략적 승리를 하였다. 그러나 텍사스군의 재반격으로 멕시코군은 퇴각하였고 텍사스공화국은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텍사스 공화국은 미국과의 합병을 원하였으나 미국 내부의 찬반 여론으로 미루어지다가 1845년 미국 정부가 합병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멕시코는 텍사스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846년 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멕시코는 처절하게 패배하였다.¹³⁾ 1848년 멕시코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Treaty of Guadalupe Hidalgo)을 체결하여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부를 획득하였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은 멕시코와 미국이 1848년 5월 멕시코-미국 전쟁이 끝나면서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멕시코는 1500만 달러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 광대한 136만km²의 영토를 양도했다. 동시에 멕시코의 대미 부채 325만 달러를 탕감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은 겨우 1,825만 달러를 지급하고 멕시코로부터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와이오밍 주 등을 할양 받아 한반도 넓이의 15배에 달하는 300만 km²의 영토를 넓혔다.

1853년 미국공사 제임스 개즈던(James Gadsden)이 멕시코 북부 영토를 매입하는 협상을 시작하여 이듬해 양국이 이에 합의하였다 이 매입으로 오늘날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주 남부에 해당하는 멕시코 북부의 약 78,000km²에 이르는 영토가 미국에 귀속되었다. 이로써 현재의 미국-멕시코의 국경은 확정되었고 남서부의 영유권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국 멕시코 전쟁이 끝난 후 남서부의 멕시코 출신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로 당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계 인구는 전체인구의 10%정도였다. 남서부에 멕시코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세기 들어서였다.

특히 미국 남서부 지역에 합법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은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 Program) 때문이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1942년 8월 4일에 시작된 미국과

13)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는 미국 남서부는 멕시코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herida abierta)라고 얘기하였다.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멕시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미국 남서부의 핵심국경지역은 이미 문화적으로 멕스웨이(Mexway)를 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가 체결한 노동력에 관한 외교적 협약이었다. 단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한 다음 멕시코로 돌아올 수 있는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이었다. 브라세로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육체노동, 즉 단순 노동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적절한 생활 조건(위생 시설, 적절한 피난처 및 음식)과 최소 30센트의 임금을 보장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멕시코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하여 노동력 부족 현상에 빠진 미국 농업에 종사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협약은 1951년 ‘이주 노동 협약’(Migrant Labour Agreement)과 함께 연장되었고, 1964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미국으로 멕시코인의 불법 이주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더불어 미국의 멕시코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에 투자도 이주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녹색 혁명으로 1957년에는 멕시코의 헥타르 당 평균 밀 생산량이 두 배로 늘었다. 녹색 혁명은 관개된 농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했다.

또한 무역 거래 측면에서 볼 때, NAFTA는 시골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이주하도록 자극했다. 그것은 일부 집단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멕시코의 빈약한 농업 부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NAFTA는 미국의 고용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NAFTA는 멕시코의 실업자를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업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저임금의 불법 이민자로 생활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촉발했다.¹⁴⁾

설상가상으로 멕시코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의 증가로 인해 떠나고 있다. 이는 이민자가 아닌 난민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멕시코에 폭력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무기 판매를 줄이는 것이다.¹⁵⁾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자, 마약 등 범죄 문제로 멕시코를 비난하면서 장벽 건설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실제로 미국으로의 멕시코인의 이주가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멕시코인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모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¹⁶⁾

14) Paul R. Krugman, “Trade and Wages, Reconsidere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8).

15) 미국 남부 국경에 있는 6,700개의 미국 무기 판매점이 있다. 2010-2012년까지 미국 국내 총기 판매의 2.2 %가 국경에서 남쪽으로 간다고 추정했다. 이는 매년 총기 거래가 212,887건으로 미국 총기 수입 1억 2,700만 달러에 해당된다.

<https://www.americasquarterly.org/content/why-great-wall-wont-stop-cross-border-gun-trade>

16)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a-historian-on-how-trumps-wall-rhetoric-changes-lives-in-mexico>

이들은 잠시 동안 미국에 머물다가 돈을 벌고,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돈이 다시 필요로 할 때 다시 오는 이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통과로 이민자 체류가 강화되었다. 이 법의 초점은 이민자의 합법화 측면에 있었기에 전체 이민자는 감소하였다. 1986년부터 농업 노동자를 위한 H2-A 비자처럼 다양한 종류의 초청 노동자(Guest Worker)비자가 만들어졌다. 물론 2010-2015년 동안 미국에 취업된 H2-A 근로자의 수는 약 1만 명에서 2016년에 16만 5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농민 노동 인구의 10%였다.¹⁷⁾

하지만 합법적인 노동 신청자는 198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거주 등록 사실을 입증해야했다. 또한 신청자는 미국 역사, 정부 및 영어에서 최소한의 지식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했다.

또한 이주자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려오고 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데려 올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자들은 미국에 머물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

셋째,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1970년대에 멕시코는 “작은 가족이 더 잘 산다”(The small family lives better)라는 주제로 인구 규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1973년에는 인구 증가율을 줄이는 것이 문제였다. 사실 멕시코의 인구 증가는 꾸준히 줄어들었고 결국 이주하려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었다.

2. 미국-멕시코 장벽 현황

미국-멕시코 국경의 전체 길이는 3,145km이다.¹⁸⁾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은 미국의 4개 주와 멕시코의 6개 주에 접하고 있다. 미국의 4개 주는 국경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 멕시코 및 텍사스이다. 국경에 있는 멕시코 주는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소노라(Sonora), 치와와(Chihuahua), 코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ón) 및 타마울리파스(Tamaulipas)이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는 멕시코와 국경이 가장 긴 반면 캘리포니아는 가장 짧다. 멕

17) <https://prospect.org/article/nafta-cross-border-disaster>

18) 미국 캘리포니아 육지 경계(Land Boundary), 애리조나 콜로라도 강 경계, 24마일, 애리조나 육지 경계 354마일, 뉴멕시코 육지 경계 180마일, 텍사스 리오 그란데 경계 1,255마일이다. 총 대륙 경계(Continental Boundary)는 1,954마일이다.

시코의 치와와는 미국과 가장 긴 국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누에보 레온은 미국과 가장 짧은 국경을 가지고 있다. 텍사스는 타마울리파스, 누에보 레온, 코아우일라 및 치와와 등 4개의 멕시코 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뉴멕시코와 애리조나는 각각 두 개의 멕시코 주 치와와와 소노라, 소노라와 바하 캘리포니아에 인접해 있다. 캘리포니아는 바하 캘리포니아에만 국경을 접하고 있다. 바하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주와 애리조나 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국경은 도시 지역에서부터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을 통과한다. 이중 3분의 2는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간다. 국경을 따라서는 시골 농지, 사막, 암벽, 산 및 야생 동물 보호 지역을 포함하여 도시들이 있다.

장벽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주로 서쪽 절반을 따라 654마일에 걸쳐있다. 장벽은 경계벽(Border Wall) 또는 보행자 펜싱(Pedestrian Fencing), 차량 장벽(Vehicle Barriers) 및 철조망까지 다양한 벽이 있다.

경계벽은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높이가 12-20 피트이며 물과 야생 동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다. 2017년 4월 기준 미국-멕시코 국경 354마일에 달하며 이미 단층, 이중 또는 삼중 경계벽으로 지어졌다. 도보로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계벽의 환경적 영향으로는 홍수, 야생 생물 이동 통로의 막힘, 서식지의 파편화가 포함된다. 경계벽은 효과가 없고 값이 비싸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차량 장벽(Vehicle Barriers)은 강철로 만들어지며 높이가 4-6피트이며 대부분의 야생 생물 종의 이동을 막지 않으며 국경에서 홍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지 않는다. 차량 장벽은 벽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다. 차량 장벽은 300마일이 정도가 된다. 차량 장벽은 차량 및 트럭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러한 구조는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의 인구 밀도가 낮은 사막 지형에서 흔하다. 국경의 많은 마일은 인위적인 장벽이 없지만 산간 지역이나 리오 그란데 강가에 놓여있어 자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미국 국경 순찰 요원은 2017년에 19,437명이었다. 이중 대다수의 요원은 남서 국경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 2017년 남서부 국경 요원은 16,605명이었다. 2018년에는 남서부 국경 요원이 18,500명 이상으로 증가되었다.¹⁹⁾

2006년 미국 행정부는 안전 펜스 법(Secure Fence Act)으로 654마일의 국경방책 건설을 완료하였다. 트럼프는 차량 장벽을 보행자 펜싱이라고도 하는 경계벽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그렇게 되면 국경을 따라 추가로 300마일의 경계벽을 건설할 수 있

19) <https://www.factcheck.org/2018/06/illegal-immigration-statistics/>

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경계벽에 반대하고 있다.

1990년 초 캘리포니아 주 경계를 따라 장벽 건설이 시작되었다. 1996년에 불법 이민 개혁과 이민법(IIRIRA)²⁰⁾으로 인해 장벽 건설에 폭 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 동안 세워졌다. 장벽은 멕시코 티후아나, 미국 샌디에고 사이의 국경을 목표로 했다. 미국 남부의 국경안보를 확보하는데 점점 더 분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클린턴 대통령 시기 1992-1994년에 1차 펜싱 14마일과 2차 펜싱 2마일이 샌디에고 섹터에서 건설되었다. 1999년에 1차 펜싱 4마일이 엘 센트로(El Centro) 섹터에 건설되었다. 국경의 기존 펜스 건설의 대부분은 2006년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 시기에 지어졌다. 2006년 10월 26일에 조지 부시는 Secure Fence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멕시코 국경을 따라 펜싱을 700마일(1,125km) 건설하는 것을 승인하고 부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 시기 2006-2008년에는 엘파소 섹터에 차량 장벽 및 1차 펜싱 124마일이 건설되었다. 2007-2008년에는 유마(Yuma) 섹터에 1차 펜싱 53마일 및 차량 장벽 42마일이 건설되었다. 2007년 투손(Tucson) 섹터에 1차 펜싱 28마일과 차량 장벽 41마일이 건설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시기는 부시 행정부의 자금이 부과되었다. 2008-2009년 투손 섹터에 1차 펜싱 27마일과 차량 장벽 70마일, 그리고 샌디에고 섹터에 1차 펜싱 14마일, 리오그란데 계곡 섹터(Rio Grande Valley Sector)에 1차 펜싱인 제방 48마일이 건설되었다.²¹⁾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에 대한 작업을 재개할 법적 권한으로 Secure Fence Act를 언급했다. 트럼프의 장벽은 기존 국경 펜싱에서 확장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도 장벽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57억(약 6조 3천 400억 원) 달러였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13억7천500만(약 1조 5,400억 원) 달러만 배정했으며 55마일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 등 다른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나마도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 장벽 건설비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²²⁾

20) 1996년 9월 30일에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법(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IIRIRA)이 제정되어 미국의 이민법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주로 급속히 증가하는 불법 이민자 인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IIRIRA에 의해 가중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불법 체류자는 신속한 제거 절차를 따라야 하였다. 또 다른 변화 가운데 IIRIRA는 미국 검찰 총장에게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로 지르는 장벽을 건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1) Office of congressman Henry Cuellar, "Border Barrier Fact Sheet," 28th Congressional District of Texas. 2018.12.19.

https://cuellar.house.gov/uploadedfiles/border_barrier_fact_sheet_12.18.18_final.pdf

III. 장벽 건설과 미국의 이민자 정치 논쟁

멕시코 장벽 건설 문제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산 논쟁이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8년 12월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정부 업무정지) 사태와 2019년 2월에 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양원에서 초당파 다수의 의지에 반하여 국가적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공중 보건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장벽 건설을 위한 권한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전례 없는 광범위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 하여 비판이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급증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수백만 건의 합법적 국경 통과와 수십억 달러의 국경 무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다. 최근에는 국경에 병력이 추가 배치되고 있다.

둘째는 이민자의 인도적 문제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잔인하게 부모와 자녀들을 국경에서 분리시켰다.²³⁾ 하지만 이주자 가족을 고립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로 정책을 중단했다. 이는 인도적 위기라고 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비난을 받았다.

더불어 현재 이민과 망명 신청절차가 엄격하고 까다롭게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이민자 제한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기 시간을 길게 만들면서 수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2017년 10월 이후로 이민 사건이 26% 증가했다.²⁴⁾

셋째는 이민정책 담당자의 해임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며 초강경 반이민 정책 가속화에 나섰다. 닐슨 장관은 이른바 캐러밴으로 불리는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 지대의 불법 이민 행렬을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

22)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6057931Y>

23) 가족과 분리된 수천 명의 이주 아동을 확인하는 데 적어도 12개월, 그리고 최대 24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미국 이민국 관리가 체포한 약 47,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및 수작업 검토를 통해 자녀를 입양했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분류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설명에서 언급한 것이다(USA Today. It may take 2 years to identify thousands of migrant children separated from families. April 8, 2019).

24) Time. Trump Is Again Considering Dramatic Action on Immigration. Here's Why. APRIL 9, 2019.

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닐슨 장관에게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원했으나, 닐슨 장관은 국경 보호와 난민 보호 등과 관련해 일부 가혹한 정책을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닐슨 장관 해임을 시작으로 더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호 책임자인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SS) 국장을 해임했다.

넷째는 트럼프 정부의 추방정책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이민 개혁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추방 정책이다. 미국 국토 보안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16년 미국에서 340,056명이 제거(removal)되었다고 했다. 제거는 명령에 따라 미국에 입국할 수 없거나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의 강제 이동을 의미한다. 정식 제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떠나는 자, 입국이 허가되지 않거나 추방될 수 있는 이민자인 귀환자도 있다. 그런 귀환자는 2016년에 총 106,167명 이었다²⁵⁾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장벽이 아직 완전히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중남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출신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들의 목표는 서류 미비자를 추방하는 절차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다.²⁶⁾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매우 위험한 이민법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란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세관 단속국(ICE) 등 연방기관의 구금·추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백악관은 민주당 텃밭에 불법 이민자를 풀어놓으려고 한 것이다.²⁷⁾

트럼프 행정부의 밀러 선임 고문이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자 새로운 조치를 제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국토안보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국경에 이민자를 수용하는 텐트 도시를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불법 입국한 가족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하는 '가족 분리' 정책의 새 버전을 추진하고 있다.²⁸⁾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논쟁 이외에도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20개 주는 자신의 장벽을 충당하기위한 방법으로 국가 비상 선언을 통해 연방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25) <https://www.factcheck.org/2018/06/illegal-immigration-statistics/>

26) <https://news.theceomagazine.com/news/trump-deportations-central-america/>

2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27853/>

28)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22001/>

텍사스 휴스턴 출신의 토목 엔지니어 에이미 패트릭(Amy Patrick)은 구조적으로나 토목 공학적으로 경계벽은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반대한다. 이 장벽 프로젝트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이며 장벽의 높이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민권 단체와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이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비생산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며 헌법상의 우려와 미국의 전통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한다.²⁹⁾

그리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장벽의 건설은 서식지 파괴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하여 야생 생물에 해를 끼칠 서식지 분열을 포함하여 심각한 환경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2017년 4월 환경 단체인 생물 다양성 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와 애리조나 자연 자원위원회가 투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장벽 건설을 위해 새로운 지역이 개간됨에 따라 나비 보호 구역을 포함한 일부 토지 소유자는 건설을 중단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멕시코 장벽은 위험하고 값 비싼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2014년 7월 27일 몬순 비가 미국 애리조나의 노갈레스(Nogales)와 멕시코의 노갈레스(Nogales) 자매 도시를 강타했다. 6년 전 몬순 비가 약 210,000명의 도시인 Nogales 시내를 침수시켜 8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그때도 범인은 국경 장벽 기반 시설이었다.³⁰⁾

더불어 미국-멕시코 국경의 2/3는 민간 또는 국영 토지를 따라 운영되며, 연방 정부는 국경을 지을 수 있는 구매 또는 압류를 통해 해당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경계벽의 경우처럼 이 과정은 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소송으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애리조나 사막의 울퉁불퉁한 지형은 장벽을 건축 할 때 자연스러운 장애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국경은 오토바이나 전지형차(ATV) 및 무인 항공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순찰 중이다.

장벽 건설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멕시코의 로마 가톨릭 대주교는 장벽 건설은 멕시코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건설을 위한 벽이나 자재 공급에 참여하는 멕시코 회사는 조국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1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공동체의 연례 정상 회담에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대표들은 장벽 제안을 비난했다. 장벽 건설에 대한 행정 명령은 미국과 멕시코가 광범위한 협력을 해오고 있기에 양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라는 것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다수가 장벽 건설을 반대하지만 정당에 따라 분열되

29) <https://www.ecowatch.com/trumps-wall-wont-work-2625987846.html>

30) <https://qz.com/1353798/the-us-mexico-border-walls-dangerous-costly-side-effect-enormous-floods/>

어 있다. 2018년 1월 9-14일에 실시된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8%는 장벽 건설에 반대했으며 40%는 지지 했다. 다른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8년 1월 18-21일까지 시비에스 뉴스(CBS News)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37%가 국경 불법 이민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 장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1%는 장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공화당원의 78%는 장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원 중 90%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와 선거 정치(Immigrants and Electoral Politics)라는 통제 장치 하에 이민정책 자체를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전략이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인 해결책보다는 장벽을 건설하는 등 이민정책을 정치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2016년 선거캠페인에서도 이러한 이민자에 관한 논쟁이 트럼프 후보에게 이익이 되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국경 정책과 이민 개혁은 그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IV. 멕시코 장벽 건설로 본 국경안보와 국경협력

1. 국경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멕시코 국경에 접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확대를 들고 있다.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불법 이민자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국경을 따라 보안이 강화되었다.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을 침략자로 부르는 국경 자경단이 생겨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를 ‘침략자’로 규정하며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³²⁾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과 더불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병력을 더 배치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약 5천 명의 현역병과 주 방위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다.

31) <https://www.bloomberg.com/graphics/trump-mexico-wall/>

3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6/39833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불법 이민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미국 관세 국경 보호청(CBP)에 따르면, 2000년에 불법 이민자가 160만 명 이상이었으나 2018년에는 남서 국경에서 396,579명, 2017년에는 303,916명이라고 보고했다. 그 숫자는 1971년 이래로 가장 급격히 떨어졌지만 2018년부터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2월에는 불법 이민자가 66,000명을 넘어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³³⁾

대부분 불법 이민자는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자 과다 거주자(Overstayer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으로 남부 국경을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이주자들이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 필요로 하는 사람 수와 유효한 비자의 수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다.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데려 와서 법을 어기지 않고 그들이 미국 사회에 통합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그 중 하나는 이민 비자의 수를 늘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은 국경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마약 밀수, 국경 범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가 멈추지 않으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멕시코를 위협했다. 멕시코는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다. 미국은 수 억 달러의 돈과 멕시코에 군대 및 법 집행 자원을 투입 해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 및 기타 인신 매매 단체와 싸우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세웠다. 여기에서 많은 멕시코인들이 희생당하였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2006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확대한 이래 멕시코에서의 마약 전쟁과 관련한 15만 건의 의도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³⁴⁾

멕시코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수억 달러가 이 노력에 쏟아 부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다. 마약이 미국으로 오는 이유는 미국에서 마약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마약 카르텔이 범죄 조직을 통해 주요 마약 시장을 창출한다. 마약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 밀수를 시도하고 중독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마약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불법 약물을 운송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승용차 또는 운송용 차량에 합법적 다른 상품과 혼합하여 입항 항이나 국경을 통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마약이 남부 국경 너머에서 미국에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이

33) <https://www.factcheck.org/2018/06/illegal-immigration-statistics/>

34)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9/4/5/18296656/trump-mexico-border-close-war-on-drugs>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장벽이 미국으로 약물의 유입을 막지 못할 것이다. 주요 해결책으로는 중독 치료일 것이다. 미국이 공급을 멈출 수 없다면, 마약 사용을 줄이는 사람들의 수를 줄임으로써 적어도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국경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국경 범죄이다. 멕시코 내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어 위협적으로 미국으로 전파되는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도시(폭력적인 도시)는 멕시코의 티후아나 국경도시였다. 멕시코의 비영리 단체인 '공공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민위원회'(CPSCJ)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가 10만 명당 138명의 살인사건 희생자가 발생해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로 꼽혔다. 티후아나에서는 하루 평균 7명이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티후아나는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마약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폭력 단체 간의 세력다툼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국경도시 후아레스도 10만 명당 86명의 살인사건 희생자가 발생했다.³⁵⁾

마지막으로 국경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의 이주를 들고 있다. 멕시코인의 이주가 감소하고 있는 대신에 북부 삼국(Northern Triangle)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남미인들의 망명 신청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MS-13³⁶⁾을 언급했다. 미국은 중남미 지역의 이주 흐름을 막기 위해 멕시코에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사실 중남미 지역의 불안정성은 미국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중남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는 광범위한 불안정, 취약한 정치 및 사법 제도, 높은 수준의 빈곤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남미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미국은 광범위한 개입을 하고 있다. 중남미는 망명 신청자와 경제적 이민자가 미국으로 이주하는 혼합된 흐름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중남미의 통로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과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일련의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대다수는 중남미 국가에서 폭력과 불안정을 피해 온 자들이었다. 2017년에 남서부 국경에 있는 미국 당국은 북부 삼국 출신 약 163,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들의 63% 이상이 비동반 아

35)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5112200009>

36) MS-13(마라 살바트루차)은 중남미 및 미국에 있는 대규모 폭력조직이다. 이 조직은 엘살바도르를 중심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기타 중남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마약 밀수, 불법 이민 등 여러 범죄 활동을 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몸에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라고 문신을 새겨 MS-13이라는 이름보다 마라 살바트루차가 더 유명하다.

동이나 가족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2018년에는 107,212 가구가 국경에서 체포되어 전년도보다 42% 증가했다.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수는 21% 증가한 50,036명 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2018년 한 해 동안 계속되었으며, 일부 이주민은 캐러밴과 함께 떠나고 있다.³⁷⁾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를 보내고 있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그는 이주민들의 캐러밴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했다. 그들 국가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조 삭감 움직임은 부도덕한 것이며 사람들을 가난과 절망에 빠지게 하여 이주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였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고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여 경제 번영을 증진하고, 안보를 향상시키고, 역내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남미의 새로운 전략을 승인하고 전략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 원조를 크게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의회는 중남미 지역에 지원을 2014년 3억 3810만 달러에서 2016년의 7억 5,37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6억 9,970만 달러, 2018년에는 6억 2,650만 달러를 배정했다.

중남미 원조의 약 41%가 북부 삼국에 할당되었고, 3%는 벨리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및 파나마에 할당되었다. 나머지 56%가 중남미 지역 안보 구상(CARSI)과 같은 지역 프로그램에 할당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살바도르의 약 31%, 과테말라 49%, 온두라스 50%의 인구가 하루에 5.50 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은 지난 3년간 3개국 모두에서 살인율이 떨어지는 등 일부면에서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과테말라 10만 명당 26명, 온두라스 인구 10만 명당 44명, 엘살바도르 인구 10만 60명당 살인율이 높은 국가들이다. 이들 지역은 높은 수준의 부패 사례로 인해 국가 발전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 왔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정부는 거버넌스 개선 노력을 반복적으로 훼손해 왔다. 또한 북부 삼국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등 민주적인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³⁸⁾

37) Peter J. Meyer, "U.S. Strategy for Engagement in Central America: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01.03).

38) *Ibid.*

2. 국경협력

1) 국경도시의 경제·사회학적 측면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는 핵심국경(미국의 49개의 카운티와 멕시코의 36개 무니시피오(Municipio))과 광대국경(Greater Borderlands, 미국의 4개주와 멕시코의 6개주)으로 분류되고 있다. 양국 국경은 상호 연관성과 긴밀성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의 쌍둥이 국경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San Diego)와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티후아나(Tijuana), 엘파소(El Paso)와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árez)가 있다. 리오그란데(Rio Grande) 강은 두 도시를 구분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경제 협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 간에는 카미노 레알 데 티에라 아덴트로(Camino Real de Tierra Adentro) 즉 실버 루트(Silver Route)라고도 알려진 왕국의 길이 있었다. 멕시코시티-엘파소 산타페의 교역로 주변으로 약간의 식민촌이 있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무역로이며,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서 미국의 텍사스(Texas)와 뉴멕시코(New Mexico)까지 북으로 이어지는 약 2,400km의 도로 가운데 1,400km를 따라 있는 기존의 5개의 세계문화 유산과 기록된 유적 5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길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300년 동안 무역로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주로 사카테카스(Zacatecas)와 과나후아토(Guanajuato),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í)에서 채굴한 은과 유럽에서 수입한 수운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었다. 광산 회사들로 인해 개발이 강화된 길이지만, 이와 동시에 멕시코가 스페인과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종교가 교류·촉진되었던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서남부는 골드러시로 광산개발 붐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주는 태평양 연안의 항구들로 인하여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동서 횡단 철도가 건설되어 백인의 서부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농업이 발전하였다.

19세기 초 미국인들은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에 점점 더 많이 모여 들었다. 이에 따라 국경협력도 활발해졌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발전으로 양국 국경의 상호의존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남서부의 농업 발전은 멕시코 노동력을 더 많이 요구했다.

특히 미국의 금주법(1920-1933)으로 미국에서 술 마실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왔다. 2차 대전 이후 남서부에 군사 관련 산업 시설, 피닉스와 투산은 항공 산업, 애리조나는 전자산업, 텍사스에는 석유·가스 유전개발,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공업과 첨단 산업이 들어섰다. 이곳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국경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1942년 개시된 미국과 멕시코가 맺은 일종의 노동 계약인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국경 지역에는 노동자의 붐이 있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국경 지역도 확대되고 성장하였다.

1965년 새로운 국경 발전 계획이 시행되었다. 거기에서 주요한 정책은 멕시코 국경 도시에 일종의 조립공장인 마킬라도라(Maquiladora)를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었다. 외국기업은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면세로 원자재와 시설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 조립하여 다시 해외로 수출했다. 따라서 마킬라도라 산업은 국경 경제의 핵심이 되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국경 공동체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경 경제는 미국의 자본 기술과 멕시코의 노동을 결합하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초기적이고 불균형적이긴 하지만 통합으로 향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1994년 협정으로 수십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1994년 12월의 페소 폭락은 NAFTA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 마킬라도라 국경 지대가 미국 시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멕시코 노동자들은 미국 시장 경기가 침체할 때는 일자리를 잃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수천 명 이상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NAFTA가 멕시코의 빈곤과 미국으로 이주를 증가시켰다. 2005년 세계은행은 북미 자유 무역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1992-1994년에 35%의 극심한 빈곤율이 NAFTA가 시행된 후 1996-1998년에 55%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고했다. 2010년까지 5,30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었고, 극빈층의 20%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³⁹⁾

NAFTA는 자동차 공장, 전자 제품 및 의류 공장, 육류 가공 공장 및 기타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증가하게 했다. 해외 직접 투자는 1994년 17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040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 기업은 경제 개혁과 민영화를 쫓기로 사용하여 멕시코로 제조업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미국인과 멕시코인 노동자와는 임금 격차는 매우 컸다. 멕시코의 평균 임금은 1975년 미국 제조업 임금의 23%였다. NAFTA는 차별을 줄이기보다는 멕시코 임금에 손해를 주었다. NAFTA가 발효된 후 20년 동안 멕시코 최저 임금의 구매력은 24% 하락했다.

39) <https://prospect.org/article/nafta-cross-border-disaster>

미국인 자동차 공장 노동자는 시간당 21.5달러, 멕시코 자동차 공장 노동자는 3달러이지만 멕시코에서는 1갤런의 우유 가격이 이것보다 더 비쌌다. 동일 노동에 차등된 임금의 차이는 회사의 이익, 멕시코 노동자의 빈곤,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이 협정은 보조금 없이 멕시코 농민들이 생산한 노란 옥수수가 멕시코 시장에서 미국 농업 법안에 의해 보조된 거대한 미국 생산자들의 옥수수와 경쟁하도록 강요했다. 옥수수 수입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2백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NAFTA는 가격지원을 금지했기에 수십만 명의 소규모 농민들이 옥수수를 팔거나 또는 다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이 되지 못하였다. 멕시코는 1995년에 돼지고기 3만 톤을 수입했으며, 2010년에는 12만 개의 일자리에 해당되는 811,000톤으로 증가하였다.

NAFTA는 자유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또한 이주민들을 만들어 냈다. 그들은 마킬라도라 산업과 바하 캘리포니아의 공장에서 노동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미국과 캐나다로 엄청난 이주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것은 NAFTA의 예측 가능한 결과 이상이었다.

한편, 국경도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측면에서 협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경협력은 이미 상호 경제적 보완성뿐만 아니라 사회 일상의 공동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샌디에고-티후아나, 엘파소-후아레스에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 국경을 넘고 있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가사노동이나 건설현장의 일터로 향하며 마킬라도라의 미국인 경영진은 반대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출근한다. 예를 들어, 멕시칼리(Mexicali)에서 멕시코 농업 노동자들은 이른 새벽에 캘리포니아 주 칼렉시코(Calexico) 국경을 넘어 미국 골짜기의 농장으로 간다.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은 국경의 남쪽인 멕시칼리(Mexicali)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에 의존하고 있다. 멕시코 Mexicali와 캘리포니아 주 Calexico는 국경 간 무역과 교통에 의존하는 국경 도시이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국경이주는 합법적인 이주로 그동안 미국 경제의 엔진이며 나라의 경제 성장의 담보물이다. 국경이 폐쇄된다면 양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멕시코 경제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전적으로 노동 시장에서 틈새-건설 하위노동자, 거리 청소, 대중교통 운전, 유지 보수에서 일하는 근로자, 시장 상인-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생존의 길이 닫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경의 도시들은 일상 삶의 공간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후아레스의 청소년들은 등교시간에 맞춰 엘파소 행 버스에 오른다. 평일 낮이나 휴일에는 멕

시코 주부들이 생필품 할인 매장인 1달러 스토어에서 쇼핑을 한다. 국경은 대중매체도 공유한다. 샌디에고의 라디오나 미국에서 제작된 스페인어 TV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멕시코 방송도 쉽게 시청할 수 있다. 스페인어 신문도 영어 신문 못지않게 많이 팔린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스페인어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봄비는 엘파소나 러레이도(Laredo)의 다운타운에서는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경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매 도시에 서로가 형제자매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국경은 장벽이 아닌 울타리로 여기며 오래 살아왔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 멕시코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⁴⁰⁾

2) 국제 생태 공동 공간 조성 측면의 국경협력

미국과 멕시코 장벽을 대신에 국제 생태 공동 공간 조성 측면의 국경협력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국경정책을 실시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는 국경이주에 있어서도 연결과 협력 공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민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는 빅 벤드 국립공원(Big Bend National Park)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으로 분단하지 않고 두 나라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 왔다.⁴¹⁾ 리오그란데 양쪽의 보호 지역은 단일 생태계로 인식되기에 양국의 협력 관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국제 공원의 증추를 형성 할 수 있는 곳이다.

1936년 미국과 멕시코는 빅 벤드 국립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1944년 6월 12일 서부 텍사스의 리오그란데에서 거의 1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빅 벤드 국립공원 설립 법안에 서명했다.⁴²⁾

이는 레이건 대통령과 미겔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의 관심도 계속 끝었다. 그들은 1983년에 국경 지역의 ‘보호, 개선 및 보전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1994년 멕시코는 마테라스 델 카르멘(Maderas del Carmen) 보호 지역을 설립했다. 2000년에는 멕시코 회사 세멕스(Cemex)가 큰 뿔양과 흑곰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가 접

40) <https://www.wbur.org/npr/709999340/trump-set-to-visit-border-town-of-calexico-where-residents-fear-border-shutdown>

41) <https://www.nytimes.com/2019/03/14/opinion/trump-wall-big-bend-park.html>

42) <https://www.nationalparkstraveler.org/2008/06/park-history-big-bend-national-park>

경 지역이 보존되었다. 그 후 오바마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빅 벤드 국립 공원 공동 보호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미국과 멕시코 관리들은 국가 간 경계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안보라는 미명하에 장벽 건설이라는 이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 격렬한 투쟁의 한가운데 국경의 양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민간 땅을 점유하지 않고 일상적인 관계를 실제로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국제 공원은 분열과 분리의 순간에 협력과 연결의 희망의 강한 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공동 관리된 공원은 이 지역을 단일 생태계로 인식하고 가뭄, 홍수 및 산불, 침입하는 식물 및 멸종 위기 종과 같은 국경을 공유하는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대해 양국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협력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는 서식지 복원과 수자원 보존에 대한 공동 노력은 강 유출을 증가시키고, 불법적인 횡단을 막고, 농업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공원은 관광을 위한 역할도 할 수 있다.

공원이 미국과 캐나다의 물을 공동 대응 관리하지만, 미국과 멕시코는 각자의 토지 및 공원 방문객에 대해 별도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멕시코의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공원 관리자는 수색 및 구조, 야생 동물 보호에서부터 과학 연구 및 토착 식물 복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협력 할 수 있다.

공화당은 루스벨트 대통령 이래로 공원과 국제 보전을 지원하는 전통이 강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최근 대대적인 토지 보전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회에서 함께 힘을 합쳤다. 민주당도 그동안 야생 및 경관 법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법은 텍사스의 리오그란데에서 196마일, 뉴멕시코에서 68마일을 보호한다.

멕시코와 미국은 국경만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공유했다. 국립공원 연결 프로젝트는 두 나라가 분열하는 것보다는 상호 관계를 존중하고 위험한 시기에 중요한 협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미국-멕시코 장벽 논쟁을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의 관점에서 이민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국경의 장벽 건설은

국경안보와 국경협력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경의 장벽 건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와 선거 정치라는 통제 장치 하에 장벽 건설의 이민정책 자체를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전략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멕시코 국경에 접근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확대를 들고 있지만 2000년 이래로 불법 이민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는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아니라 비자 과도 거주자(Overstayer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으로 남부 국경을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비자를 초과 체류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은 국경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마약 밀수, 국경 범죄 등을 들고 있지만 정책 실패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다. 주요 해결책으로는 미국 내의 약물 중독 치료와 마약 사용 수요를 줄여야 한다. 멕시코에서 폭력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하는데, 멕시코에 폭력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미국 무기 판매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국경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리밴의 이주를 들고 있다. 사실 중남미 지역의 불안정성은 미국 정책에서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있으며, 이들이 중남미 통로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같은 몇몇 국가는 광범위한 불안정, 취약한 정치 및 사법 제도, 높은 수준의 빈곤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멕시코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과하는 국경 중 하나이다. 국경협력 차원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매일 백여만 명이 출퇴근 노동자로 왕래하여 매년 최소 3억 5000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다. 미국-멕시코의 주요 국경도시는 서로 상호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가사노동이나 건설현장의 일터로 향하며 마길라라의 미국인 경영진은 반대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출근한다. 그들은 형제자매처럼 장벽이 아니라 울타리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멕시코인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국경에서 합법적인 통과에도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중남미의 더 많은 주민들이 캐리밴 형태로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농업과 같은 직종에서의 미국의 계절적인 수요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장벽 건설은 국경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양국 국민들 대다수는 오히려 분리와 배제보다는 연결과 협력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은 2018년 11월 30일 NAFTA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합의(USMCA)에 공식 서명했다. 이 합의는 무역 중심이어서 지역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민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멕시코 장벽 건설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민 및 관세에 관한 합의이다. 2019년 5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⁴³⁾ 미국과 멕시코는 결렬한 협상 끝에 남서부 국경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이주자 수를 줄이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모든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에서 무기한 연기했다. 멕시코는 멕시코와 남쪽 국경을 통한 이민자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이민 및 관세에 관한 공동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멕시코는 남부 국경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멕시코 전역에 방위군 배치를 포함하여 불법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멕시코는 또한 밀수 및 인신 매매 단체와 불법 금융 및 운송 네트워크를 와해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미국과 멕시코는 정보 공유와 공동 국경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조율된 행동을 포함하여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미국은 남부의 국경 전체에 걸쳐 기존의 이주민 보호 협약인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이행을 즉시 확대할 것이다. 즉, 미국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신청을 한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멕시코로 신속히 돌아갈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는 망명 신청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국제 의무를 준수하여 인도주의적 이유로 모든 개인의 입국을 허가 할 것이다. 멕시코는 또한 원칙에 따라 직업, 건강관리 및 교육을 제공 할 것이다. 하지만 양국은 채택된 조치에 기대되는 결과가 없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하고 필요하다면 90일간 불법 이주와 난민 문제를 다루기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⁴⁴⁾

하지만 이외에 미국과 멕시코 간에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면합의 문서에는 ‘당사자의 국내·국제법적 의무’, ‘각 당사자의 책무’, ‘제3국

43) <https://www.politico.com/story/2019/06/04/trump-republicans-mexico-tariffs-1353150>

44) <https://www.nytimes.com/2019/06/07/us/state-department-mexico-trump.html>

국민의 망명지위 주장 절차’, ‘망명절차 관련 부담 분담’, ‘합의 이행 및 효력 발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⁴⁵⁾ 특히 이중에서 ‘안전한 제 3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양국의 이민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중미 출신 이민자가 미국 국경이 아닌 멕시코에서 보호받을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수를 현저히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 당국은 ‘안전한 제 3국’에 관한 제안 거부와 이면합의를 부인했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도착하는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감소시킬지와 멕시코가 실제로 남미 이민자 수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더군다나 멕시코에서는 이민자를 감금하고 추방하는 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미국-멕시코 장벽 건설을 대신하며 어느 정도 중미 이민자 억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협력을 위한 공동 경제 공간(Common Economic Space)과 국경의 공동 생태 공간(Common Ecological Space)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생태보호 전략 속에서 국경 정책을 실행한다면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경안보와 효과적인 국경협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경문제에 대한 법적인 토대의 구축과 공동 상생이라는 국경 간의 관계에 기초한 투명한 국경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장벽의 이민자 정치보다는 국경 전략에 따른 지역통합과 발전이 국경안보 위협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45) http://www.news1.com/view/?id=NISX20190612_0000678384&fbclid=IwAR1OtiXc5ibOnz5SICG3jC7s5Ekfys3j2LmE_vnWD9C1DC63eAp9RConf8E

SESSION 2

Recent trends of Migration to Rwanda: Policy and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Ntegamaherezo Emmanuel
(Chonam National University)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y go hand in hand and every country on earth sets policies to regulate this. When migrants are well managed, they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both hosting and origin country.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ization process are also drivers of migration and cannot be left behind, though mostly the reasons are to find out good standards of living.

This study “Recent trends of Migration to Rwanda: Policy and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had aim to analyze recent trends of migration to Rwanda starting with a brief historical context and moving on to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s. This paper also discussed broad trends in the rates and levels of migration to Rwanda over the past decade, the destination they chose on arrival to Rwanda; and policy implication of these trends. It also served as a tool for policymakers working on migration issues in Rwanda to help clarify the basis of current migration policy and indicate the potential of the existing framework for development-oriented approach to migration management in Rwanda.

The results showed that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y in Rwanda had contribu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Rwanda. The results showed that those immigrants with necessary skills greatly contribute to the Rwandan sustainable development by doing jobs that Rwandese cannot do and also pay high taxes to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also gains taxes and Rwandese learn from their counterparts from the regions. Skilled migration to Rwanda played important role in filling labor needs in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that are essential for Rwanda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Key Words: Mig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Migration policy, Regional integration

I. Introduction

1. Introduction

People migrate to respond to economic or other problems they feel in their home country and for the promise of attractive alternatives elsewhere. Migration is therefore, a copying mechanism for changing circumstances¹⁾. Past analys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direction and intensity of movements can often be explained with the “push” and “pull” factors. Previous African studies have often focused on rural push factors, such as low agricultural prices, urban pull factors such as the promise of high income, to help understand the urbanization process, but they have often neglected to contemplate how these factors may have changed in a country over time²⁾.

International mobility of people has significant impacts not only on the lives of migrants but also on the fortunes of people they leave behind and those where they make their new homes. Due to this therefore, policymakers pay much attention to the trends and patterns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re is also another trend of changing dynamics in what is motivating movements of people. For example, some skilled experts have been targeting emerging economies with gaps in expertise to take advantage of the existing needs³⁾. This has been the case where Kenyan and Ugandan experts have increasingly been moving to Rwanda and Burundi to provide them with much needed skills and expertise⁴⁾. Also business people have been targeting virgin and less competitive areas which has led to a number of companies including banks from Kenya to move to Rwanda and Burundi (A case of Kenya Commercial Bank “KCB” and Nakumatt)

1) Ewa Kepinska: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The 2007 SOPEMI Report for Poland. December 2007

p14

2) Jennifer Maria Olson: Impact of changing socioeconomic factors on migration patterns in Rwanda 1990, p1

3) Jennifer Maria Olson: Impact of changing socioeconomic factors on Migration patterns in Rwanda 1990. P13

4) Ibid

Migration is one of the features that define the 21st century. It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all aspect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verywhere, and as such will be key to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development is getting recognized, it remains underexplored. We know that a lack of opportunities and investment in origin countries can drive migration. But we also know that migration can improve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origin countries, fill labor gaps and foster innovation in host countries, and can contribute to development along the journey (or, in “transit countries”). It is an effective poverty reduction tool- not just for migrants themselves, but also for their families and their wider communities.

After Rwanda has joined the East African Community July 9, 2009, the country gets a big number of inflows especially from neighboring countries of Kenya, Uganda and Democratic Republic of Congo⁵⁾. As per the Rwanda migration report of March 2017, in/outflows of people to Rwanda have increased to 18% compared to the last 5 years. A good number of foreign workers started to migrate to Rwanda after 1994 genocide against Tutsi. This article analyzes recent trends of migration to Rwanda starting with a brief historical context and moving on to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s as a contribution of migration to Rwanda.

This paper also discusses broad trends in the rates and levels of migration to Rwanda over the past decade, the destination they choose on arrival to Rwanda; and policy implication of these trends. It also serves as a tool for policymakers working on migration issues in Rwanda to help clarify the basis of current migration policy and indicate the potential of the existing framework for development-oriented approach to migration management in Rwanda.

Many researchers in Rwanda and in the region conducted research in the field of migration, regional integration, etc. but limited only on remittances that are sent to/from Rwanda.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have a critical analysis of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y in Rwanda, its trends and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ults will help political decision makers to look into the cur-

5) <https://www.eac.int/eac-partner-states/rwanda>

rent migration policy and see if they have to do any amendments; forecast the future of Rwandan citizens in the mirror of migration; they will also be aware of what migration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 adequate majors can be taken.

2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bases its methodology on primary and secondary data. Reliable data are collected from relevant information sources from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in Rwanda and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I also conducted phone call interviews with relevant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takeholders as well as individual actors affected by migration policy in Rwanda and migrants activities in Rwanda. The total interviewees were 25, 13 from Government and 12 from Private Institutions.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and assessed the variance and relationship of migration and migration policy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Rwanda. Trends of migration to Rwanda was also attended.

II. Migration background in Rwanda

1. The Migration Policy in Rwanda

The migration policy in Rwanda is a newly prepared document that seeks to fulfill the key principles of the Rwanda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EDPRS) and the vision 2020. The above important document provides a clear road map of how Rwanda and its people envisage to be in the year 2020⁶⁾. The main goal in the vision 2020 is that Rwanda seeks to transform its economy from the agriculture driven to knowledge based economy. The prime mover of the knowledge economy is highly skilled labor and well educated workforce whom is able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The migration policy is crafted along these principles of vision 2020 that seeks

6) Republic of Rwanda. National security Service.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p3

to transform Rwanda into a prosperous welcoming and secure nation built on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and private sector driven,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Rwandan Migration policy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s:⁷⁾

- i. Facilitate and encourage tourists to come to Rwanda without and hesitation;
- ii. Allow entry of foreign skilled workforce found to be lacking in Rwanda's labor market;
- iii. Allow and facilitate entry of investors with substantial funds to come and invest in the country
- iv. Enable the Rwandan Diaspora to contribute towards nation building

The policy intend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skilled mig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alleviating the consequences of illegal migration through a skilled work program. The government of Rwanda believes that those immigrants with necessary skill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wandan economic development by doing jobs that Rwandese cannot do and also pay high taxes to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will gain taxes and Rwandese will learn from their counterparts from the regions.

Skilled migration to Rwanda will play important role in filling labor needs in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that are essential for Rwanda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7) Ibid

<Table 1> Immigration and Emigration provided services and cost per service

No	Service	Time Frame	Cost in Rwandan Francs	Observation
1	Ordinary Work Visa/Permit)	3 working days	50000	Originally it was costing 200000
2	Religious And Student Visa	3 working days	50000	
3	Diplomatic Visa	2hours	Free	
4	Resident and Work permit	4 working days	50000	It used to cost 200,000
5	Extended Resident Visa	3working days	50000	
6	Foreign Identity card	2 working days	5000	
7	Temporary Resident Permit for refugees	7working days	Free	
8	Single entry visa for non EAC, COMESA member states and those without bilateral agreement with Rwanda	2 working days	\$60	
9	Emergency travel documents for foreigners	2 working days	50000	
10	The Rwandan passport	5 working days	50000	
11	Certificate of nationality for naturalization	3 months	100,000	
12	Certificate for foreigners born on the Rwandan Territory	3 months	20,000	
13	Certificate for foreigners married to a Rwandan	3 months	20,000	
14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International NGOs	7 working days	free	
15	Laissez-Passer	2 working days	3000	

Source: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Received by email: diaspora@migration.gov.rw: Received on May 29, 2019

From the above table, it is clear that the procedures to obtain the required documents to come to Rwanda have been simplified. For example, on average it takes three days to get the required documents and the cost has been drastically reduced which illustrates Rwanda's commitment to facilitate movements of people.

Indeed, most of these services can be obtained online by visiting the website www.migration.gov.rw.

The new migration policy mainly seeks to facilitate tourists,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ttract high skilled workers to fill the existing gaps in the labor market. The long term objective is to position Rwanda as a major tourist destination as well as skills and investment hub in the region. The migration services seeks to contribute towards the creation of a high income, knowledge based and innovative economy built on excellent public service delivery.

2 Policy Options for Addressing Migration and Development

It is clear from the above analysis that the current migration policy is well aligned with investment, tourism and skill development policies in Rwanda. The tourism and investment promotion and attraction have been earmarked as the potential driver for the Rwandan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analysis of the Rwanda migration policy, there is an enormous economic advantage that accrues to the country which should be replicated by the EAC partner states and these advantages include:

- i. Increased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due to skilled work force;
- ii. Emigrants are able to share and exchange their best practices and experiences with the local citizens.

On a concluding node,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Rwandan migration policy has been crafted to drive investment, skills development and tourism promotion which are key components in the Rwanda's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EDPRS) and the vision 2020. The fundamentality being that the country needs talents and skills to ensure innovation, build institutions and implement developmental programs geared towards achieving its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as articulated in the visio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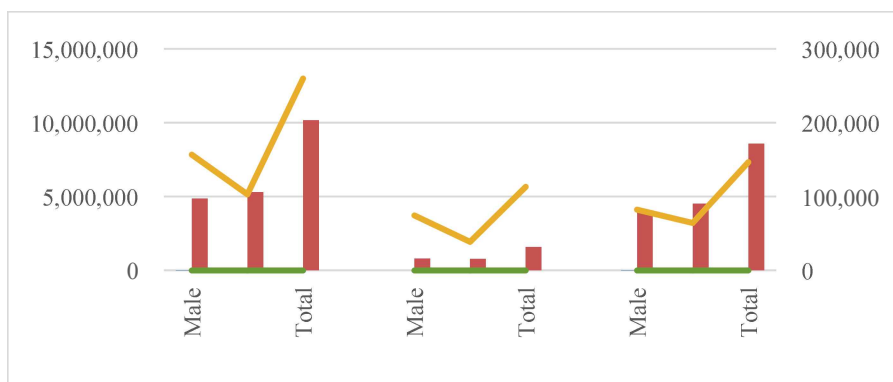
III. Results and Discussion

1. The presented results derive from data from different data sources. Migrant tables by their status, sex and area of residence are presented.

<Table 1> Distribution (Number and percentage) of the resident population by migration status, sex and area of residence

Area of Residence	Number of migrants	Number of non-migrants	Not stated	Percentage of foreign born Migrants
Male	188,841	4,870,438	5,589	3.7%
Female	181,390	5,263,858	5,861	3.3%
Total	370,231	10,134,292	11,450	3.5%
Urban				
Male	95,770	794,172	1,864	10.7%
Female	84,459	759,553	1,866	10.0%
Total	180,229	1,553,725	3,730	10.4%
Rural				
Male	93,071	4,076,266	3,725	2.2%
Female	96,931	4,504,301	3,995	2.1%
Total	190,002	8,580,567	7,720	2.2%

Source: Rwanda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eceived by email: jmusabyimnana@mifotra.gov.rw. Rwand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ceived on May 29,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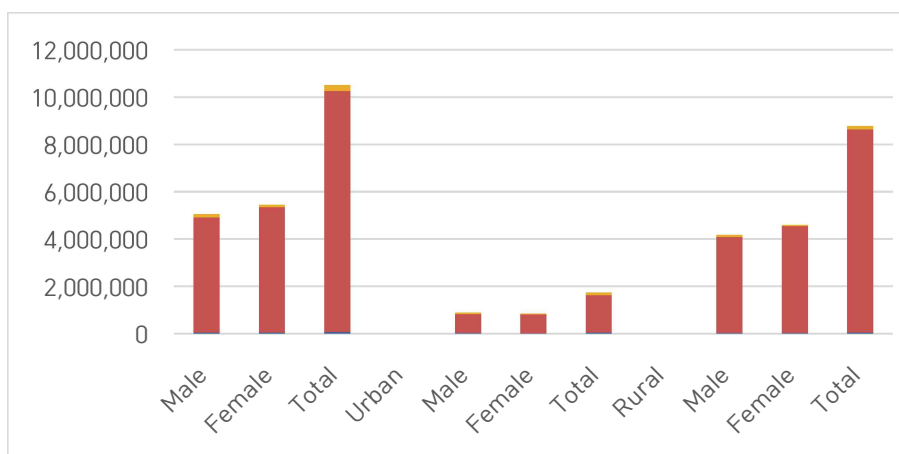
Source: Author's own work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wand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2

The distribution of foreign-born residents (international lifetime immigrants) by sex and province of residence shows that the percentage of foreign-born females is slightly higher in all provinces except in Kigali city, where 55% are males, and in the Eastern province where the percentage of females is equal to that of males.

<Table 2> Distribution (number and percentage) of the resident population by recent migration status, area of residence and sex

Area of Residence	Number of migrants	Number of non-migrants	Not stated	Percentage of foreign born Migrants
Male	469,795	4,394,994	200,079	9.3%
Female	470,798	4,816,712	163,595	8.6%
Total	940,593	9,211,706	363,674	8.9%
Urban				
Male	222,815	591,051	77,940	25.0%
Female	204,594	596,577	44,707	24.2%
Total	427,409	1,187,628	122,647	24.6%
Rural				
Male	246,980	3,803,943	122,139	5.9%
Female	266,204	4,220,135	118,888	5.8%
Total	513,184	8,024,078	241,027	5.8%

Source: Rwanda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eceived by email: jmusabyimnana@mifotra.gov.r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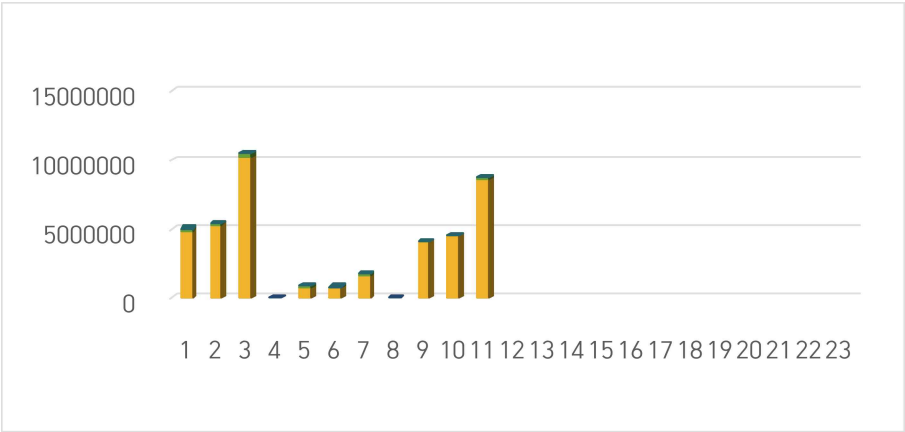
Source: Author's own work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wand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2

Table 3 below presents the distribution of the resident population that experienced a recent migration by province and area of residence. It shows that, as observed in Table 1, the highest percentage of recent migrants is also found in Kigali City (about 29%) and the Eastern Province (about 14%). Again, as expected, the percentage of recent migrants is always higher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ranges from a seven-fold difference in the Western Province (about 12% urban and 2% rural) to a two-fold difference in the Eastern Province (about 23% urban and 13% rural).

<Table 3> Number and percentage of resident population which has experienced a recent migration by sex, province and area of residence

Province and area of residence	Male		Female		Both Sex	
	Number of Migrants	% of Migrants	Number of Migrants	% of Migrants	Number of Migrants	% of Migrants
Urban	222,815	25.0%	204,594	24.2%	427,409	24.6%
Rural	246,980	5.9%	266,204	5.8%	513,184	5.9%
Total	469,795	9.3%	470,798	8.6%	940,593	8.9%
Kigali City						
Urban	155,190	34.4%	139,152	34.1%	294,342	34.3%
Rural	17,925	13.3%	16,767	12.1%	34,692	12.7%
Total	173,115	29.5%	155,919	28.5%	329,034	29.1%
South						
Urban	19,490	16.3%	18,623	16.9%	38,113	16.6%
Rural	46,168	4.1%	50,900	4.1%	97,068	4.1%
West	65,658	5.3%	69,523	5.1%	135,181	5.2%
Urban						
Rural	17,626	11.8%	17,121	11.3%	34,747	11.5%
Total	15,873	1.6%	19,751	1.7%	35,624	1.6%
North	33,499	2.9%	36,872	2.8%	70,371	2.9%
Urban						
Rural	8,357	10.8%	8,946	10.7%	17,303	10.8%
Total	9,836	1.3%	14,469	1.8%	24,305	1.6%
East	18,193	2.2%	23,415	2.6%	41,608	2.4%
Urban						
Rural	22,152	23.6%	20,752	22.4%	42,904	23.0%
Total	157,178	13.5%	164,317	13.2%	321,495	13.3%
	179,330	14.3%	185,069	13.8%	364,399	14.0%

Source: Rwanda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eceived by email: jmusabyimnana@mifotra.gov.rw.
Rwand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ceived on May 29, 2019



Source: Author’s own work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wand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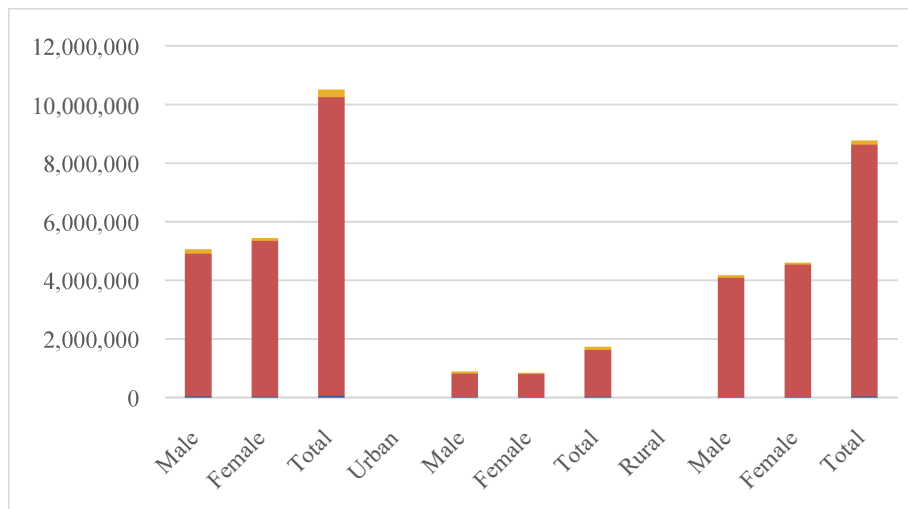
<Figure 4> presents the distribution of the recent migrant population by previous province of

residence and area of residence. It shows that the lowest percentages of recent migrants residing in their current province of residence are found in the Eastern Province (about 22%) and Kigali City (about 24%). This means that, first, these groups have experienced a recent migration within the boundaries of their current provinces of residence and, second, that these provinces have registered the highest intake of recent migrations (about 78% and 76% respectively). Recent in-migrants currently living in the Eastern Province are mainly from the Northern Province (about 27% of all in-migrants in the province), the Western Province (about 16%) and Kigali City (about 14%). Recent migrants currently living in Kigali City have mainly resided in the Southern (about 26%), Western (about 16%) and Eastern (about 12%) provinces. It is clear from the data that proxim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ent migration trends. This means that more recent migrants have moved to a neighboring province than far from their place of origin. In the case of Kigali City, besides the proximity factor, the fact that it offers more diverse economic opportunities is also attractive to in-migrants.

<Tale 4> Distribution (number and percentage) of the resident population by recent international migration status and by sex and area of residence

Area of residence	International Migration Status			Percentage of those who have lived abroad in the last 5 years
	Number of those who have lived abroad in the last 5 years	Number of non-migrants	Not stated	
Male	35,258	4,872,675	156,935	0.7%
Female	30,505	5,317,461	103,139	0.6%
Total	65,763	10,190,136	260,074	0.6%
Urban				
Male	16,768	800,492	74,546	1.9%
Female	13,965	793,130	38,783	1.7%
Total	30,733	1,593,622	113,329	1.8%
Rural				
Male	18,490	4,072,183	82,389	0.4%
Female	16,540	4,524,331	64,356	0.4%
Total	35,030	8,596,514	146,745	0.4%

Source: Rwanda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eceived by email: jmusabyimnana@mifotra.gov.rw.
Rwand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ceived on May 29, 2019



Source: Author's own work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wand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2

The distribution of the resident population that lived abroad in the last five years by province of current residency and sex shows that the percentage of males is higher in all provinces, except in the western and the northern province, where females represent, in both cases, about 52% of the recent international immigrants.

2. Trend of Migration to Rwanda

As indicated by various data sources, the trend of a growing migration to Rwanda has continued in 2009 and 2010. As noted from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service data, the number of migrant skilled workers in 2009 was on average and increased to 21% compared to 2010. This was actually the largest increase since independence of Rwanda in 1962. In each of the first two quarters of 2009, the number of migrants was higher in comparison with the corresponding quarters of 2010, by 19%, 16% respectively, coming to 41,562 in the third quarter of 2011. In every quarter of 2010,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igrants in comparison with the corresponding quarter of 2009 were smaller than the preceding years. In addition, the number of migrants in the third quarter of 2013 was slightly smaller in comparison with the preceding quarter, by 2.8%, while for the last five years, the number of migrants in the third quarter was always higher than the number of migrants in the second quarter. The data for the third quarter of 2009 may suggest a slowing dynamics of migration to Rwanda.

As the data from the Ministry of Labor show, a total number of 2056 people in 2011 received work permit as expatriate staffs in different institutions around the country as compared to approximately 1985 work permits issued in 2009, and approximately 1902 in 2008. Apparently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was on decline in 2008 compared to 2009 and preceding years. Between January and June 2018, however, already around 3241 migrant workers were registered, which indicates an increase in the whole year of 2018. It seems that after initial declines and the establishment of migration policy, the country keeps encouraging skilled foreign workers to come to work in Rwanda.

3. Interview guide to respondents

In order to have views of different people about migration and how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 conducted interview with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takeholders and individual migrants affected by migration policy in Rwanda. The total interviewees were 25, 13 from Government Institutions and 12 from Private Institutions.

<Table 5> Interview questions and domain of discussion

No	Questions
1	What is your country of origin? Previous occupation? Reason for migration?
2	For how long have you been to Rwanda?
3	What is your monthly earning? Do you experience any financial change after you migrated to Rwanda?
4	What is your life situation in Rwanda now? Occupation? Finances? Social network?
5	Do you run a business in Rwanda? Does your investment make profit?
6	Can you give an account of the return on your investment in Rwanda for the last three years?
7	What is migration according to you?
8	What is the inflow of migrant workers in Rwanda as of June 2019?
9	Does Rwandan migration policy facilitate people to migrate to Rwanda?
10	In your views, does Rwanda benefit from migrant workers in Rwanda?
11	What do you learn from migrants working with you?
12	According to you, does migration contribute to increa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13	What benefits do you get from your job apart from your monthly pay?

Source: Interview questions formulated by the author [May27, 2019]

<Table 6>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participants

No	Country of origin	Working Institution	Position	Marital status
1	Rwanda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Public Service Management Unit Director	Married
2	Rwanda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Public Service Inspection& Advisory Services	Married

			Specialist	
3	Rwanda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Employment Policy and Labor Economist Specialist	Married
4	Rwanda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Chief Labor Inspector	Single
5	Rwanda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Diaspora Issues Manager	Single
6	Rwanda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Communication and Customer Care	Married
7	Rwanda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Legal Officer	Married
8	Rwanda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Citizenship	Married
9	Rwanda	Rwanda 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 and Emigration	Legal Advisor to the Director General	Married
10	Rwanda	Marriott Hotel	Manager	Single
11	Rwanda	Marriott Hotel	Waiter	Married
12	India	University of Rwanda	Professor	Single
13	India	University of Rwanda	Professor	Married
14	Uganda	University of Rwanda	Professor	Single
15	Uganda	University Teaching Hospital of Butare	Surgeon	Married
16	Uganda	MTN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	Data analyst	Married
17	Uganda	Rwanda Revenue Authority	Tax Collector	Married
18	Kenya	Kenya Commercial Bank (KCB)	Customs officer	Married
19	Kenya	Kenya Commercial Bank (KCB)	Cashier	Married
20	Burundi	University of Rwanda	Professor	Married
21	Kenya	Restaurant (Kigali City)	Manager	Married
22	Kenya	Restaurant (Kigali City)	Waiter	Single
23	Tanzania	Teaching in High School	Teacher	Married
24	Tanzania	Teaching in High School	Teacher	Married
25	Tanzania	Teaching in High School	Teacher	Single

Sourc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Author from respondents and their respective working institutions. [May 29,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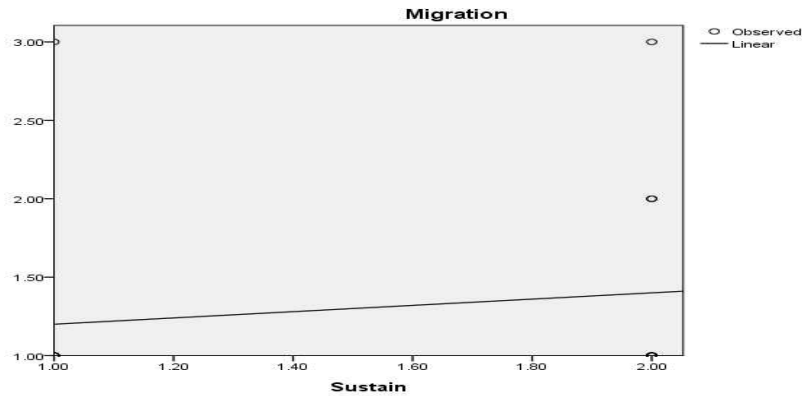
Interview questions were categorized into two categories. First category questions were addressed to Rwandans working in 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and Rwanda Immigration and Emigration and who have some connection with migration policy and labor policy in their attributions. The second category of questions were addressed to migrants working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Questions related to migration policy and migrant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99% of interviewees confirmed that the Rwanda migration policy was set to open the door and facilitate foreigners to visit the country. They affirmed that Rwanda's economy is still dominated by subsistence agriculture, while tourism and services are becoming increasingly more important sources of national revenue (services being the most valuable, contributing 43.6% to GDP). The poverty rate decreased from 57% to 39% between 2005 and 2013, while life expectancy rose from 55.5 to 65.6 years in that same interval. The country has therefore strengthened external connectivity and encouraging regional flows of both people and goods in order to transition from a mainly agrarian to a knowledge-based economy.

Interview questions about life situation in Rwanda, occupation, Finances and social network, 97.34% of migrants expressed satisfaction of their life, finances and social network. They revealed that many of them are able to financially support their families back home. Interviewees from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added that migrants contributed more to government revenue in 2012 as a fact. They presented a potential fiscal surplus of RWF 32.7 billion (Rwandan Francs), representing about 2.5% of the approved budget of 2012.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indicated in this table, the linear curve goes exponentially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It therefore correlates to the criterion, indicating that migration to Rwanda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4>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Mig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urce: Author's own work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wand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2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igration

Correlations		Sustainable	Mig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earson Correlation	1	.156
	Sig. (2-tailed)		.511
	N	20	20
Migration	Pearson Correlation	.156	1
	Sig. (2-tailed)	.511	
	N	20	2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2 level (2-tailed)

Source: Author's own work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wand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2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igration

Correlations		Sustainable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Pearson Correlation	1	.189
	Sig. (2-tailed)		.424
	N	20	20
Policy	Pearson Correlation	.189	1
	Sig. (2-tailed)	.424	
	N	20	20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11 level (2-tailed)

Source: Author's own work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rvice and Labor, Rwand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2

The tables 5 and 6 above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main variables: Mig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igration policy. Table 5 shows that the coming of migrants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is indicated by the Pearson correlation equivalent to 2.0 equivalent to 20% as it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6 shows the correlation between migration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clear that migration policy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Pearson correlation of 0.11, which equivalent to 11%.

IV.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urrently migration issues in Rwanda in general and free movement of people in particular is not far from a smooth situation with the East African Community (EAC). Migration to Rwanda was indeed made easy by the migration policy and the need for the country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migration policy, the country expects to receive high skilled migrants who to work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closely with local people. Important to note as well is that foreign investors are also encouraged and as of now, may have established their business in country.

As a region, the situation is so far encouraging despite a few critics that have to be worked on. As the common mark for EAC Member States is expected to come into force soon,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improve further. The business community is very keen and interested to see the promises and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ommon market protocol being implemented and coming to fruition. Even in areas where not lots of changes are expected, the attitude of the relevant bureaucrats will be learning towards the fact that the EAC is a common market hence fully facilitating the free movement of people within the region.

Again on a final not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ast African Community has particular interest in promoting labor migration for development for two main reasons. First, migration of skilled workforce will harness the benefits in areas with gaps; and secondary, labor migration will boost synergies within the partner

States back and forth with spillover effects and thu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overty reduction in the region.

As far as the common market is concerne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ile the common market protocol grants broad rights relating to the free movement of people and workers and the right of establishment and residence, the regulations and schedules for their implementation ensure that the movement of people under the protocol will still be controlled. There are also inbuilt safeguard mechanisms that a partner state cannot adopt in controlling the impact of provisions.

References

- 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1987. Country Development Strategy Statement
- FY 1988: Rwanda. Washington, DC: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Albert, T, Maxime A, Crener, and G.Gagnon. 1982. Modele de Simulation Demo Economique pour le Rwanda. Ottawa, Canada: Institut de Development International et de Cooperation, University d'Ottawa.
- Amin, Samir. 1974. Introduction. In *Modern Migrations in Western Africa*.ed. Samir Amin, 65-12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ard, Frank E. 1982. Rural Population Pressure and Redistribution in Kenya. In *Redistribution of population in Africa*, ed. John I. Clarke and Leszeka A. Kosinski, 150-56. Guildford, Surry: Biddles Ltd.
- Brown, Lawrence A. and Victoria A. Lawson. 1985. Rural-Destined Migration in Third World Settings: A Neglected Phenomenon. *Regional Studies* 19.5: 415-432
- Brown, Lawrence A. and E.G Moore. 1970. The intra-Urban Migration Process: A perspective. *Geografisca Annaler* 52B: 1-13
- Buksmann, P.E. 1980. Migration and Land as Aspects of Underdevelopment: An Approach to Agricultural Migration in Bolivia. In *the Geographical Impact of Migration*, ed. Paul White and Robert Woods, 108-128. London: Longman Group Ltd
- Durham, William H. 1979. *Scarcity and Survival in Central America: Ecological Origins of the Soccer War*.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ndley, Sally E. 1981. *Rural Development Programs: Planned Versus Actual Migration*

- Outcomes. In population Distribution policies in Development Planning. United National, 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Studies No. 75: 144-168- New York: United Nations
- IOM (2010) Labor Migration from Indonesia: An Overview of Indonesian Migration to Selected Destinations In Asia and the Middle East. Jakarta: IOM.
- ISSA (2014) Handbook on the Extension of Social Security Coverage to Migrant Workers. Geneva: ISSA.
- Jones, K. (2015) Recruitment Monitoring & Migrant Welfare Assistance: What Works? Dhaka: IOM.
- Lund, F. (2009) 'Social protection and the informal economy: linkages and good practices for Poverty reduction and empowerment' in Promoting Pro-Poor Growth Social Protection. OECD.
- Lustig, N., Amábile, F., Bucheli, M., Molina, G.G., Higgins, S., Jaramillo, M., Pozo, Arauco, V.P., Pereira, C., Rossi.
- M., Scott, J. and Yanez Aguilar, E. (2013) the Impact of Taxes and Social Spending On Inequality and Poverty in Argentina, Bolivia, Brazil, Mexico, Peru and Uruguay: An Overview. Commitment to Equity Working Paper No. 13. New Orleans: Tulane University.
- McLaughlin, J. (2009) 'Trouble in our fields: health and human rights among Mexican and Caribbean migrant farm workers in Canada'. Unpublished dissertation. Ottawa: Library and Archives Canada
- Millard, D. (2008) 'Migration and the portability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position of Non-citizens in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frican Human Rights Law Journal 28(1)
- Morlachetti, A. (2015) Current State of Social Protection Legislation in Barbados And The Organiz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SESSION 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의 언론 뉴스 내용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사를 중심으로

안 형 준 (전북대학교) · 설 동 훈 (전북대학교)

한국 언론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보도한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매체별 차이를 알아본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언론 매체 성향을 보수/진보로 분류하고, 각각의 보도 내용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임의로 선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제한된 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이 뚜렷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내용분석의 일종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그 선행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도 등 핵심어를 토대로 주요 언론의 기사를 검색하여 그 기사 전문을 입수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말뭉치(corpus)에 잠재된 주제들(topics)을 찾아내는 텍스트마이닝 방법의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외생변수에 따른 토픽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토픽모델'(structural topic Modeling: STM)을 이용하여, 언론사별 외국인 고용허가제 보도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언론사별 토픽의 비중(weights)을 나타내는 세타(θ) 값을 계산하여, 그것을 자료로 삼아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과 위계적 집락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언론은 제한된 몇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것을 분류하는 핵심기준을 제시하기로 한다.

주제어: 고용허가제, 언론매체, 신문기사, 토픽모델링, STM, 다차원척

2019년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2019.06.21(금)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의 언론 뉴스 내용분석: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사를 중심으로

안형준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함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16년 ~ 2018년 사이 불거졌던 제주 난민과 관련된 보도의 댓글들
- 현재까지도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외국인 범죄, 한국 경제상황으로 인한 취업난, 대중매체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아직까지도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서영, 2018).



1. 연구배경 및 목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문기사도 마찬가지로
- 뉴스기사에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체 기사를 분석해보자

2. 이론적 배경

● 외국인 고용허가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 고용허가제(E-9)와 동포 방문허가제(H-2)로 구분됨.
- 87년 이후 외국인의 대량 유입은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하게 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은 연수생 신분으로 노동하게 됨.
-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에 시달림.
- 95~97년, 00~01년, 01~03년 3번의 논의를 거침.
- 2003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 현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등 16개국의 외국인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자로 들어옴.

2. 이론적 배경

● 외국인 고용허가제 - 2

-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민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졌지만,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들과 비교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게 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3월 4일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H-2)를 실시함.
-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가 악화되자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됨. 특히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동포근로자들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지자 2009년 5월부터 건설업 한정으로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실시.

2. 이론적 배경

- 언론의 정파적 특성에 따른 선행연구 비교
- 언론에서 특정 주제에 다룰 때, 보수-진보 매커니즘에 따라 양분되는 것처럼, 언론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구분 짓는 것을 정파성이라 함.
- 많은 언론 분석 연구들이 이와 같은 정파성 프레임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함.
 - ex) 심종식(2013)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한미FTA에 대한 논조 비교
 - 박주현(2007) - '이해찬 골프사건' 과 '이명박 테니스사건' 을 다루는 보수-진보미디어의 차이 비교
 - 홍승후, 김범준(2016) - 한겨레와 동아일보의 평창 동계올림픽 정점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1) - 임양준(2012).

- 뉴스프레임 연구를 통한 이주노동자 기사 분석
- 2009년 5월 1일~2012 5월 30일 동안 조선일보, 한겨레, 경인일보, 부산일보에서 이주노동자를 다룬 모든 기사가 수집대상
- 분석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신문들의 보도 성향은 부정적 측면이 강함.**
또한 그 내용으로는 범죄와 불법체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도 방향으로는 한겨레, 경인일보, 부산일보는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보도.
하지만, **조선일보는 부정적 보도 방향이 65.5%로 매우 높게 나타남.**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2) – 김수경(2015).

- 고프만(1974)의 프레임 이론을 사용,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독자의 반응을 유도하게 함.
- 1990년~2009년까지의 조선일보, 한겨레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내용이 대상.
-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보수언론이 진보언론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냄.
- 외국인의 권익을 확장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통해 두 신문의 입장차이를 확인.
한겨레신문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긍정적 내용, 조선일보 이주노동자
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회의적인 내용을 제공.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3) – 김병건(2018).

- ‘표상’의 ‘지시 전략’, ‘서술 전략’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에 쓰여진 신문기사를 분석.
- 2013년 6월 18일~2018년 6월 18일까지의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관련 기사를 수집.
- 두 신문 모두 ‘지시 전략’을 통해 ‘우리(한국인)’와 ‘그들(외국인노동자)’로 구분함.
- 동아일보 -> ‘불법’이라는 라벨을 붙인 후 집단화하여 지시함.
외국인노동자를 ‘범죄’가 연상되는 서술 전략을 사용해 위험한 무리로 개념화하고 차별과 배척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 경향신문 -> ‘이주’라는 라벨(Label)로 개인으로 구분.
외국인노동자를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웃이며, 피해자, 능동적인 사회행위자로 대상화함.

2. 이론적 배경

- 언론의 정파적 특성에 따른 선행연구 비교
 - 최현주(2010)는 보수-진보 매커니즘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 대북지원, 호주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특정 주제에 관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 따라 서로 상이한 태도를 취함.
 - 이준웅, 김성희(2018)은 미세먼지 보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프레임 연구는 연구들에 대한 고착화와 기존의 선행연구의 경향성을 재확인하는 '확증편향' 범할 수 있다고 지적.
- 연구대상으로서
 - 오다영, 최민음(2016)은 헬스 기사에 대한 중앙일간지와 경제일간지를 비교함으로써 경제지가 친기업적이고 상업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을 확인.
 - 송해룡, 이윤경(2013)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를 비교. 지역일간지가 기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역이 입은 피해와 해결방안 촉구 등을 더 적극적으로 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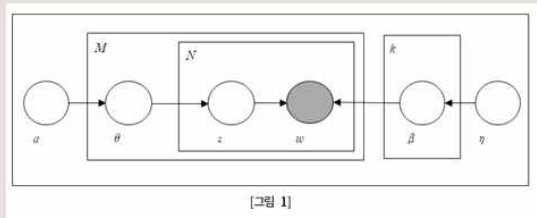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 이처럼 전통적인 텍스트 분석인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은 연구자의 전문적인 사전 지식과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자료 밖에 연구하지 못함.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텍스트들이 방대해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이를 분석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
- 남준호(2016) 아포 일기를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함으로써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을 제시함.

2. 이론적 배경

● 토픽 모델링

- 빅데이터 분석인 텍스트 마이닝 방법 중 하나이며, 텍스트에 숨겨진 토픽을 분석하고 토픽에 분포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내용 분석하는 질적연구방법론.
- 사전 지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말뭉치만으로도 의미의 관계성을 찾을 수 있음.



- 토픽에 대한 문서들의 비율을 통해 다차원척도를 사용하여 구분하고자함.

2. 이론적 배경

● 다차원척도

- 측정하고자하는 개체들의 특성을 이용해 개체간 거리를 구하는 분석방법.
- 이론적으로 N차원 까지도 계산이 가능한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

$$d_{ij} = \sqrt{(x_{i1} - x_{j1})^2 + \dots + (x_{iN} - x_{jN})^2} = \sqrt{\sum_{n=1}^N (x_{in} - x_{jn})^2}$$

- 토픽모델링으로 말뭉치에 잠재된 토픽을 차원으로 사용하여 언론사의 유형을 구분 짓고자 함.

3. 연구방법

- 연구대상: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모든 신문기사
 - 빅인즈(Bigkinds)에서 54개의 신문사와 계약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1990년대부터 서비스를 제공. 기사는 1990년부터 2018년 자료로 선정.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 별도 크롤링.
-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검색어(고용허가, 방문취업, 산업기술연수, 산업연수생, 이주노동 등)를 입력하여 기사를 수집

3. 연구방법

3. 연구방법



4. 분석 결과

	신문사	자료수	신문사	자료수	신문사	자료수	총계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708	문화일보	425	중앙일보	1168	7471
	국민일보	594	서울신문	606	한겨레	994	
	내일신문	248	세계일보	672	한국일보	552	
	동아일보	572	조선일보	932			
경제일간지	매일경제	928	아시아경제	234	한국경제	818	4313
	머니투데이	421	아주경제	119	해럴드경제	488	
	서울경제	759	파이낸셜뉴스	546			
지역일간지	강원도민일보	431	국제신문	423	전북도민일보	256	6703
	강원일보	40	대구일보	96	전북일보	98	
	경기일보	97	대전일보	78	제민일보	206	
	경남도민일보	491	매일신문	699	충도일보	394	
	경남신문	125	무등일보	47	충북매일	266	
	경상일보	131	부산일보	685	충북일보	456	
	경인일보	158	영남일보	458	충청일보	116	
	광주매일신문	150	울산대일	41	충청투데이	321	
	광주일보	46	전남일보	159	한리일보	191	
전론지	더케이뉴스	98	전자신문	197			285
합계							18772

연도	기사 수	연도	기사 수
1990	17	2005	892
1991	14	2006	856
1992	20	2007	1034
1993	68	2008	970
1994	216	2009	799
1995	498	2010	759
1996	685	2011	887
1997	629	2012	625
1998	256	2013	679
1999	257	2014	604
2000	638	2015	597
2001	673	2016	461
2002	1339	2017	661
2003	2106	2018	604
2004	950		

3. 연구방법

- 데이터 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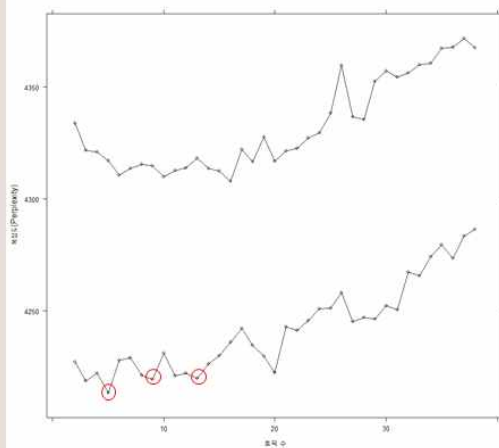
- 띄어쓰기는 다른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띄어쓰기 제거.
- ‘산업연수생’ 분석에 필요한 단어는 기존 사전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 사전에 추가.
- 숫자, 알파벳과 ‘개월’, ‘월말’ 등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단어 제거.
- 유사한 의미 단어 단일화.

Ex) 협의, 협상, 합의 -> 협의 / 노동현실, 노동현장, 노동조건 -> 노동실태

- KoNLP 형태소 분석 사용하여 명사 추출.
-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등 모든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 제거.

4. 분석 결과

- 토픽모델링을 하기 위해선 연구자가 토픽의 수를 지정해주어야 함.
- ① 연구자의 해석가능성과 해당 분야의 적합성 선정 or 임의의 수를 지정하여 비교
 - ② 토픽의 수를 가정한 후 자동화된 통계치를 이용하여 정확성이 가장 높은 토픽 수 사용
-> 복잡도(Perplexity)



4. 분석 결과

- 13개의 토픽을 도출하기 위해 R의 stm 패키지를 사용.

Highest Prob: 토픽에 높은 확률로 할당되는 단어들

FREX(Frequency/Exclusivity): 토픽에 해당되는 단어들 중,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를 제외한 단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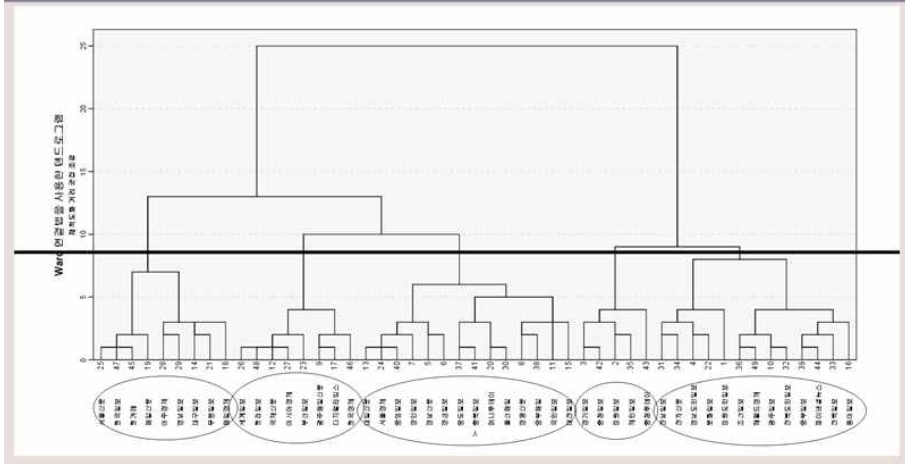
①	Highest Prob	통로 비자 제류 조선족 방문 증가 이민 결혼 미국 법무부 거주 출입국관리 국적 발급 인구
	FREX	통로 방문취업제 고려인 재출 국적별 영주권 출국자 소련 비자 이민 조선족 입국자 구조전 통계 한국계
②	Highest Prob	최장 건설 기술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증가 경쟁 대기업 대표 협회 제철을 대한 연수 선정 현장
	FREX	경기대회 입상자 공제조합 농민 거류집 미장 중진급 가능한 유공 특전 소상공인 협력업체 비전 통일혁신 조직
③	Highest Prob	고양 서울 북경 직장 초보 직원 한나라당 교육 연구 기획 중앙 대표 본부 중앙 본부장
	FREX	서천선민주당 정보 입당 공천 대차발당 주수출 발주 김민석 선관 대차장 반의회 제니스트와 북장 한민 회담하다
④	Highest Prob	17년 투자 대통령 협력 추진 사업 추진 확대 양국 정상 김민석 선관 대차장 반의회 제니스트와 북장 한민 회담하다
	FREX	양국 정상회담 사대인 경제협력 국민 산업스타이 교육 국가유치 당국인 협력법인 기업가 순방 회담 교류 개성
⑤	Highest Prob	불법체류 임금 고용노동부 출국 사업장 연수 관리 시설 안수 제류 송출 계약 기간 시장 중소기업중앙회
	FREX	불법체류 임금 최저임금 지원신고 이월 송출 사업주 불법적 불법체류 임금 송출국 제류 근로기준법 추가 산재보험
⑥	Highest Prob	난민 난민 이주 안수 강제추방 단계 인정 노동조합 권리 차별 미등록 서울 출입국관리 보호 요구
	FREX	난민 여권 미등록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해라 농성 현대관 보호소 한결 노예 난민법 입회 대법원 송송
⑦	Highest Prob	공장 회사 월리원 베트남 사람 병행 사망 인도 시간 대수 생활 직할 하류 고향 수출 급성
	FREX	아군 집행자 구미공단 사회공단 반월 연월 에이즈 사스 명철 위문 호이 치료 고향 수출 급성
⑧	Highest Prob	정착 국외 의원 추진 반대 주당 법안 발안 대통령 회견 대차 직할 통과 단체 한나라당
	FREX	노동계 여야 법안 체결 재계 회담 정책위원회 임시국회 청사진 당장자 법률관 당론 노사관계 병행실시 국감
⑨	Highest Prob	경철 회의 사전 발표 수사 부산 국세 범죄단 검찰 조사 중추관 확인 경기 적절 절거
	FREX	법정 입건 후기 구속영장 표의미어 수법 회사 이적 징검판도 구단 회장 송출자 총여 입단 경찰조사
⑩	Highest Prob	교육 대학 한국어 센터 시설 학생 문화 프로그램 행사 사업 다문화 학교 능력 운영 과정
	FREX	출제 동아리 문화 한국어 공헌 학생 체험 출시 결연 봉사활동 프로그램 외국어 민족놀이 검사 수장생
⑪	Highest Prob	인력난 배경 실험 업종 중소기업중앙회 북한 채용 제조업 해소 규모 부족 신규 활용 내국인 건설법
	FREX	다문화자 배경 인력부족 침수제 생산직 인력난 구인 구인난 재차 신규 취업 대청민국 제조업 협력 불가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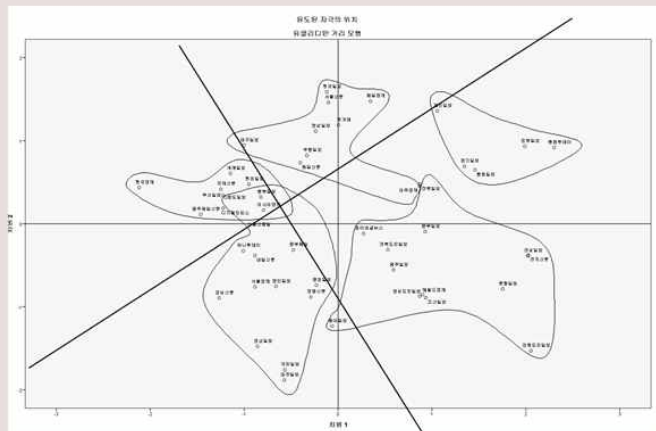
- Alsumait et al.(2009), 설동훈 외.(2018)는 불필요하거나 해석이 불가능한 토픽들을 J/ Topic(Junk and insignificant)의 가능성을 언급.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해석이 불가능한 4개의 토픽을 제거함.

토픽	θ	구분	단어
①	0.086	Highest Prob	통로 비자 제류 조선족 방문 증가 이민 결혼 미국 법무부 거주 출입국관리 국적 발급 인구
통로		FREX	통로 방문취업제 고려인 재출 국적별 영주권 출국자 소련 비자 이민 조선족 입국자 구조전 통계 한국계
②	0.066	Highest Prob	최장 건설 기술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증가 경쟁 대기업 대표 협회 제철을 대한 연수 선정 현장
사업주		FREX	경기대회 입상자 공제조합 농민 거류집 미장 중진급 가능한 유공 특전 소상공인 협력업체 비전 통일혁신 조직
⑤	0.123	Highest Prob	불법체류 임금 고용노동부 출국 사업장 연수 관리 시설 안수 제류 송출 계약 기간 시장 중소기업중앙회
불법체류인수		FREX	불법체류 임금 최저임금 지원신고 이월 송출 사업주 불법적 불법체류 임금 송출국 제류 근로기준법 추가 산재보험
⑥	0.062	Highest Prob	난민 난민 이주 안수 강제추방 단계 인정 노동조합 권리 차별 미등록 서울 출입국관리 보호 요구
인권		FREX	난민 여권 미등록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해라 농성 현대관 보호소 한결 노예 난민법 입회 대법원 송송
⑦	0.080	Highest Prob	공장 회사 월리원 베트남 사람 병행 사망 인도 시간 대수 생활 직할 하류 고향 수출 급성
생활		FREX	아군 집행자 구미공단 사회공단 반월 연월 에이즈 사스 명철 위문 호이 치료 고향 수출 급성
⑧	0.075	Highest Prob	정착 국외 의원 추진 반대 주당 법안 발안 대통령 회견 대차 직할 통과 단체 한나라당
정책		FREX	노동계 여야 법안 체결 재계 회담 정책위원회 임시국회 청사진 당장자 법률관 당론 노사관계 병행실시 국감
⑨	0.098	Highest Prob	경철 회의 사전 발표 수사 부산 국세 범죄단 검찰 조사 중추관 확인 경기 적절 절거
범죄		FREX	법정 입건 후기 구속영장 표의미어 수법 회사 이적 징검판도 구단 회장 송출자 총여 입단 경찰조사
⑩	0.082	Highest Prob	교육 대학 한국어 센터 시설 학생 문화 프로그램 행사 사업 다문화 학교 능력 운영 과정
교육		FREX	출제 동아리 문화 한국어 공헌 학생 체험 출시 결연 봉사활동 프로그램 외국어 민족놀이 검사 수장생
⑪	0.139	Highest Prob	인력난 배경 실험 업종 중소기업중앙회 북한 채용 제조업 해소 규모 부족 신규 활용 내국인 건설법
배경		FREX	다문화자 배경 인력부족 침수제 생산직 인력난 구인 구인난 재차 신규 취업 대청민국 제조업 협력 불가

4. 분석 결과



4. 분석 결과



4. 분석 결과

집단	신문사
1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신문 아주경제 영남일보 대구일보 무등일보 매일경제
2	세계일보 한라일보 국제신문 아시아경제 부산일보 광주매일신문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3	내일신문 서울경제 중앙일보 경인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중도일보 충청일보 머니투데이 출산매일 경향신문 중부매일 국민일보 대전일보
4	경기일보 충청일보 강원일보 제민일보 충청투데이
5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광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전자신문 조선일보 중부일보 파이낸셜뉴스 해럴드경제

	T1. 동포	T2. 사업주	T5. 불법체류 단속	T6. 인권	T7. 생활	T9. 정책	T10. 범죄	T11. 교육	T13. 배정
1	0.090	0.055	0.121	0.067	0.096	0.085	0.093	0.079	0.103
2	0.087	0.074	0.116	0.046	0.063	0.093	0.104	0.080	0.134
3	0.090	0.069	0.133	0.067	0.073	0.068	0.093	0.095	0.123
4	0.081	0.096	0.141	0.036	0.059	0.037	0.089	0.103	0.206
5	0.075	0.073	0.124	0.056	0.079	0.089	0.086	0.082	0.145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함의

-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재현하거나 기존에 다뤘던 내용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관한 언론사의 입장차이가 미약하게나마 존재하였음.
 - 지역신문의 지방 인력난에 대한 높은 비중.
- 객관적이고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토픽모델링을 통해서 수많은 문서들을 동시에 측정 가능하게 함.
- 한계점
 - 기사 수집 중 주제와 무관한 기사들로 인해 토픽의 비중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음.

SESSION 3

페이스북 그룹 중심으로 본 다국적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사례 연구

Ines Miranda de Dios (전남대학교)

I. 들어가며

2015년에 국제이주자의 수가 2억 4천 4백만 명으로 1990년에 비해 1억 명, 1970년에 비해 세 배가 더 많아졌다(World Migration Report, 2018). 이처럼 오늘날 운송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주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그 양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현상은 항상 존재했으나 빠른 속도로 특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인터넷과 컴퓨터 중재 통신(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발달은 이주현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부터 이주국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이주자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주과정이 더 수월해졌다. 또 다른 가시적인 변화는 여성의 역할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라는 용어가 쓰일 정도로 현재 국제 이주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성(Gender)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국제 이주자의 수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점차 이주여성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더불어 이주여성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이주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다(Marinucci, 2007). 노동, 교육, 결혼 등 이유로 인해 더 많은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이주하고 있다.

이주현상에 여성의 가시성과 인터넷의 중요성은 한국내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페이스북그룹이 확산했다는 측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Expat women in Korea, Non-Korea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Western girls married to Korean guys, Black Women in Korea, Mamis en Corea, American women's

club-korea, Mexicanas en Corea del Sur, Mom's market in Korea...등 다양한 여성 커뮤니티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여러 자원을 얻을 수 있고 비슷한 경험 가진 여성들과 네트워킹 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주여성들이 이주한 이후에도 수동적으로 상황을 수용하는 것 보다 자신의 이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과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SNS는 이주자의 삶과 이주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거 등과 같은 인터넷 통신 기술은 이주민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 시키며, 본국에 있는 가족, 친구 및 지역 사회와 초국적 관계를 유지할 용이하게 하며 (Komito, 2011), 같은 이주국가에 살고 있는 다른 이주자들과의 접촉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이주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2개의 Facebook 그룹 사례 중심으로 이주과정에서 SNS 역할과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상의 다국적 여성 커뮤니티의 특성과 성격을 살펴보고 그들이 논의하는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관심과 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 다국적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어떤 특성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사례로 쓰인 커뮤니티들의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의도/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쓰고 있는가?

셋째, 사례로 쓰인 커뮤니티들의 구성원들은 어떤 주제나/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한국사회나 이주생활에 대한 고민되는 부분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확산되고 보편화되며 사람의 생활과 소통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정보교환 자원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사회화)하고 사회적/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속에서 일상생활이나 이주과정과 관련된 문제나 고민, 또는 어려움을 털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 간의 장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루어져온 상호작용은 현재의 커뮤니티 회원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심지어 최근의 문제들까지) 많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SNS로 불리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s)는 이주자의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스카이프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덕으로 이주자들이 모국과 초국가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Komito, 2011). SNS는 소통 수단분만이 아니라 이주자의 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이기도 하다(Komito and Bates, 2009 237-241).

또한 SNS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게 가상공간을 제공한다. SNS도 사용자들에게 유사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그룹(공개나 비공개적으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어준다. 그런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Online Community)라고 불린다. Rheingold(1994)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면대면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컴퓨터 게시판과 네트워크의 조정을 통해 말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정의한다(Preece, 2001: 348 재인용). Preece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우거나 진인을 찾을 수 있는 사회적 가상공간"으로 재정의한다(2001: 348).

페이스북을 통해 형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다른 유형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면대면 커뮤니티와 관련된 시간과 공간적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Finn, 1999; Coulson 외, 2007). 이것은 휴대폰 기술의 향상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다른 회원이 올린 글을 읽고 답장할 수 있으며, 직접 자신의 글도 작성하고 올릴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는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해야하는 부담이 없이 자신의 속도로 게시물 및 답장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아이디어, 정보 및 관점을 접할 기회가 더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감정적 표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우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Finn, 1999).

셋째, 페이스북의 프로필은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분은 쉽게 드러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사회적 관습의 압력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는 칭찬을 받았다(Coulson 외, 2007). 익명성 때문에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실제 다른 연구를 보면 익명성 부족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원들의 신원이 밝혀진 커뮤니티에서는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들의 의견이 관련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고 대화가 길어진 가능성이 높다(Omernick & Owsley Sood 2013).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제시한 익명성의 경우 페이스북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작동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계는 표현력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을 주로 텍스트(text)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대면 만남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몸짓, 목소리, 톤, gestures 등)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하다. 하지만 사람의 창의력과 IT 발달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전에는 :) -(미소 짓는 얼굴)나 ;) -(윙크하는 얼굴)나 :O-(놀라운 얼굴)등 다양한 기호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 공포, 놀람 등 여럿의 감정을 표현했으나, 이제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이미지와 이모티콘을 통해 행복에서 분노까지 여러 감정을 보다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소통 도구로서 가진 한계가 있어도 인터넷이 제공하는 용이한 접근성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원과 네트워킹 방식이 되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Ridings와 Gefen(2004)은 정보교류, 사회적지지(감정적 지지를 의미함), 우정, 레크리에이션, 공통 관심사, 기술적 이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6 가지 이용 동기를 구별한다. 그중에 정보교환(49.8%), 우정(24%)과 사회적지지(10%)가 가장 많이 반복된 이용 동기다.

김경희와 박지윤(2004)은 자아정체성 확인동기, 대인관계 형성동기, 정보추구 동기 등 3가지의 미디어 이용 동기를 바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터넷 여성전용공간(여성 커뮤니티)과 남녀공존 공간에 대한 여성 이용자의 이용 동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의 따르면 여성 이용자가 남녀공존 공간보다 여성전용 공간에서 3 가지의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여성 이용자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더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편하게 활동 할 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공간에서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밝혔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행위는 이용자 상호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유정, 조수선 2001) 대인관계 형성은 중요한 동기가 된다(김경희, 박지윤, 2004).

그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Winzelberg, 1997; White & Dorman, 2000; Han & Belcher, 2001;

Wright, 2002; Coulson, 2005; Maloney-Krichmar & Preece, 2005; Mo & Coulson 2008). 이러한 연구는 사회적지지, 특히 정보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론 연구들에서 보면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된 주요 동기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정보 지원(information support), 존중 지원(esteem support), 네트워크 지원(network support),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과 물질적 지원(tangible support) 등 5 가지 유형의 지원을 포함되어 넓은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다(Coulson et al, 2007).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자애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Finn, 1999), 노인(Nimrod 2009) 및 이주자(Chen & Choi, 2011)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권능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그들에 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공포, 좌절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유사한 상황에 부딪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김유정과 조수선(2001)은 내용분석을 통해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의된 주요 관심사를 살펴본 결과에 여성 사이트에서는 주로 용모와 가정, 교양, 사회이슈, 오락, 성 등의 주제들을 다루어져 있다 (이세진과 이정교 2012, 재인용). 또한 이세진과 이정교(2012)는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담론 특성과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내용분석과 사회연결망 구조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 따르면, ‘학교나 직장생활’(5.7), ‘가족/가정’(5%) or ‘이성이나 친구’ 주제보다 ‘취미나 관심사’ (52.5)나 ‘기타’(28.7)에 대한 메시지들이 가장 많았다.

선행연구에 살펴봤듯이 정보추구, 사람들과 사귀고 소통하기, 정서적 지지 추구, 오락, 물질적 지원 추구 등 동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입한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볼 수 있는 게시글은 비슷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네트노그래피(Netnography)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Netnography는 문화와 커뮤니티를 온라인으로 연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의 사용을 의미한다(Kozinets, 2010; in Bowler, 2010). 통신의 발전과 일상생활에서 SNS 사용의 일반화는 오프라인 세계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Hallet and Barber, 2014; 325).

네트너그라피는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과 같이 참여 관찰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논문은 온라인 그룹에 대한 참여 관찰을 통해 2개의 커뮤니티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 2개의 커뮤니티는 어떤 특징들이 보이는지 또한 이주여성에게 자신의 이주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약 6개월 동안 참여 관찰을 실시했다. 커뮤니티의 소통방식과 익숙해지고 커뮤니티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얻기 위해 게시 본문, 댓글과 답변을 읽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게시글)을 분석했다. 질적 내용분석은 주제나 테마 및 그들의 의미와 관계에 중심을 둔다(Pfeil, Zaphiris, 2001, p7). 내용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일주일(5월 6일~5월 12일 까지) 동안 선택된 2개의 그룹에서 게시된 주요 본문과 댓글이 수집되었다. 게시된 본문과 그들에 달린 댓글을 자세히 읽음으로써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어떤 주제나 쟁점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발견하려고 하였다. 조사 기간은 7일간으로 선정하는 이유가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들의 내용은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주일 주기 두고 변화하기 때문이다(김유정과 조수선, 2001).

먼저 수집된 데이터와 맥락을 잘 알기 위해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분석하는데 Pfeil과 Zaphiris(2010) 제안한 3단계 분석 절차를 사용하였다. 우선 일반적인 개요를 위한 메시지를 읽고; 다음은 메시지 내용을 공통의 의미를 갖는 단위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코드 내에 들어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코드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르게 코딩한다. 각 메시지는 두 개의 코드를 받았다. 먼저, 메시지는 정보 제공/추구, 정서적과 존중 지지 제공/추구, 오락, 네트워킹 등의 목적에 따라 코딩 되었다. 그 다음은 메시지가 주제에 따라 코딩되었다. 주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덜하기 위해 미리 고정된 범주를 확립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사나 고민되는 문제들을 토론하거나 이야기하기 때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분석은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해 현재의 커뮤니티들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개의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전용의 그룹이라 가입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커뮤니티 이름 대신 알파벳(A, B)을 표기하였다. A커뮤니티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 긴 기간 동안 살았던)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그룹이고 서로의 도움을 주고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B커뮤니티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 B 커뮤니티도 A와 마찬가지로 다국적 커뮤니티이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다.

A와 B 커뮤니티가 비공개 그룹임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등록과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등록 절차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답해야한다. A와 B 커뮤니티는 모두 자체 규정이 있으나 공통된 원칙도 있다. 모든 멤버들은 상호작용에서 존경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우해야하고 그룹 내에서 말한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해야한다. 이런 관계로 두 커뮤니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메시지의 내용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 커뮤니티들을 선택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국 내 다국적 여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중에 A 과 B 커뮤니티는 가입자 수가 제일 많았다. A 커뮤니티의 경우는 13,886명이 가입되어 있고 운영자가 13명이 있고 B 커뮤니티의 경우는 1,166명이 가입되어 있고 운영자가 3명이 있다. (다른 여성 다국적 커뮤니티의 회원 수가 21명, 436명 회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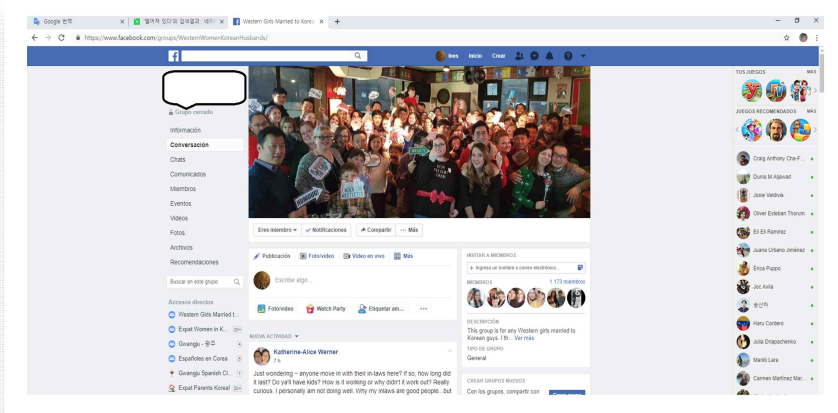
둘째는 이 2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Ridings & Gefen(2004)는 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별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는 3일 간에 하루 당 10개 메시지를 게시되어야 하고; 둘째, 3일간에 15명의 다른 사람들이 게시물을 게시 했어야 하고; 셋째, 게시물의 80%는 적어도 댓글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A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큰 커뮤니티로 설명할 수 있고 B커뮤니티는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첫 번째 기준에는 6~7개 메시지만 공개되어 A 커뮤니티보다 덜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2개의 커뮤니티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다.

IV. 온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킹 및 지원을 위한 공간

1. 커뮤니티들의 특성과 성향

모든 유형의 CMC에서 ‘유용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유용성은 사이트 구조, 사이트 특성, 그리고 정보의 레이아웃과 연결되어 있다(de Souza & Preece 2003). 사이트 구조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페이스북 그룹 사이트는 비슷한 구조가 가지고 있다. 그룹의 이름은 맨 오른쪽 위에 있다(대화상자로 표시되어 있음). 이름 아래, 사이트의 콘텐츠 메뉴가 있다. 9개의 섹션은 2그룹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메뉴를 통해서 용이하게 그룹에 대한 간단한 정보, 대화 게시판(회원들이 메시지를 게시하고 모든 post가 기록되는 곳), 관리자의 메시지(알림, 규정...)가 공개된 게시판에 접속할 수 있다. 멤버 섹션에서 그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근처에 살고 있는 회원, 친구 중 누구인지, 그룹에서 새로운 회원, 운영자 및 관리자)이 검색할 수 있고 비디오, 사진 및 아카이브 섹션에서 그룹에 게시된 영상, 사진 및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추천 섹션에서는 회원들이 작성한 모든 추천(장소, 비즈니스 등)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룹 B의 경우는 채팅 섹션도 포함되어있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초대하고 실시간 채팅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림 1> B 페이스북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



<그림 2> A 페이스북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

전반적으로 사이트 사용은 매우 직관적이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해도 쉽게 메시지를 어떻게 게시하는지 알 수 있고, 메인 화면에 바로 활동 수준으로 최근에 게시되거나 답변이 추가된 메시지를 보여준다. 약점은 오래된 메시지 기록을 찾기가 어렵고 버퍼링 시간도 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성을 이야기하면 회원이 익명으로 유지 될 수 있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달리(Barack et al 2008, Suler, 2004 mentioned anonymity as a characteristic of internet) 페이스북 그룹은 실제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하므로 익명성이 떨어진 다. 즉,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쉽게 추적을 가능하고 프로필의 프라이버시(privacy)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는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페이스북 그룹의 익명성이 낮다고 해서 회원이 익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멤버들이 자신의 전략을 찾으려고 한다. 모든 사람은 그룹 관리자를 통해 익명 게시물을 게시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는 커뮤니티 내의 가장 신뢰 받는 사람이여야 한다.

익명 게시물은 매우 확장되고 상세화 되어 있다. 이는 익명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과 연관 될 수 있다(Omernick & Sood, 2013).

양쪽 커뮤니티는 비공개 그룹이다. 즉, 회원은 그룹에 가입하고 승인받아야 커뮤니티에서 참여하고 커뮤니티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연구자의 경우,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2개 그룹의 회원이었다. 이처럼 연구자와 같이 두 그룹 모두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커뮤니티 A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로 구성된 다국적 커

뮤니티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룹의 구성원은 한국을 떠난 후에도 계속 회원으로 남는다). 회원들은 매우 다른 배경과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 그룹은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의 경험을 통해 국외 거주자로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배우고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B는 초국가적 다국적 커뮤니티로 볼 수 있다. 같은 이주국가에 거주하거나, 같은 출신국의 이주자들에게 한정된 다른 페이스북 커뮤니티와 달리, B 커뮤니티는 지역이나 국적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커뮤니티 연결은 사회적 범주에 의존한다. 회원들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하고 생활을 하는 여성으로 특징지어진다. B 커뮤니티는 메인 그룹 외에, 기타 여러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그룹과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룹도 있다.

A 커뮤니티와 B 커뮤니티는 모두 구성원들의 국적과 거주지가 아주 다양하다. 예를 들면 B 그룹에 게시된 일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 출신의 주요 대표가 있으며 최소한 33개 국적의 구성원이 있다. 거주지에 관해서는 대다수가 한국에 살고 있으나 그 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에 많은 회원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그룹의 활동적인 회원들의 대략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회원 수가 그룹 여론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인구의 전체 특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커뮤니티의 다양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참여 관찰 통해서 A 그룹의 구성원도 다양한 국적 여성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원들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대화 내에서 다른 언어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은 주로 게시글을 쓴 회원과 답변을 쓴 회원이 동일한 모국어를 쓰는 경우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찰 외에도 이 연구는 게시된 게시물의 유형을 분석하여 그룹의 주요 초점이 무엇인지 규명하려고 했다.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1주일 동안 그룹 A 총 137 개의 게시물과 2057 개의 답변, 그리고 그룹 B 총 40 개의 게시물과 821 개의 답변이 수집하였다. 그룹 A는 게시 측면에서 상당히 활발하지만 그룹 B의 응답 활동은 상대적으로 더 활동적이다(그룹 A의 게시물 당 응답 평균 14.7개이며 그룹 B의 게시물 당 응답 평균 20.5개다). 그룹 A 경우에는 메시지 중 약 20%는 회신을 받지 않지만 그룹 B는 회신을 받지 못한 메시지가 3개 밖에 없었다.

커뮤니티 A에서 관찰되고 수집된 많은 메시지는 정보추구와 관련된 게시물이었다. 이것은 정보 지원을 얻거나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목적인 것을 주장

하는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예. Chen & Choi, 2011, Coulson et al, 2007). 정보를 묻거나 공유하는 큰 범주 내에서는 일반적인 정보, 추천 및 조언 등 세가지분야로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룹 회원이 특정 장소, 제품, 행동에 대한 추천을 직접 요청한 메시지는 ‘추천 요청’으로 코딩되었으며 회원이 다른 구성원의 개인 의견이나 특정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묻는 개인 메시지는 ‘조언 요청’으로 코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범주 외에도 멤버들이 개인 거래(신품 또는 중고품 판매, 방/아파트 임대 등) 및 개인 비즈니스 홍보를 위한 플랫폼으로 커뮤니티를 사용하고 있다. 수집된 메시지 중에 친구를 사귀거나 네트워킹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사회화 또는 네트워킹 메시지는 그룹 B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그룹 B는 규모가 작고 멤버들이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친밀한 성향을 보인다. 이것은 회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물질적 지원을 추구하는 메시지도 볼 수 있다. 주로 언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무료로 물건을 제공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메시지는 그룹 B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을 잘 모르는 회원들은 종종 그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번역하기 위해 다른 그룹 멤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한 그룹 B의 메시지는 자기표현 경향이 더 강하다. 그리고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통풍 메시지가 더 자주 볼 수 있다.

2. 커뮤니티들의 주요 관심사나 이슈

커뮤니티에서 발견되는 주요 주제는 구성원만큼 다양하다. 그룹 A 대부분의 메시지는 온라인 쇼핑, 운송, 건강, 서비스(번역, 교육, 신용 카드 등)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정보추구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메시지는 직책, 비즈니스 또는 이벤트 홍보에 관한 게시물이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성 국외 거주자를 위한 훌륭한 정보원이기도 하나, 또한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A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일부 문제는 최근의 여성 학대 사례(스토킹, 성희롱, 신체적 학대 등)와 관련되어 있다. 응답 수가 가장 많은(162) 게시물은 동의 없이 섹스를 하는 동안 여성을 녹화하는 남성을 변명한 남자에게 실망을 느꼈던 한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게시물의 의도는 커뮤니티 내의 모든 여성들에게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이었다. 메시지가 계기가 되어서 많은 멤버들이 ‘Burning

Sun’ 및 히든 카메라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회원들은 이런 이슈들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특별하게 큰 문제로 인식되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문제로 여겼다.

커뮤니티 B에 경우는 F-6 비자 갱신/신청 절차, 결혼 등록 및 귀화 과정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집 된 메시지 중에서 많은 응답을 받은 게시물은 사회적 교류(작은 대화를 위한 주제나 친구 사귀기 위한 메시지 등)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혈액형에 관한 설문 메시지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140). 또한 회원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재미있는 일을 공유하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도 높았다.

커뮤니티 B에는 가정(남편, 시부모/시댁 및 자녀 관련 게시물), 직업(출산 휴가) 또는 모국으로 이주에 관한 게시물이 자주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지로 필요로 한 자기 표현 및 투덜거린 메시지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V. 나오며

본 연구는 이주여성 다국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그 구성원 간에 논의된 주요 관심사나 이슈를 규명했다.

내용분석을 통해서 커뮤니티는 주로 어떤 목적적인 성향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규명하려고 했다. 전반적으로 커뮤니티의 특성에 대해 A 커뮤니티는 정보추구 성향이 더 강하고 B 커뮤니티는 사회적 교류(네트워킹)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관심사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A 커뮤니티는 온라인 쇼핑, 운송, 건강, 서비스 (번역, 교육, 신용 카드 등)와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추구 및 직책, 비즈니스 또는 이벤트 홍보에 관한 게시물이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정보, 정서적 지지를 추구한 공간이지만 사회적 이슈나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A 커뮤니티에서 가끔 성희롱(폭행) 사건 당한 사람이 메시지를 게시하는데 물론 그런 메시지들이 정서적 지지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문제인식과 사건 장소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다른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목적도 있다.

반면 B 커뮤니티는 F-6 비자 갱신/신청 절차, 결혼 등록 및 귀화 과정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볼 수 있고 가정(남편, 시부모/시댁 및 자녀 관련 게시물), 직업(출산 휴가) 또는 모국으로 재이주에 관한 게시물이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주제가 좀 더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로 토대로 연구 기간을 1주일로 설정했으나 참여관찰 통해서 얻었던 관점에 잘 맞지 않은 내용분석 결과가 커뮤니티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 분석을 위해 선택된 일주일의 기간이 너무 짧으며 2 커뮤니티에서 논의된 메시지와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커뮤니티의 참여자로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룹 내의 교류와 관계는 다층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외견상 보이는 것보다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기간을 한정하기 보다는 전체의 맥락과 분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지리적 이동과 관련하여 이들이 거주지를 해외로 변경한 이후 관심과 주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유정(2006) 사이버그를 향한 새로운 젠더 논의를 위한 인터넷과 여성 연구 탐색, 커뮤니티케이션론 2(1): 60-92
- 김유정과 조수선(2001) 사이버 커뮤니티로서의 인터넷 사이트 연구: 여성 사이트에 대한 탐색적 접근이 45(3): 5-38
- 김경희와 박지윤 (2004) 인터넷 여성전용공간과 남녀공존공간에서의 여성이용자의 이용동기와 이용태도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8(3): 432-474
- 세진과 이정교(2012)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사회연결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8(2) 47-71
- Chen, Wenli, and Choi, Alfred Siu Kay (2011) Internet and social support among Chinese migrants in Singapore. *New Media & Society*, 13(7): 1067-1084
- Coulson, Neil S., Buchanan, Heather, and Aubeeluck, Aimee (2007) Social suport in cyberspace: A consent analysis of communication within a Huntington's disease online support group,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8: 173-178
- Finn, Jerry (1999) An Exploration of Helping Processes in an Online Self-help Group Focusing on Issues of Disability, *Health&Social Work*, 24(3): 220-231

- Hallet, Ronald E., and Barber, Kristen (2014) Ethnographic Research in a Cyber Era,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43 (3): 306-330
- Komito, Lee; Bates, Jessica. 2009. Virtually local: social media and community among Polish nationals in Dublin, *Aslib Proceedings: New Information Perspectives*, 61 (3): 232-244
- Komito, Lee (2011) Social media and Migration: Virtual Community 2.0,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2 (6): 1075-1086
- Marinucci, Roberto (2007) Feminization of Migration? REMHU - Revista Interdisciplinar da Mobilidade Humana, 15(29): 5-22
<https://www.redalyc.org/pdf/4070/407042006002.pdf>
- Nimrod, Galit (2009) Seniors' Online Communities: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he Gerontologist*, 50(3): 382-392.
- Oiarzabal, Pedro J., (2012) Diaspora Basques and Online Social Networks: An Analysis of Users of Basque Institutional Diaspora Groups on Facebook,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8 (9): 1469-1485
- Omernick, Eli and Owsley Sood, Sara.(2013) The Impact of Anonymity in Online Communities. *Proceeding SOCIALCOM '13 Proceedings of the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Computing'* Pp. 526-535 September 08 - 14, 2013
- Pfeil, Ulrike and Zaphiris, Panayiotis (2010) Apply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study online support communities, *Univ Access Inf Soc*, 9:1-16
- Preece, Jenny (2001) Sociability and usability in online communities: determining and measuring succes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20 (5): 347-356
- Ridings, Catherine M., and Gefen, David (2004) Virtual Community Attraction: Why People Hang out Onlin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0(1)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j.1083-6101.2004.tb00229.x>
- Roberts, L. 2015. Ethical Issues in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in Online Communitie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2 (3): pp. 314-325.

토론문: “페이스북 그룹 중심으로 본 다국적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사례 연구”

신난딩(B.Nandintsesteg, 전남대학교)

Ines Miranda de Dios 선생님의 논문은 다국적 여성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과 성향”, 그들의 “관심사나 이슈”에 대해 고찰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특징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주민 삶의 초국화 현상이다. 국제이주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이주민의 정체성이 거주사회로 어떻게 통합되거나 동화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해 왔다. 즉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출신사회 요소들은 단지 옛날 것으로만 인식되거나 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에는 이주민이 이주한 뒤에는 출신사회의 새로운 이슈들을 빠르게 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듯이, 오늘날은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주민들은 지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출신사회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이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출신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초국적 형태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한다.

이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초국적 가상공간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 가령 이주여성들은 인터넷과 SNS의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한국 사회 내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거주사회의 이주 경험을 서로 공유한다. 이와 같이 이주민들은 거주사회 안과 밖 양면에서 초국적 교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지적하듯이 온라인 공간은 이주민들(‘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주민들은 거주사회에서 늘 소수자로서 취급되지만 가상공간에서는 주체로서 거주사회에 대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경험들을 이야기한다. 이주민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러 출신사회 경험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초국적 가상공간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migrant world TV” 페이스북 그룹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이 거주사회에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적 가상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거주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나누기, 정착과 관련한 거주사회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하기, 일상생활의 경험 공유하기 등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이주민들은 초국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 이주민 회원들은 출신국가가 다양하여 언어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어와 글로벌 언어인 영어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은 이주민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출신사회적 정체성과 새롭게 이주해온 거주사회적 정체성이 동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주민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A와 B라는 두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고민이나 이야기들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더 상세하게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이 두 개 커뮤니티에서 주고받는 텍스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야만 이 커뮤니티들의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발표자가 발표집 101쪽에서 “커뮤니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메시지 내용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듯이 자료 이용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온라인 커뮤니티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커뮤니티에서 직접 기술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이주민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주민의 초국적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다국적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된 활동 회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적의 여성들인지, 거주사회 이슈와 출신사회 이슈가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이주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국 내 다른 여성 커뮤니티와 비교해보면 초국적 특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초국적 정체성은 한국사회에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들의 초국적 정체성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좋은지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SESSION 3

사이버공간 가로지르기: 온라인 공동체의 이주 경험*

윤 지 원 (서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공동체가 이주를 통해 공간이라는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사이버공간에서 이주 담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된 공동체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어 학습 공동체로, 2015년 여름에 운영총책임자의 부재, 빈번한 기술적 문제, 그리고 도메인 만료라는 위기를 피해 새로운 사이트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들이 게시한 포스트를 통해 공동체의 성격 및 이주에 대해 개진된 담론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온라인 공동체와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양상을 밝혀냈다. 첫째로 온라인 공동체의 회원과 서버가 위치한 물리적 공간은 공동체의 교류양상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로 온라인 공동체가 위치한 특정 서버의 특정 도메인을 지닌 특정 포럼에서만 작동하는 사이버공간의 맥락이 있다. 이 사이버공간은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공간이자 장소로서 재탄생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동체는 타 공동체와 차별화되는 문화 및 지향성을 공유하는 회원들의 존재를 통해 고유의 장소감을 습득하게 되고, 이 장소감은 온라인 공동체가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목적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사이버공간, 공동체, 온라인 이주, 장소감

* 이 원고는 저자의 학사 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jiwonyun@snu.ac.kr

I. 서론

인터넷이 없는 현대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꿔놓았다. 컴퓨터들의 연결망(“-net”) 사이(“inter-”)를 연결한다는 어원을 지닌 인터넷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연결해주는 미디어로 성장했다. 인터넷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다른 면모들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초공간성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위치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과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젠더, 세대, 외모, 장애와 같은 물리적 육신으로 인한 차별과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어쩌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이상적인 공론장, 즉 만인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론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러 학자들의 마음을 부풀게 했다(Bainbridge, 1999; Johnson, 2001).

그러나 과연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만인에게 개방되고 균등한 공간으로서 경험되고 있는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여러 진영이 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깝지 않은가 싶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지상파에서 설 자리를 잃은 보수 진영은 ‘유튜브’를 활용해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결집시키며 자신의 정치적 요새를 새로 구축하고 있다(김동인, 2019). ‘일간베스트’와 ‘메갈리아’와 같은 공간에서는 서로에 대한 혐오담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며 젠더편견을 강화하고 있다(장소연·류용재, 2017). 이런 상황에서 이미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자신의 온라인 경험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성격 및 가치관에 적합한 사이트를 골라 방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김경화·송경재, 2018), 이는 마치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도로를 택하도록 맞춤형 네비게이션을 설정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위 사건들은 평평하고 밋밋한 면으로 상상됐던 사이버공간이 실제로는 다양한 지형물로 인해 굴곡진 공간으로서 경험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그렇다면 이런 지형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장소감’ 담론과 ‘이주’ 담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서버 이주를 감행해야 했던 온라인 ‘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장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온라인 상호작용과 물리적 공간 간의 관계, 그리고 온라인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주라는 패러다임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해보면서 이주학에서 형성되는 담론들이 전통적인 이주학의 연구 분야 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볼 것이다.

II. 문헌검토

1. 공동체와 인터넷

공동체는 사회학의 가장 전통적 연구 분야 중 하나지만, 정의하기 매우 까다로운 개념이다. 공동체 개념을 처음 도입한 퇴니스는 공동체를 친밀하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의식과 공간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파악했고, 공동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근대적이고 도시적인 결사체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제시했다(Pampel, 2000: 244). 이런 전통을 따라 사회학에서 공동체를 언급할 때는 연대와 정서적 관계에 기반한 집단으로 인식하며, 그리고 도구적이고 유동적인 결사체와 반대되는 집단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후 공동체라는 용어가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단체, 계급 집단 그리고 취미 동호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Scott and Marshall, 2009) 사회학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했고, 그 시도 중 힐러리(Hillery, 1955)의 연구가 자주 꼽히곤 한다. 힐러리는 당시 사용되던 94가지의 다양한 정의와 용례들을 살펴본 후, 다양한 공동체 정의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하나 이상의 공통점, 그리고 공간적 배경(area context)이라는 3가지 요소가 도출되었다. 힐러리는 이 중에서 공간적 배경이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보았는데, 가변적이고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같은 공간을 점유하는 것으로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이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공간보다 관계, 상호작용, 네트워크가 더 우선한다는 관점에 힘을 실어주었다.

인터넷을 위시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공동체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줬다. 온라인 공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물리적 공간을 초월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우선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은 물리적 신체의 한계로부터 해방되었다(Harrison, 2010) 인터넷에 접속한 개인은 외모, 체형, 나이, 젠더, 계급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부여된 모든 신체적, 사회적 특징을 초월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매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인터넷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이런 특성은 기존에는 자신만의 공

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즉, 원래부터 전통적인 사회단체에 참여하던 사람들 외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활로가 생긴 것이다(서진완·박희봉, 2003). 공개적으로 자신의 물리적 공간을 내 세우기 힘든 성소수자들(Harrison, 2010), 물리적 거리로 인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기 힘든 이주민 공동체들(Dekker, Engbersen and Faber, 2016; Castro and Gonzales, 2014; Navarrete and Huerta, 2006), 그리고 한 공간에 정주하지 않는 여행자/방랑자들이 사이버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들기 시작했다(Qu and Lee, 2011). 위와 같은 인터넷의 탈물질성과 초공간성은 공동체의 3요소 중 공간적 배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힐러리의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듯하다.

한편으로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공동체 개념과 상이한 모습을 발견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는 친밀함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일종의 연대감과 결속력을 형성하지만, 온라인의 사회적 관계는 도구적인 계기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동적이고 파편적인 경향이 많았다(Johnson, 2001).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 이론은 전통적인 공동체 이론과 ‘온라인 공동체’ 간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해줬다. 연대감으로 결속된 공동체라는 모델보다 개별화된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이 온라인 공동체의 양태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했던 것이다. 온라인 ‘공동체’ 연구에서는 명목적으로는 ‘공동체’를 연구하지만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개별 행위자 간의 관계 혹은 행위자의 행동(클릭)을 관찰단위로 삼는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을 사용하는 특이한 문화가 발달했다(Yuan, 2012). 이런 연구전략은 사이버공간의 사회적 관계를 포용하기 위해 공동체를 새롭게 정의하기보다, 온라인 공동체는 명목상으로만 공동체일뿐, 네트워크로 분석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를 부정하고 온라인 공동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체’의 패러다임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사이버공간의 관계는 도구적이고 파편적이라는 전제에 반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배영(2003)의 연구는 오프라인 관계들이 항상 정서적 관계나 도구적 관계 중 하나의 성격을 지니지 않듯이, 온라인 관계에서도 정서적 성격과 도구적 성격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정도로 지속성을 지닌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Kunz and Seshadri, 2005),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사회 자본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서진완·박희봉의 연구, 2003). 특히 마지

막 연구의 경우는 온라인 공동체 참여와 사회자본 형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기반 온라인 공동체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공동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오프라인 공동체와 온라인 공동체가 정말로 이질적인지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은 사회학의 공동체-결사체 이분법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투영한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을 지지한다.

두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사이버공간 및 가상세계가 오프라인 세계와 분절되어 있거나 경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여러 재난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는 단절된 사람들이 온라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낸 사례(Nan & Lu, 2014)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여러 국가의 정부들이 사이버공간의 주도권을 위해 경쟁하는 모습(Ebert & Murer, 2013)을 통해 사이버공간은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공간으로서도 물리적 공간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이 온라인에서 구축하는 정체성이 오프라인에서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으며(Ollier-Malaterre, Rothbard and Berg, 2013; 이주민·신경식·서아영, 2011; 한준·박찬웅, 2001), 온라인 공동체도 그 공동체가 속한 지역적,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Yuan, 2012). 위와 같은 연구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사회적 관계를 공간적 공동체-초공간적 공동체, 혹은 공동체-네트워크라는 이분법적인 대립 관계로 파악하던 연구들에 반기를 든다. 이들에 의하면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창조해내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 전략을 온라인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관계, 공동체, 사이버공간, 그리고 공간 일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2. 공간의 사회적 의미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공간(space)’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관계와 행동들이 일어나는 배경에 불과했다. 배경으로서의 공간은 자연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면으로, 사회적 행위자들의 행동에 물리적 위치와 제약을 제공할 뿐이었다. 전통적인 공동체 개념도 공간을 공동체가 존재하는 물리적 배경,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 및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릇으로 인식했을 뿐이다(Valentine, 2009). 따라서 인터넷의

개발과 함께 사이버공간 및 온라인 관계가 탄생했을 때 공간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인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거리, 지형과 같은 제약을 지녔던 현실 공간과 달리 사이버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균질적이고 거리가 없는 공간 인식됐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공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공간으로 인한 변이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선 문헌검토에서 살펴봤듯이, 온라인 공동체의 등장은 공간의 종말을 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리적 공간과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위치에 있는 사이버공간, 그리고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상호작용하며 생겨나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환기시켜주었다.

1970년대부터 부각된 인간주의 지리학은 기존의 객관적 공간 개념에 의문을 던진다. 공간이라는 개념에는 단순히 배경에 존재하는 물리적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들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사회적 차원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행위, 정체성, 집단의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행위자와 집단에 의해서 사회적 공간이 새로 해석되고 창조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잘 설명하기 위한 ‘장소(place)’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공간이 보편적이고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장소는 특정 의미를 지니게 된 물리적·사회적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리고 이렇게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의미를 ‘장소감(sense of place)’라고 부른다. (Tuan, 1977). 장소감을 통해 장소가 탄생하는 과정은 사회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사람들이 특정한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장소에서 수행하는 행동(장소극, place ballet)을 통해 자신이 느낀 장소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소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고유의 장소감을 지닌 장소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비롯한 여러 감정 및 기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언어와 도구를 제공한다(Valentine, 2009). 사회적 공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동체와 공간 간의 관계는 장소감의 형성과 유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정 공간이 공동체 혹은 어느 집단의 유지 및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그 공간이 공동체의 입장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기 때문이다. 개인과 장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장소는 장소감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관계를 맺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애초에 우리가 사이버공간을 ‘공간’이라는 은유를 빌어 상상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사이버 공간에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Veel, 2003).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 장소감을 부여하듯이, 온라인 공동체가 특정 사이버공간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공간은 고유의 장소감을 지닌 장소로 변화되어 버린다(Sandvik, 2016; 최성락, 2006).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균질적이고 거리가 없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봤듯이 현실 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사이버공간에서도 물리적 공간 못지않게 다양한 ‘지형’이 생겨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특별한 ‘사이버장소’들로 이루어진 ‘사이버지도’를 상상할 수 있게 됐다.

3. 사이버공간과 이주

그렇다면 사이버공간과 이주의 관계는 어떠한가? 앞서 언급되었듯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이버공간은 이주민들이 물리적으로는 구축하기 어려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대안적이자 보완적인 공간으로서 인지되어왔다(Hiller and Franz, 2004; Halilovich, 2013). 사이버공간에서 이주민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본국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도 있고(김경학, 2014),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타 이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이정향·김영경, 2013). 이렇게 형성된 온라인 이주민 공동체들은 아직 이주를 계획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기도 한다(Dekker, Engbbersen and Faber, 2016). 위 연구들은 사이버공간을 일종의 초공간적 자원 혹은 매체으로 상정하면서, 사이버공간의 내부의 다양성과 공간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다른 방향으로서는 물리적 공간에서 경험되는 이주민의 삶이 사이버공간에 의해 매개되면서 새로운 경험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탐구한 연구들도 존재한다(Bork-Hüffer, 2016; Rabogoshvili, 2012). 이 연구들은 다양한 온라인 창구가 상이한 매개효과를 지님을 밝히고,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경험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사이버공간을 그 자체의 지형을 지닌 공간으로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일 사이버공간 내에도 사람들이 장소감을 부여한 장소들이 존재하고, 이 장소들로 이루어진 ‘지형’이 존재한다면, 그 장소들 사이를 이동하는 개인의 경험 또한 여

행, 모빌리티, 혹은 이주의 언어로 설명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과 이동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이버공간에서 ‘이주’의 관점을 적용한 연구 또한 수가 매우 적다. 그 중 눈여겨 볼 연구로 MSN의 메신저 서비스 중단에 의한 사용자 강제 이주 연구가 있다(Fang and Tang, 2017). 이 연구는 경제적 효용성에 기반한 밀고-당기기-이주 이론(push-pull-mooring theory)을 사용해 사람들이 기존 메신저 플랫폼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다. 또 하나의 주요 연구로 조동기(2014)의 논문을 들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저자는 ‘마이스페이스’와 ‘싸이월드’의 사용자들이 다른 사회연결망서비스로 이전해 간 현상을 “온라인 집단이주”로 정의하고, 사회적 신호이론을 활용하여 이주행위를 설명한다. 둘 다 사이버공간에 ‘이주’의 관점을 적용한 점에서 매우 진취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사회연결망서비스 플랫폼으로 한정되면서, 이주를 결심한 사람들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온라인 이주민’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플랫폼 간에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수동적 소비자로서 기술되며, 공간에 장소감을 부여해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탄생시키는 창발적인 역할은 기대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현실적 공간과 사이버공간, 그리고 사이버공간이 사회적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지리적, 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온라인 공동체의 이주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물리적 공간에서도 이주 연구는 장소와 공간,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의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하는데 기여해왔다(권숙인, 2008; Walters, 2000; Constable, 1999). 이주는 그 자체로 한 공간에서부터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동원하며, 이는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 하나의 장소감에서 새로운 장소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 공간과 온라인 공간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연속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의 이주 현상도 오프라인에서의 이주 현상과 비슷하게 사회적 행위자가 공간과 맺는 상호작용 및 장소감에 대해 더 심도 깊은 논의들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앞서 진행된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상정했다.

1. 사이버 공간에서 이주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이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2. 다국적 온라인 공동체에게 공간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3. 온라인 공동체의 사용자들은 사이버공간을 어떤 사회적 공간으로 변화시켰는가?
4. 온라인 공동체의 공간적 맥락과 장소감은 이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공간과 온라인 공동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온라인 언어 학습 공동체의 이주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진행됐다. 온라인 공동체라는 특성을 반영해 게시물 내용의 질적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공동체가 이주하기 전 사용했던 포럼(How to Learn Any Language Forum; 이후 HTLAL로 지칭)과 이주 후 사용하고 있는 포럼(A Language Learners' Forum; 이후 ALLF로 지칭) 양쪽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이주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진 2015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작성된 스레드(thread) 중 공동체의 정체성, 운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스레드로 한정되었다. 총 18개의 스레드에서 1044개의 포스트(post)가 분석됐다. 분석된 스레드와 스레드 별 포스트 분포는 표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포럼	하위 포럼	스레드	포스트 수
How To Learn Any Language Forum	Senior Forum Members Only	A week of posts has disappeared	76
		Recovering from the Week that Never Was	4
		New and Improved: Your Ideas!	28
		Volunteers Needed	10
		Fate of HTLAL	27
		Former and Future Language Communities	51
	Technical Room	Maintenance warning	31
		Messages disappeared	8
	General Discussion	Fate of HTLAL	178
		IMPORTANT: HTLAL Not Accessible	15
		Update on Forum Situation	13
A Language Learners' Forum	HTLAL Discussion	HTLAL might be gone	351
		I won't be going back to HTLAL	87
		Deadline	1
		Copyright and HTLAL and reposting logs	18
		User registration issue with HTLAL	14
		forum conduct discussion	125
		fond memories of HTLAL	7

IV. 포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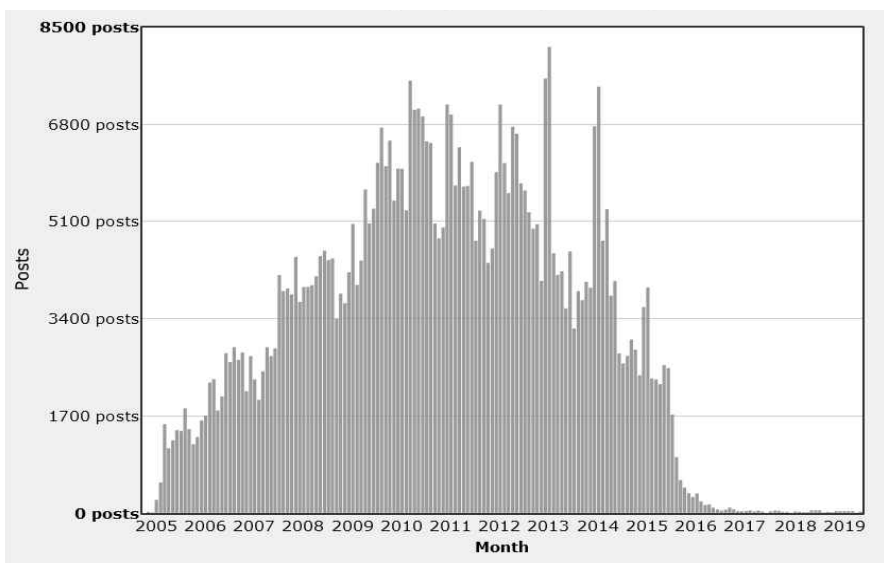
1. How To Learn Any Language Forum (HTLAL)

HTLAL은 2004년 9월 14일, 6개 언어를 구사하는 스위스 사업가에 의해 개설된 포럼이다. 2005년 1월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했으며,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립자의 개인적 의견과 경험을 게시한 웹사이트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포럼으로 시작했다. 회원들이 언어 학습 전반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총 32개의 하위 포럼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도록 지정된 하위 포럼을 제외하면 모든 포스트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9년 6월 7일 기준으로 총 41,778 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고 531,882개의 포스트가 있다. 서버는 스위스에 위치되어있다.

포럼은 총책임자인 설립자와 설립자가 지정한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 방향은 언어에 대한 논의에 불필요한 포스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대화는 개별 쪽지를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종교와 정치에 대한 논의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인신공격 및 반복적인 포스팅, 이중 계정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어있다. 규정을 어길 시에는 운영진이 포스트 및 스레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엄격한 운영 방침에 대해 불만을 품은 회원들도 있었지만 언어 학습과 관련된 포럼이 많지 않았고, 포럼의 토론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을 상쇄하고 있었다.

표2에 나타나는 월별 포스트 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포럼 활동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쇠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총 관리자이자 총 책임자인 설립자의 부재다. 특히 포럼 디자인, 소프트웨어, 서버와 같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진에게 권한을 양도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는데, 설립자가 더 이상 포럼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종종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포럼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 매번 포럼이 다시 정상 작동하게 된 것을 보아 설립자가 조치를 취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불안정이 고양됐다.

<표 2> 월별 포스트 수, HTLAL



또한 포럼 소프트웨어가 너무 낙후되었다는 지적도 여러 번 나왔다. 포럼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된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Web Wiz Forum 7.9버전인데 이 버전은 이미 2004년에 저작권이 만료된 버전이다. 회원 수와 포스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포럼 내에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만이 증가됐다.

2. A Language Learners' Forum (ALLF)

2015년 5월 15일, 회원 R이 본인의 사비로 구매한 도메인이 ALLF로 발전됐다. 일차적 목적은 HTLAL 회원 중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포럼 소프트웨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차적으로는 HTLAL에서 서버 문제가 발생해 접속이 불가능해질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피난처로 활용하기로 했다. HTLAL의 도메인이 2015년 7월 16일 만료 예정이었고, 7월 18일 접속불가 상태로 전환되자 7월 30일까지 164명이 ALLF에 새로 가입했다. HTLAL의 운영진은 설립자와 접촉을 시도하지만 2016년 8월 22일까지 접촉이 되지 않자, HTLAL과 ALLF를 둘 다 공동체의 공식적 웹사이트로 사용하기로 정한다. 2019년 6월 7일을 기준으

로 10,465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있으며, 133,185개의 게시물이 생성됐다.

ALLF의 운영방침은 HTLAL과 거의 동일하다. HTLAL의 운영진 중 2015년 여름까지 활동적이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ALLF의 운영진으로 기용됐으며, 새로 기용된 사람은 단 두 명으로 설립자인 본인과 2006년부터 꾸준히 HTLAL에서 활동한 Serpent라는 회원이다. phpBB라는 무료 배포 소프트웨어로 가동되고 있으며, 서버는 영국에 위치하고 있다.

V. 이주 과정

1. “시간 여행” 사건

앞서 서술했듯이, HTLAL은 설립자의 부재로 인해 여러 기술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검색 기능의 문제로 인해 포럼에 축적된 정보를 회수하는 것이 어려웠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포럼 자체적인 검색기능 대신 구글의 사이트 내부 검색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다시 접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쪽지함에 빈 공간이 남아 있을 때도 쪽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그리고 회원 수는 증가했지만 서버가 관리되지 않아 포럼 내에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포럼에 접속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매번 포럼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접속이 불가능했던 원인이나 다시 접속이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보도 공유되지 않았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회원들은 이미 포럼에 축적된 토론과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운영진은 포럼이 접속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위키아 사이트를 개설해서 유사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회원들이 게시한 스레드와 포스트가 모두 사라진 사건은 이런 불안정성에 정점을 찍었다. 회원들의 일차적 반응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설립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차적으로 왜 아무도 이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포스트가 나타나자 여러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는 포스트를 남기면서 공동체의 이주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현 공동체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포럼 소프트웨어

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거나, 성공적인 포럼 이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포스트들이 이어졌다. 동시에 포럼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새로운 포럼이 생긴다면 이주하려는 진영과 남으려는 진영으로 공동체가 나눌 것이 두렵다는 고백도 뒤따랐다.

추후 한 운영 위원이 도메인 제공자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해본 결과 HTLAL의 도메인 계약이 2015년 7월 16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공유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회원들은 정말로 새로운 도메인과 새로운 포럼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표현했다.

2. 새로운 포럼 형성과 이주

2015년 5월 15일, 회원 R은 사비를 이용해 도메인 how-to-learn-any-language.org를 확보하고, 그 동안 얘기만 했던 기술적 변화들을 시험해보는 공간을 이 곳에 만드는 것이 어떨지 제안했다. 또한 HTLAL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 피난처 혹은 백업 포럼으로 사용하자고 권유했다. 동시에 새로운 도메인이 HTLAL의 경쟁자나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7월 16일에 예정된 도메인 만료로 인해 포럼이 다시 접속 불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사용자들은 새로운 포럼의 존재를 환영했다.

이후 7월 3일에 운영자 중 한 명인 B는 새 포럼에 유입되고 있는 인터넷 트롤(internet troll: 스팸, 악플과 같은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퇴치하기 위한 인력 모집 공지를 HTLAL에 게시했고, 7월 12일에 R도 새로운 포럼에 신규 회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도메인 만료 예정일인 7월 16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허나 이후 7월 18일까지도 도메인 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HTLAL 포럼에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포럼으로 이동하게 됐다.

새로운 공동체로 이동한 회원들의 첫 대응은 이메일을 통해 HTLAL의 설립자와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설립자는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회원들은 설립자의 부재로 인해 야기된 기존 포럼의 문제점들을 다시 열거하기 시작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포럼에서 맞게 된 새 시작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다.

하지만 7월 21일 HTLAL 포럼이 다시 활성화됐고 도메인 만료기간이 2020년으로 연장되어, 다시 HTLAL로 돌아가려는 회원들과 이미 새로운 포럼에 남기로 결정한

회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HTLAL로 복귀를 주장한 회원들은 새로운 포럼이 HTLAL의 공동체를 두 진영으로 나눴다고 비판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같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HTLAL의 정수는 포럼에 축적된 정보, 토론, 그리고 포럼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떠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반대로 새로운 포럼에 남고자 한 진영은 더 이상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았고, HTLAL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축적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과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HTLAL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포럼에 가입한 회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몇 년 동안 HTLAL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HTLAL에 신규회원 가입의 감소가 포럼의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됐다. 이 새로운 회원들의 존재는 새로운 포럼을 제공한 R도 알 수 없었던 변수로, 새로운 포럼을 피난처로 사용하고, HTLAL이 복원되면 다시 돌아가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진은 절충안으로 설립자에게 마지막 연락을 시도했다. 포럼의 관리 권한 전부를 운영진에게 공유해주어 HTLAL의 공동체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버그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담았다. 하지만 마감일인 8월 22일까지 설립자는 응답하지 않았고, 운영진은 결국 HTLAL과 새로운 포럼을 둘 다 공동체의 공식 사이트로 인정하기로 결정짓는다. 새로운 포럼은 HTLAL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표시로 도메인 이름과 웹사이트 이름을 변경하여 A Language Learners' Forum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활동적인 사용자들은 ALLF로 이주를 마쳤고, HTLAL은 새로운 토론이 생성되는 장소보다 기존 정보를 열람하는 자료실의 역할로 축소됐다.

VI. 공간적 상호작용의 양상

1. 현실 공간의 물리적 제약

공동체가 이주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간적 차원은 현실 공간이다. HTLAL의 회원과 서버가 현실 공간에서 점유하고 있는 물리적 위치는 공동체의 교류양상 및 문화가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일차적으로 회원들이 다

양한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며칠, 몇 주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미 오래된 스레드에 답글을 게시하는 것도 용인되었다. 회원들의 다양한 언어적 배경은 포럼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 영어만을 사용하는 원칙¹⁾을 자리잡게 만들었지만, 이 언어적 다양성 덕분에 회원들은 다른 언어 관련 포럼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언어학적 토론을 전개할 수 있었고, 희소 언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손쉽게 원어민이나 그 언어에 능숙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네덜란드어에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던 스레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성실히 답을 달아주는 친절한 원어민이 많아서 인상 깊었어요. (회원 C, “Copyright and HTLAL and reposting logs”, HTLAL Discussion, ALLF)

하지만 회원들의 지리적 분산은 그에 따른 단점도 갖고 있었다. 회원들은, 서로를 만날 기회가 없고, 따라서 HTLAL에 구축된 사이버공간만이 이들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포럼 접속 오류에 더 취약하게 됐다. 우선 현실 세계에서 최종의결권자인 설립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연락을 취하는 방안은 답이 오지 않는 이메일 주소 밖에 없었다. 그리고 포럼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면 회원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운영진은 이메일 목록, 트위터 계정,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여 유사시 연락망을 구축하게 했지만, 서버와 관련된 문제, 혹은 포럼의 기술적 버그 때문에 포럼과 공동체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설립자의 공백과 결합되어 운영진의 분위기까지 침울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제가 HTLAL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HTLAL이 언어 학습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사실도 자랑스럽고요. [...]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HTLAL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신경 쓰이네요. (운영위원 D, “Former and Future Language Communities”, Senior forum members only, HTLAL)

1) 두 가지 예외는 개별 언어 학습 로그(Language Learning Log)와 다언어 라운지(Multilingual Lounge) 하위 포럼으로, 언어 연습을 목적으로 기타 언어로 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용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버의 현실 공간적 위치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추후에 공동체가 ALLF로 이동하면서, 이동한 회원들 중 다수가 HTLAL에 자신이 게시한 포스트를 옮기고 싶어하자 부각되기 시작했다. 바로 저작권의 문제가 논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HTLAL의 설립자와 서버가 스위스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저작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동시에 새로운 ALLF의 최종 책임자이자 설립자인 R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영국법에 따라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물이 ALLF에 게재된다면 게시한 회원뿐만 아니라 R도 책임을 져야 함이 논의됐다.

HTLAL의 규칙을 보니까 우리는 [관리자에게] 우리가 게시한 것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 그러나 스위스 법에 따르면 개인의 작가로서의 권리는 영구적으로나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점은 우리가 HTLAL에 글을 쓸 때 작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는지입니다. [...] 우리는 [관리자에게] 글을 사용할 권한을 줬지만 작가로서의 권리는 주지 않았어요. [...]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글을 복사하는 것은 허용될 겁니다. (운영위원 E, “Copyright and HTLAL and reposting logs”, HTLAL Discussion, ALLF)

2. 사이버공간을 장소로 만들기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온라인 공동체임으로 현실 공간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HTLAL의 온라인 공동체는 자신이 위치한 특정 서버의 특정 도메인을 지닌 특정 포럼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앞서서 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때 알아봤듯이, 특정 온라인 공동체가 사이버공간에 자리잡게 되는 순간,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균질적이고 거리가 없는 공간이 아니게 된다. 이 공간의 특징에 따라 그 공간에 자리 잡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가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공동체의 행동도 사이버공간을 하나의 사회적 공간, 즉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동체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현실적 배경은 회원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언어적 다양성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될 수 있으면 이 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식이 공동체 전반에 공유되어 있었다. 특히 언어적 다양성을 HTLAL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회원들은 언어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면 포럼의 토론문화에 제어를 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곳은 제가 라디노어 같이 희한한 언어에 대해 글을 올려도 누군가가 답장을 해줄 수 있는 장소거든요. 이 곳의 공동체가 크고 지식이 많기 때문이지요. (회원 F, “A week of posts has disappeared”, Senior forum members only, HTLAL)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HTLAL에 다양성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잃거나 거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부 십대들이 심심풀이로 인신공격을 퍼부어서 벵골어, 태국어, 크메르어와 같이 흥미로운 언어의 원어민들이 포럼을 떠나거나 눈치만 보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어쩌면 그분들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답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 어쩌면 말다툼을 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인내심을 잃었을 수도요. 그래도 저는 FIGS(French-Italian-German-Spanish)만 공부하는 포럼을 원하지는 않아요. (회원 G, “Fate of HTLAL”, Senior forum members only, HTLAL)

다른 언어 관련 포럼과 HTLAL을 구분하는 두 번째 지점은 HTLAL은 어느 특정 언어 학습법이나 학습 자료를 홍보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특징으로 인해 HTLAL에서는 여러 언어학습법에 대한 솔직한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어느 누구도 한 학습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회원들은 여러 학습법과 자료에 대한 정보를 조합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다.

요즘은 새로운 상품(혹은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킨 사람들)을 위주로 형성된 공동체들이 많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런 공동체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특히 그 공동체의 중심부에 있는 인물과 의견을 달리한다면요. [...] 그 공동체들은 해당 상품, 혹은 해당 인물이 인기를 잃자마자 수명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동체들은 상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성공담을 공유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은 마케팅의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H, “Former and Future Language Communities”, Senior forum members only, HTLAL)

이런 차별적 요소를 통해 HTLAL은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장소로 각인됐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 공부를 응원해주며 ‘왜 그런 언어 공부하니?’와 같은 질문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언어와 교과서에

대한 질문을 올려도 누군가는 내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장소로 옮길 경우, HTLAL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축적된 자료와 공동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했다.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HTLAL을 떠난다는 생각을 거부하게 만든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우리가 이 사이트를 떠날지 고민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 방대한 기록물. [...]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옛 회원들이 남긴 깊고 넓은 토론의 유산.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는 구글을 써서 포럼을 종종 검색하는데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우곤 해요. 방금 전에도 [...] 번역문과 함께 문학작품을 읽는 방법에 대해 읽었는데 제 공부에도 적용해볼 생각이예요. 저처럼 눈팅만 하는 사람들도 이 포럼을 통해 끔찍하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만일 이 포럼이 죽어 버리면 다시는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회원 I, “Fate of HTLAL”, General Discussion, HTLAL)

3. 장소감과 맞는 장소 찾기

하지만 이들이 이주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HTLAL이라는 사이버 장소를 통해 형성된 장소감, 그리고 이 장소감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정체성이 공동체에 적합한 장소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HTLAL이라는 장소와 HTLAL에서 성장한 공동체가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할수록, HTLAL에 대한 장소감이 더 강해질수록 오히려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HTLAL에 대한 장소감이 언어 학습 영역에서의 대체불가능성과 동시에 불안정성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포럼에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제 “언어 학습 가이드”를 새로 손봤고 제 언어 학습 로그를 .doc 포맷으로 전환해서 저장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공들여서 쓴 포스트들도 저장해뒀고요. [...] 아직도 HTLAL은 접속이 불가능하고 거의 6000개에 임박하는 포스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백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만일 HTLAL이 돌아오면 그곳에서 다시 로그를 작성하겠지만 지금 상태를 보니 점점 환멸이 느껴지네요. (운영위원 E, “HTLAL might be gone” HTLAL discussion, ALLF)

이런 감정들은 점차 HTLAL이라는 장소와 HTLAL에 형성된 공동체를 별개로 인식하는 태도를 함양시켜줬다. HTLAL의 공동체는 유지하고 싶지만 HTLAL이라는 장소는 확실히 큰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입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HTLAL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큰 불신을 불러 일으켰다.

만약 [관리자가] 일상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포럼 회원들과 소통하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통제권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HTLAL 같은 훌륭한 공동체는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해요 [...] 어디로든 움직인다면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포럼이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어떻게든 망하지 않고 있다면 사람들을 이주하게 만드는 것이 힘들 거예요. [...] 저는 여기 있는 자료를 잃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HTLAL의 장점과 함께 다 같이 새로운 포럼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회원 F, “A week of posts has disappeared”, HTLAL)

그러나 공동체가 이주할 장소를 찾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이들은 HTLAL의 “장점”인 언어적 다양성, 상호존중적인 문화, 그리고 학습법 토론의 자유를 그대로 유지하되 불안정성만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두 명의 회원이 자신의 개별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지만 하나는 교과서 판매를 위한 마케팅 사이트의 일부였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종교적 발언에 대해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LLF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R이 기존 HTLAL의 운영진을 그대로 ALLF의 운영진으로 가용했으며 동일한 운영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R은 HTLAL의 설립자와 달리 다른 운영진에게 모든 권한을 공유했기 때문에 HTLAL이 제공하지 못했던 안정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할 조건이 갖춰졌던 것이다.

VII.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공간 개념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동체의 이주 경험을 재조명했다. 연구된 공동체에서 집단 이주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혼합되어 촉진되었다. 장기적

요인으로는 설립자의 부재와 낙후된 소프트웨어가 HTLAL 포럼이라는 공간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축적시켰다. 일주일도 넘는 기간 동안 활동 내역과 기록이 사라진 ‘시간 여행’ 사건을 통해 회원들은 커공동체의 해체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었으며, 포럼의 멸망이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비해야 할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한 회원이 사비로 새로운 포럼을 구축했지만, 다른 공간으로 이주할 경우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축적된 역사를 상실한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은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을 주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적인 이주가 가능했던 것은 새로운 공간에서도 기존 사이트의 운영진들이 비슷한 규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보증, 기존 포럼의 기술적 문제가 신입 회원의 가입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도 공동체가 둘로 찢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에 대한 공간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공동체의 일원이 현실 공간에서 한 물리적 위치에 집중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현실적 물리적 공간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 그 사이버공간은 고유의 장소감을 부여 받아 특수성을 지니게 되며, 이 특수성은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존의 온라인 장소에서 형성된 장소감은 이주의 목적지로 적합한 장소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기존 장소의 장소감이 불안정성 혹은 지속불가능성과 근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 장소감과 장소에 대한 이해가 강해질수록 정체성과 장소의 관계를 축소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생겨나며, 기존 장소를 떠나려는 관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주의 깊게 볼 부분들이 있다. 우선 온라인 공동체에 만연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꼽을 수 있다. HTLAL의 회원들에게 포럼은 너무나도 잃어버리기 쉬운 장소로 상상되곤 했다. 물론 설립자의 부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했지만, 잦은 기술적 문제로 인한 서버 불안정, 악플과 스팸으로 인한 공동체 외해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런 현상들이 정말로 대다수의 온라인 공동체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이 기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이주연구의 담론과 관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가 보여주듯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이주’로 정의하고 분석했

을 때, 사이버공간과 구성원 간의 관계가 매우 풍부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이주 연구가 이주연구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이주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리적 공간에서 이주 결정 과정을 연구할 때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 혹은 후의 의견만 수집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기 매우 어렵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구성원들의 발언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주 결정을 내릴 때 있었던 여러 의견 충돌과 수렴과정을 쉽게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이주에 대한 결정이 개인적 결정이기 보다는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 의견 교류 및 수렴 과정을 거쳐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Tabor Milfont and Ward, 2015), 앞으로 온라인 이주 연구가 이주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포럼

A Language Learners' Forum. <http://forum.language-learners.org>

How To Learn Any Language Forum. <http://how-to-learn-any-language.com/forum/>

권숙인. 2008.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국제지역연구』 17(4): 33-60.

김경학. 2014.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 유대.” 『남아시아연구』 20(2): 25-57.

김경희·송경재, 2018. “누가 2위 포털인 다음 뉴스를 이용하는가?: 포털 뉴스 이용자의 특성과 포털 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6): 141-164.

김동인. 2019.06.05. “보수 유튜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시사IN』.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736> 에서 가용. 인터넷; 2019년 6월 7일 접속.)

발렌타인(Gill. Valentine). 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역. 논형.

배영. 2003. “사이버 커뮤니티의 내부 동학과 관계구조 - 28개 전문인 포럼의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 37(3): 109-134.

서진완·박희봉. 2003. “인터넷 활용과 사회자본 -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1): 27-50.

이정향·김영경. 2013. “한국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2): 324-339.

이주민·신경식·서아영. 2011. “가상세계 및 공간간의 자기차이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16(3): 23-45.
- 장소연·류웅재. 2017.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16(1): 45-85.
- 장영원. 2011. “재한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스케일에 따른 공동체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 조동기. 2014. “사이버공간의 사회적 신호이론과 온라인 집단이주.” 『사회연구』26(2): 127-150.
- 최성락. 2006. “MMORPG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4(2): 149-177
- 한준·박찬웅. 2001. “인터넷 사이트간의 관계구조와 생태구조 - 인터넷 이용자들의 사회적 배경과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35(3): 197-221.
- Bainbridge, William Sims. 1999. “Cyberspace: Sociology's natural domain.” *Contemporary Sociology* 28(6): 664-667.
- Bork-Hüffer, Tabea. “Mediated Sense of Place: Effects of Mediation and Mobility on the Place Perception of German Professionals in Singapore.” *New Media & Society* 18(10): 2155-2170.
- Castro, Luis A. & Victor M. Gonzales. 2014.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Practices: A Transnational Website in a Migrant Community.” *Human-Computer Interaction*. 29(1): 22-52.
- Constable, Nicole. 1999. “At Home but Not At Home: Filipina Narratives of Ambivalent Returns.” *Cultural Anthropology* 14(2): 203-228
- Dekker, Rianne, Godfriend Engbersen & Marjie Faber. 2016. “The Use of Online Media in Migration Networks.” *Population Space and Place* 22: 539-551.
- Ebert, Hannes & Tim Maurer. 2013. “Contested Cyberspace and Rising Powers.” *Third World Quarterly* 34(6): 1054-1074.
- Fang, Yu-Hui & Kwei Tang. 2017. “Involuntary Migration in Cyberspaces: The Case of MSN Messenger Discontinuation.” *Telematics and Informatics* 34: 177-193.
- Halilovich, Hariz. 2013. “Bosnian Austrians: Accidental Migrants in Trans-local and Cyber Spaces.” *Journal of Refugee Studies* 26(4): 524-540.

- Harrison, Douglas, 2010. "No Body There: Notes on the Queer Migration to Cyberspace."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43(2): 286–308.
- Hiller, Harry H. and Tara M. Franz. 2004. "New Ties, Old Ties and Lost Ties: the Use of Internet in Diaspora." *New Media & Society* 6(6): 731–752.
- Hillery, George.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 Johnson, C M, 2001. "A survey of current research on online communities of practic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4: 45–60.
- Kunz, Werner & Sukanya Seshadri. 2015. "From Virtual Travelers to Real Friends: Relationship-Building Insights from an Online Travel Commun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8: 1822–1828.
- Nan, Ning & Yong Lu. 2014. "Harnessing the Power of Self-Organization in an Online Community During Organizational Crisis." *MIS Quarterly* 38(4): 1135–1158.
- Navarrete, Celene, & Esperanza Huerta. 2006. "Building Virtual Bridges to Home: The Use of the Internet by Transnational Communities of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 Policy* 11: 1–20.
- Ollier-Malaterre, Ariane, Nancy P. Rothbard & Justin M. Berg. 2013. "When Worlds Collide in Cyberspace: How Boundary Work in Online Social Networks Impacts Professional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8(4): 645–669.
- Pampel, F. 2000, "Community." *Encyclopaedia of Sociology*, edited by Edgar F. Borgatta & Rhonda J. V. Montgomery, Detroit: Mcmillan Reference.
- Qu, Hailin & Haeyoung Lee. 2011. "Travelers' Social Identification and Membership Behaviors in Travel Community." *Tourism Management* 32: 1262–1270.
- Rabogoshvili, Artem. 2012. "Chinese Migration to Russia as Revealed by Narratives in Chinese Cyberspace." *Journal of Current Chinese Affairs* 41(2): 9–36.
- Sandvik, Kristin Bergtora. 2016. "The humanitarian cyberspace: shrinking space or an expanding frontier?" *Third World Quarterly* 37(1): 17–32.

- Scott, J. & G. Marshall, 2009 "Community." *Oxford Dictionary of Sociology*, 3r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bor, Aidan S., Taciano L. Milfont & Colleen Ward. 2015. "International Migration Decision-Making and Destination Selection Among Skilled Migrants." *Journal of Pacific Rim Psychology* 9(1): 28–41.
- Veel, Kirstin. 2003. "The Irreducibility of Space: Labyrinths, Cities, Cyberspace." *Diacritics* 33(3): 151–172.
- Walters, William. 2000. "Assessing the Impact of Place Characteristics on Human Migration: the Importance of Migrants' Intentions and Enabling Attributes." *Area* 32(1): 119–123.
- Wilson, Samuel M. 2002. "The Anthropology of Online Communiti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 449–467.
- Yuan, Elaine J. 2012. "A Culturalist Critique of 'Online Community' in New Media Studies." *New Media & Society* 15(5): 665–679

SESSION 4

‘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관한 고용주의 책임

김 철 호 (전북대학교) · 최 서 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제17조)를 정하여 이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제46조)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임금노동을 할 경우 ‘외국인 고용의 제한’(제18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이주노동자와 고용주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 제8호, 제9호)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5년여 동안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허가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사람을 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대략 20만 명을 유지하였으며, 지난 2016년 이후부터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말 35만 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허가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전체를 노동자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수익활동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노동을 하는 경우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체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강제퇴거’를 주요한 정책으로 집행한 반면, ‘외국인 고용의 제한’ 규정에 따른 고용주의 책임을 묻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한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불균형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책 수립의 결과인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민정책의 한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SESSION 4

한국 계절근로자제도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캐나다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송 영 호 (IOM이민정책연구원) · 한 준 성 (한양대학교)

I. 서론

한국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가 농축산·어업 분야로 확대 적용되면서부터였다. 이후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2015년 계절근로자제도 시행을 거치면서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뿐 아니라 농축산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농어촌 지역의 일손부족 현상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물론 공식적인 제도를 통한 농어업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는 여타의 업종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이다. 그렇지만 해마다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농축산업 분야 쿼터를 보면 6,400명+ α (11.4%), 어업 분야는 2500명+ α (4.4%)이고, 올해 상반기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계절근로자는 41개 지자체에 총 2,597명이다(고용정보원 EPS 시스템, 2019; 법무부, 2019).

하지만 인력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농업부분 고용허가제 신청건수는 13,823건으로 이 해에 배정된 인원(6600+ α 명)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에서 ‘불법’체

* 이 글은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는 미완성 초고입니다. 저자의 동의 없는 인용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류외국인을 활용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양순미 외, 2018). 이처럼 인력수급의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농어촌 지역 고용주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필요한 시기에 일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파종기와 수확기에 닥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인력 수급의 불균형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과 가족구조의 변화도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증가 추세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다. 한국사회의 1960~1980년대 압축적 산업화의 영향으로 상당수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했다. 그 결과 농어촌 지역은 과소화·공동화되었고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현재 농가는 102만1,000가구 2,314,982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고, 어가도 마찬가지이다. 5만 2천여가구 11만7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했다(통계청, 2019). 농어촌 인구 중 고령화 기준 연령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농가 44.7%, 어가 36.3%로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통계청, 2019).

이 외에도 농촌 지역의 경우 첨단시설농업과 규모화·전문화·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가 노동보다 고용 노동이 더 필요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김병률 외, 2010). 어업 분야에서도 기술 발달로 도입된 물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다(홍재범·김병호, 2018). 내국인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현장 노동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구직자들 가운데 고령자가 많아 생산성 저하라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번기’와 ‘어번기’라는 계절성 때문에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농가에서는 ‘농한기인력 유휴·농번기인력 부족’의 특징을 띄게 된다(김병률 외, 2010). 어가도 어황 변동에 따라 인력 활용에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농가에서는 농한기에 고용허가제(E-9) 인력을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임의적인 사업장 변경으로 근무지 이탈의 문제가 발생한다(최서리·이창원, 2013). 반면에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여타 업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 계절성이 강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인한 작업장 이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농어촌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의 상용직 형태의 고용을 전제하고, 특정 품목(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에만 문호를 개방하고, 일정 정도 이상 규모가 되어야만 하는 등 고용주 관점에서 볼 때 제약이 있다. 이 제도는 작물재배업의 농번기라든지 수산물 가공시기에 급증하는 노동력 초과수요에 대응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2015년에 시범 실시되고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단기간(90일 이하) 계절근로자제도는 이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용기간과 농어번기의 필요 기간이 불일치하여 농여가가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자체 공무원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지만 전담인력 부족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혜경 외, 2018; 엄진영, 2019).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에 도입된 계절근로자제도의 운영 및 관리 체계의 실태, 그리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계절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계절근로자제도가 시행 초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랜 계절이주노동정책 운용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캐나다의 사례를 반성적 성찰을 위한 준거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II. 단기이주노동자프로그램(TMWP):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도입 역사

한국 계절근로자제도는 기본적으로 ‘단기 이주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Migrant Worker Program, 이하 TMWP)’이다. 그런 점에서 계절근로자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도가 놓인 역사적, 정책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우선 서구의 TMWP 역사를 살펴보고, 이러한 글로벌 추세 속에서 한국의 TMWP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민 수용국들은 이주노동자 도입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은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류를 암묵적으로 용인 해주는 모습을 보인바 있고, 영국은 2004년을 기점으로 EU 신규가입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수용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았고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 가운데 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정책 수단은 TMWP였다. TMWP는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책이었다(Preibisch 2010, 405).

TMWP는 전후 북미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미국의 브라세로(Braccero) 프로그램(1942-1964)과 독일의 초청노동자 프로그램(1955-1973)이 대표적

이다. TMWP는 1960년대에 지속 확장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은 1970년대 들면서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노동부의 비판적 검토가 진행되었고, 서유럽에서는 석유 위기 여파 등으로 초청노동자 도입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제와 고용주 착취 등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비판적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Preibisch 2010, 408).¹⁾

추진 동력을 상실했던 TMWP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1990년대에 새로운 형태의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앞서 설명한 전후 프로그램들이 1세대 TMWP라면 탈냉전 시기에 부활한 단기외국인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은 2세대 TMWP라고 부를 수 있다. 부활한 TMWP에 대해서는 노동수요 부족 해소 방안이라는 점과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이라는 점이 정당화 논거로 제시되었다(Preibisch 2010, 408).

1, 2차 TMWP 간에는 단절과 지속의 두 측면이 나타난다. 우선 단절의 측면을 보면, 2차 TMWP는 이전과 달리 소규모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시행되었다. 다시 말해 특정 고용 영역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들이었다. 그렇지만 지속의 측면이 보다 두드러졌다. 단기순환 원칙, 단기체류 비자, 사업장 이동 제한, 사회적·정치적 권리 제한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TMWP 노동자들은 특정 고용주에 부속된 상태에 놓였고 단기 근로자로서 영주자격 및 시민권 취득의 기회가 원천 봉쇄되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캐슬(Stephen Castles)은 다음과 같이 날선 논평을 했다. “EU와 그 회원국들은 40년 전에 서유럽 국가들이 했던 그대로 여전히 ‘노동(labor)’을 수입하면서도 ‘사람(people)’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Preibisch 2010, 409 재인용)

한편 서구의 TMWP 가운데 본 연구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절근로자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OECD 국가의 계절근로자 비자 허가 건수는 2016년 기준 658.4천건이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개별 국가별로는 폴란드(446.8천건)와 미국(134.4천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대비 증가한 나라는 폴란드(39% 증가), 미국(24% 증가), 캐나다(11% 증가), 핀란드(17% 증가), 뉴질랜드(14% 증가), 호주(41% 증가), 노르웨이(5% 증가), 프랑스(1% 증가)이다. 반면 감소한 나라는 멕시코(6% 감소), 오스트리아(3% 감소), 이탈리아(1% 감소), 스웨덴(15% 감소), 스페인(2% 감소)이다.

1) 물론 대량 단기이주노동자 채용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외국인들이 있었다. 가족재결합으로 입국한 이주민,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이 그들이다.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국가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공공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취업 기간은 3년으로 1년마다 갱신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재입국 방식으로 최장 9년 8개월(4년 10개월씩 두 차례 체류) 동안 한국에 정주할 수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09년에는 1년 이하로 제한되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 외에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취업 확대, 표준 근로계약서 개정, 농업과 축산업 표준근로자계약서 신설,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차등화, 적극적 구인 노력 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단축 등 일련의 제도 변화들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체로 고용허가제 법령의 변화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계절근로자제도는 그러한 흐름과는 궤를 달리하는 변화였다. 이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이 아니었다.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제도로써 지자체가 도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새로운 트랙의 이주노동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제도는 2015년 농가를 중심으로 농번기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오고 있다(<표 1> 참조).

<표 2> 한국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및 확대

년도	내용
2015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시범 실시(괴산, 보은)
2016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4개 지역 확대(양구, 괴산, 보은, 단양)
2017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국 지역 확대 실시
2018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국 42개 지자체, 2822명
2019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국 41개 지자체, 2,597명

* 자료: 이해경 외(2018) 재구성

III. 한국의 계절근로자제도: 현황과 쟁점

1. 계절근로자제도 개요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가의 농·어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과산에서 시범사업을 하였으며, 총 3회의 시범사업 후 201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확대되었다. 법무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계절근로자 선발과 도입, 농·어가 수요 및 신청, 배정, 사후 관리, 본국으로의 송환 등의 실제적인 행정을 도맡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세 가지 방식(MOU 방식,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방식, 결혼이민자 국내 친척 활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수로 선택하여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여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결정한다.

배정협의회는 지자체의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도입 규모 및 지자체별 도입 인원을 산정한다. 특히 MOU 방식의 경우 외국의 파트너 지자체가 직접 선정, 추천한 주민에게만 비자를 발급해 준다. 중개업자(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계절근로자를 선정하는 지자체는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자체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제출서류를 갖춰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계절근로자가 국내 입국 후에는 전적으로 지자체와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된다(<그림 1> 참고).

<그림 1>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



*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http://m.moj.go.kr/HP/MWEB/MWEB_40401017.jsp> (최종검색일: 2019년 6월 13일)

다음으로 고용 기간은 농업과 어업 모두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최소 75일에서 최대 90일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농어가당 배정은 상하반기 연 2회씩 실시된다. 업종별 허용 인원을 2018년까지는 2명에서 4명까지로 제한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최대 5명으로 배정인원을 늘렸다. 어업의 경우 채취나 양식 등은 제외되고 수산물 가공 분야(원시가공에 한해)에 한정된다.

2.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현황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계절근로자제도에 참여한 지자체 수와 계절근로자 수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시범 운영된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1개, 8개 지자체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각각 21개, 42개, 41개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계절근로자 수도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각각 19명, 200명, 1,086명, 2,822명, 2,597명으로 참여 지자체 수와 계절근로자 수가 모두 2017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 수를 농어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된 수치를 비교하면 농가(66개, 83.5%)가 어가(13개, 16.5%)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적용 가능한 업종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농촌 지역에서는 시설채소 및 배추절임과 같이 계절성을 띠는 업종이 많은 반면 어촌 지역은 계절근로자 도입이 과메기, 김 등의 수산물 가공(건조업)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다.

<그림 2> 연도별 참여 지자체 및 계절근로자 수

(단위: 개, 명)



* 자료: 법무부(2019) 보도자료 재구성

<표 3>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한 지자체 농가 및 어가 수

(단위: 지자체 수)

	농가	어가	전체
2015년	1		1
2016년	7	1	8
2017년	20	4	24
2018년	38	8	46
합계	66	13	79

* 자료: 이해경 외(2018)

다음으로 계절근로자 도입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지자체가 외국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데려오는 방식,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을 고용하는 방식이 있다.

실제 활용 방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친척활용방식 가운데 하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MOU 방식을 활용하는 지자체 수는 2015년 1개에서 2016년 5개, 2017년 7개, 2018년 22개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결혼이민자 친척 활용하는 방식 또한 2016년 3개에서, 2017년 17개, 2018년 20개로 증가해 왔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해 활용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에 4개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유형

(단위: 지자체 수)

	양해각서 (MOU)방식	혼합(MOU방식+결혼 이민자 친척활용방식)	결혼이민자 친척 활용방식	합계
2015년	1			1
2016년	5		3	8
2017년	7		17	24
2018년	22	4	20	46
합계	35	4	40	79

* 자료: 이해경 외(2018)

3. 주요 쟁점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쟁점은 크게 제도운영 및 관리 주체, 이탈 방지, 그리고 권리 보호라는 세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 제도 운영과 관리 주체

현행 계절근로자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고용주(사용자)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제적인 관리 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도입 규모 산정과 지자체 운영 평가에 따른 배정만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계절근로자 입국 후부터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분쟁 해결부터 개별 농어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항목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계절근로자 입국 시 사전교육을 주관(고용주 참석 필수, 통역 확보)하고, 노동자 주거 및 음식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본국 송환까지 일련의 실질적 운영과 관리를 지방정부에 일임하고 있는 형국이다. 해외에서는 공인된 업체를 통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대표적으로 호주)도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자체에 주도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제도운영과 관리는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의 부작용(도입 및 알선, 송출 과정의 비리와 브로커 개입)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서 일견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크게 부족하여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절근로자 50명당 1명의 담당 공무원을 두도록 지침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지켜지는 곳이 많지 않으며 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와 겸업하는 상황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 지금은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속한 지자체가 향후 배정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패널티를 받지 않게 하려고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사후 지원 업무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어가에서 필요한 인력 신청을 받고 MOU를 맺고 있는 외국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를 선발 도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입국 후 지

원 체계는 고용허가제처럼 외국인인력상담센터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주(고용주)와 노동자가 직접 도움을 받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의 선발과 도입을 담당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한국생활 지원은 기존의 이주노동행정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지원인프라가 제조업 중심 지역에 편중된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농어촌 지역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거점센터와 소지역센터를 확충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2) 이탈 방지

한국에서는 2015년 시범사업 이후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다. 그 가운데 ‘불법’체류 비율은 2.3%(총 115명)로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불법’체류자 수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없었고 2016년 4명, 2017년 18명, 2018년 93명으로 확인되었다. 2016년의 경우는 모두 남성이었고, MOU 방식으로 입국한 필리핀인과 키르기스스탄인이 각각 2명이었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이탈률만 공개되어 불법체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해경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10.19 기준)까지 이탈한 계절근로자는 필리핀인(35명), 몽골인(23명), 캄보디아인(22명)이 다수였으며 이들은 강원도와 충남 지역에 몰려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 농어가, 계절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는 있다. 우선 계절근로자에게 산재나 질병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기한 내 출국 시 계절근로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불법’체류자가 발생 시 ‘불법’체류율²⁾과 ‘불법’체류인원에 따라 다음 해 초청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2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어가에도 1년간 초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계절근로자의 이탈 동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송출국의 알선업체를 통한 모집보다 산업인력공단 해외지사(EPS센터)를 통한 모집을 통해 브로커의 개입을 막고 선발 과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고용기간과 사업장 이동을 보다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통으로 바라는 사항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3개월로 한정된 체류 기간을 늘려서 노동자는 안

2) 불법체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년도 불법체류자 발생인원 / 전년도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인원 × 100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된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용자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번기, 성어기의 필요한 일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근무처 추가제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권리 보호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법무부의 관리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주거 여건, 최저 임금 보장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여 농어가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고용계약상 계절근로자자의 임금 수준이 내국인과 동등하거나 적어도 최저임금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 또는 법인은 노동관계법령 및 산재보험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절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할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 농식품부, 해수부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 방안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농업 이주노동자를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데 비해, 현행 계절근로자제도는 그 시작부터 농가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권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계절근로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때 보완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기본권 보호가 중요하다. 이는 권리 보호가 이들이 미등록화를 방지하거나 줄임으로써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경쟁 등의 현실적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주거 및 음식 제공,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계절노동자가 차별 및 권리 침해로 당했을 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담당 공무원 또는 결혼이주민을 통한 직접적 중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르는 갈등의 증폭이라든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보완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조기계약해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양순미 외, 2018).

요컨대, 경제와 행정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계절근로자가 ‘노동자’와 ‘주민’으로서 인정받고 권리의 담지자로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와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계절근로자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IV. 반성적 성찰의 대상으로서의 캐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1. 캐나다의 SAWP,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

캐나다 농업 부문에서 단기 이주노동자 고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농업계절이주노동자 고용의 역사는 앞서 설명한 TMWP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캐나다의 TMWP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는 차별화된 캐나다만의 고유한 제도적 특성을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캐나다의 대표적인 농업 계절이주노동자 도입 시스템은 1966년에 도입된 이래 중단 없이 지속되어 온 계절농업근로자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gram, 이하 SAWP)이다.

SAWP은 시행 초기에 영연방 캐리비안 국가(현재 10개국) 출신 이주노동자를 채용했다. 그렇지만 이들만으로 노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기에 1974년부터는 멕시코를 대상국 목록에 공식 포함시켰다(Basok 2004, 54). SAWP는 ‘정부 대 정부 프로그램’으로서 9개 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매년 25,0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SAWP의 주요 특징들로는 단기취업비자 발급(최장 8개월), 할당제·상한제 미적용, ‘귀환 이후 재취업’을 조건으로 한 단기순환 시스템, 근로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사업주에만 고용되는 고용주 특정적 취업 허가, 캐나다 정착 방지를 위해 가족재결합과 영주권 취득 기회 불허, 보완성 원칙에 기반을 둔 노동시장테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Preibisch 2010, 412-413).

특히 SAWP는 국제적으로 TMWP 모범 사례로 간주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논거로 제시되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SAWP는 정부 간 양자 합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서 공적 책임성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일례로 캐리비안 국가들과의 양해각서를 보면 “본 프로그램 하에서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Preibisch

3) 보다 정확히 설명하면 1978년에서 2007년 사이에 SAWP를 통한 이주노동자 채용 규모는 연 5,000명에서 연 25,000명으로 증대했다(410).

2010, 424). SAWP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양국의 공적 채무가 명시된 것이다. 공적 채무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정부 간 프로그램에 틀에서 해마다 두 차례 SAWP 관련 협상(멕시코와의 협상과 캐리비안 국가들과의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유관 부처들, 송출국 정부 기관, 농작물 재배 회사들 간의 삼자 간 대화로 진행된다.

둘째, SAWP는 높은 귀환(repatriation)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칭송받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SAWP 근로자 가운데 98.5%가 근로계약 기한을 마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는 이탈률이 현저하게 낮음을 의미한다(Hennebry and Preibisch 2010, 25).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많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차별화된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처럼 SAWP는 정부 간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귀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간주되어 왔다.⁴⁾

그렇지만 SAWP에 붙는 긍정적 이미지와 객관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진정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캐나다 TMWP가 비교의 시각에서 칭송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 설계의 기저에 깔린 정책 의도와 실제 효과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 캐나다 TMWP의 비대칭적 효과: ‘시장·행정’ 대 ‘권리’

1) ‘시장·행정’의 측면: 비용 절감과 탈규제화 경향

SAWP는 고용주와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분명한 이점들을 갖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SAWP는 시장 수요에 충실한 프로그램이다(Hennebry and Preibisch 2010, 24). SAWP는 이주노동자 도입에 대한 할당과 상한에 공식 제한을 두지 않았다. 내국인 구인광고 기간은 14일로 비교적 짧게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긴급한 직종(Occupation Under Pressure)’으로 간주될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에서 면제될 수도 있었다. 또한 멕시코 노동사회부는 농업 근로 경험자를 선호하는 캐나다 농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국 내 선발 과정에서 농촌 출신 지원자들을 뚜렷하게 선호했다(Basok 2004, 54)

둘째, SAWP는 비용 대비 효율을 높임으로써 정부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졌다(Hennebry and Preibisch 2010, 24). SAWP는 상당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

4) 이 외에도 SAWP는 대안적인 국제개발협력의 방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구하고 정작 캐나다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이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SAWP는 TMWP로서 체류 일시성의 원칙에 기반을 둔 제도였기에 이들에 대한 노동재생산을 위한 기본 투자를 물론 언어나 문화 교육과 같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투자할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Basok 2004, 57).⁵⁾

다음으로 SAWP는 정부 간 양자 프로그램으로서 송출국 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의 상당 부분을 떠맡는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송출국은 근로자 모집과 선발,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의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송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책무를 거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송금경제와 자국민 실업을 고려해 순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한편 송출국 정부 뿐 아니라 고용주 단체도 SAWP 운용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Hennebry and Preibisch 2010, 24). 다시 말해 고용주 단체가 개별 고용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등 민간위탁이 이루어져 정부 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의 기저에는 정부의 직접적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환경이 깔려 있었다.

셋째, SAWP는 힘의 관계에서 고용주의 절대적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였다. 즉, 노동 통제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였다(Hennebry and Preibisch 2010, 25-26). 사업장 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와 이주노동자의 힘의 관계는 절대적 불균형 상태에 있었다. 특히 SAWP 하에서 ‘해고’는 곧 ‘강제 귀환’을 의미했다. 물론 실제 중도 귀환 비율은 매우 낮았지만 ‘추방의 위협’은 이주노동자의 작업장과 일상에서의 삶을 규율하고 순응적인 주체성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졌다(De Genova 2002).

또한 선발 과정에서 고용주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를 선호했는데 이는 가족을 직접적으로 돌볼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초과 근무, 주말 근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고용주는 근로 경력, 기술, 훈련 상태가 아니라 국적과 젠더를 고려해 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었다. 이는 근로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쟁은 중국에는 송출국들 간의 경쟁으로 전이된다.

5) 캐나다에서 계절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 일시성의 원칙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것이기도 하다. SAWP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단기’ 노동자로 간주되지만 수차례 양국을 오가면서 수년간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계속해서 단기 근로자로 간주하여 영주 자격을 획득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Hennebry and Preibisch 2010, 25-26).

한편 2002년에는 또 다른 TMWP인 저숙련시범프로젝트(Low Skill Pilot Project, 이하 LSPP)이 시행되면서 농업계절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탈규제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SAWP와는 기본적인 특징들을 공유한 제도였지만⁶⁾ SAWP의 골간이 되는 ‘정부 간 합의’ 모델이 반영되지 않았다(Preibisch 2010, 410). 이는 정부의 공적 책무를 그만큼 이완시켰고 고용주의 재량 범위를 늘이는 효과를 가졌다. 예컨대 LSPP 하에서 채용은 개별 고용주의 권한이 되었다. 물론 세 곳의 농장주협회에게 민간 위탁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채용 업무를 공적 책무로 간주했던 SAWP와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다(Preibisch 2010, 425).⁷⁾ 이에 더해 LSPP 하에서 송출국 정부는 캐나다로 관리자를 파견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도 않았다(Preibisch 2010, 427).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1990년대부터 가속도를 낸 캐나다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경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다음 캐나다 이민당국 간부의 발언은 그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정부 대 정부 간 방식은 행정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자원 투입을 요구합니다.”(Preibisch 2010, 423) 농업계절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당시의 탈규제화 경향은 세계농업정치경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세계 과일, 채소 시장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생산업체들은 보다 큰 위험을 짊어져야만 했고, 그런 상황에서 TMWP 근로자 고용은 글로벌 푸드 경제에서 캐나다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Preibisch 2010, 430-431).

2) ‘권리’의 측면: 제도적 규율, 행정 공백, 사회적 배제

정부가 자신의 기능적 책무를 생산성과 치안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국가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기대가 이러한 방향의 통치성과 조응하는 상황이라면,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미등록 비율이 매우 낮은 캐나다의 TMWP는 모범 사례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영토적 관할권 내에서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체류 기간 동안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편입을 조력하는 것이 국가의 또 다른 기능적 책무라고 본다면 캐나다의 TMWP에 대한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권리의 시각에서 볼 때 캐나다의 대표적인 계절농업외국인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인 SAWP와 LSPP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캐나다 TMWP가 과연 국제적 모범 사례로

6) 다만, 단기취업비자 발급의 경우 SAWP이 최장 8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LSPP의 경우 최장 24개월까지 가능했다.

7) 그 결과 사설 모집인 규모가 성장하게 되면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평가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칭송받는 높은 귀환 비율은 권리의 관점에서 정반대의 평가에 직면할 수 있다. 캐나다의 TMWP는 재취업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는 계약된 근로 기간을 채운 뒤에 반드시 모국으로 귀환해서 모국 정부(멕시코의 경우 노동사회부)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봉인된 평가서를 제출하는데 평가 내용은 재취업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Basok 2004, 58).

또한 고용주의 해고 사유는 “불이행, 근로 거부 내지는 여타의 충분한 이유”로 되어 있어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용주의 의한 자의적인 해고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Preibisch 2010, 414). 이에 더해 해고를 당할 시 소를 제기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에 TMWP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곧 추방을 의미하며, 이들은 지배(domination)의 관계에 놓인 상태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근로계약 기간을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규율 권력’의 작동 하에서 계절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기업의 생산성과 손쉽게 교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채용 정책이다. TMWP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가난한 농촌 출신자를 채용하려는 패턴이 나타난다. 외형상 국제개발협력의 제스처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은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착취를 인내할만한 노동자를 선별하려는 의증을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온타리오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성수기에 주 평균 74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Preibisch 2010, 414). 이렇듯 캐나다 TMWP는 저렴한 인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미 약자인 사람들을 고용하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Preibisch 2010, 416).

다음으로 계절외국인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배속된 사업장에서 근로할 뿐 아니라 대부분 고용주의 소유지에서 거주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 결과 작업장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근로시간 외에도 업체의 일상적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 이를테면 통금 설정, 이성 방문객의 차단, 농장 밖에서의 상황 보고 등 인신이 구속되고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Preibisch 2010, 414).

이처럼 제도적 규율과 노동 및 일상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문제지만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사실도 못지않게 큰 문제이다(Preibisch 2010, 415-416). SAWP에는 독립적인 권리구제 시스템

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고용주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는 것은 TMWP의 거버넌스 구조이다. ‘이민 정책’의 범주로 보면 TMWP는 분명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업무 영역이다. 그렇지만 근로기준이나 건강과 같은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대체로 주정부 법률에 의해 관리된다. 그 결과 연방정부 수준에서 ‘행정 공백(jurisdictional void)’이 발생한다(Preibisch 2010, 416). 한 활동가는 이를 ‘위선’으로 보면서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저는 캐나다 정부가 비준을 마친 국제협약을 인지하고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국제협약을 법적 투쟁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협약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캐나다 정부의 위선(hypocrisy)에 대해서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정작 자신들이 집행할 역량이 없는 협약에 서명합니다. 이를테면 근로기준은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의 관할권입니다. 더욱이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합의한 그 어떤 것에 서명할 태세에 있지도 않습니다(Gabriel and MacDonald 2011, 54-55).

‘제도의 규율 효과’ 및 ‘행정 공백’과 더불어 TMWP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배제’이다. 캐나다는 비록 UN의 이주노동자 관련 협약 비준국은 아니더라도 국제 규범의 정신을 어느 정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의료서비스 접근, 근로기준법 조항 등 사회적 권리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에게 권리를 확대해 왔다. 그렇지만 권한(entitlement)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곧장 권한을 부여받은 사회적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사회에서 온전한 사회적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자신들이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의 노조로부터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전에 이주한 같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로부터 외면받기도 한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서 계절외국인근로자의 권리 주창 활동이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커뮤니티 성원권(membership in a community)’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법적 권리(legal rights)’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Basok 2004).

V. 나가는 말

이 글은 한국의 단기 계절근로자제도의 운용 시스템과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비판적 성찰을 위한 증거 사례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계절근로자제도인 SAWP를 분석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SAWP는 일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핵심 목표와 평가의 관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SAWP는 시장과 행정의 시각에서 볼 때 시장 수요에 충실한 프로그램으로서 송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포함한 책임 분담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쟁적인 세계음식시장에서 탈규제화 경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지속, 확산되어 왔다. 그렇지만 권리의 시각에서 볼 때 평가는 사뭇 달라진다. SAWP는 계절 이주노동자의 기본권과 기업 생산성을 어느 정도 교환 관계로 보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다문화주의가 헌법적 질서의 메타 규범으로 채택되었지만 지역사회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들에 법제상 보장된 권리들에 대한 적극적 향유를 저해했다. 특히 계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율 장치들을 내장하고 있으면서 작업장과 일상에서 이들을 통제한다는 우려가 시민사회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었다.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는 높은 귀환 비율 역시 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제도적 규율의 산물로 재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단지 시행 초기에 있는 한국 계절근로자제도가 따라야 할 모범 사례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계절근로자제도와 관련해 제기될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제도의 안착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선례이다. 무엇보다도 계절근로자제도에 대해서 당사자 관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해석, 평가, 전망이 서로 경합하면서 잠정적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실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단체나 지원단체 등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제대로 된 공적 토의가 부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제도 설계의 특성상 고용노동부가 주무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지자체로 공적 책무가 이양(?)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행정 공백, 그리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적정 주거시설 의무화, 합동 현장점검 실시, 권리구제를 위한 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서 제도 안착의 의지를 보였으나 양자 간의 소통이 미약한 상황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기에 확정적 판단은 이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한국의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부족 현상을 메우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참여 지자체 수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증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공적 책무를 사실상 로컬 단위로 이전시킴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중앙 정부의 (잠재적)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경위야 어떻든 미등록 비율이 일정하게 낮은 수준에서 통제된다면 제도 안착을 바라는 주무 부처의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강력한 정당화 논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갑작스럽게(?) 공적 책무를 떠안게 된 지자체들의 행정 역량과 전문성이 미비한 가운데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만일 이탈 비율이 기대했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관여 동기가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계절근로자제도는 부처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한국 계절근로자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노동’을 수입하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TMWP의 역사적 패턴이 또 다시 재현된다면 계절근로자제도는 마치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시절에 그러했듯이 제도개선운동의 구심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부처 간 동학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이주노동정치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물론 캐나다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시민사회 내 관련 주체들의 자각, 연대, 캠페인, 운동 등 일련의 대응 시도들이 전개되더라도 그것이 충분하고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무척이나 도전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를 통한 문제 제기와 계절근로자제도 행정에 대한 민주적 감시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도 긴요하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는 행정입법의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ESSION 4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 배경

- 농가 수 감소와 농업노동력 구조 변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으로 외국인력 도입 및 증가함.
-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¹⁾하고, 농업노동력에서 가족노동력과 고용노동력 모두 감소함²⁾
- 그러나 고용노동력 고용형태를 종사상 지위별로 분석하면, 임시 및 상용근로자 고용은 증가하였음³⁾. 이는 시설원예 및 축산 부문의 상용근로자 수요 증가와 농가의 규모화와 연관됨.
- 농업에서 상용 및 임시근로자 수요 증가 및 일손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 및 도입규모는 점차 증가하였고, 향후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⁴⁾.

* 엄진영·유병준·김유진(2017), 엄진영·박준기·유찬희·김선웅(2018)를 재구성한 내용임

- 1)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 1,501천 호에서 2015년 1,089천 호로 27.4%감소하였다.
- 2) 농업노동력 공급원은 가족노동력, 고용노동력, 농촌지역 공동체 내의 공동노동 및 노동력 교환으로 구분된다(김정섭 외,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업부문 가족노동력(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은 2007년 6월 1,628천 명에서 2013년 6월 1,473천 명, 2016년 6월 1,191천 명(연간 평균 2.7% 감소)으로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력(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은 동일시기에 196천 명에서 160천 명, 그리고 144천 명(연간 평균 3.6%감소)으로 감소하였다.
-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시근로자는 2007년 6월 16천 명에서 2013년 8월 23천 명, 2016년 6월 25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상용근로자는 같은 기간에 10천 명에서 16천 명, 22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고.
- 4) 고용허가제하에서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3년 총 33명에서 2016년 총 2만 7,984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수치는 쿼터로 결정된 인원수만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5년 10월 19명 입국하여 2017년 1,547명으로 급증하였다.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요 및 고용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한계⁵⁾가 대두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대책이 부재함.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이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의 한계와 미비점을 개선하는 정책과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II. 관련 정책 개요

- 현재 우리나라에는 운용되고 있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로 구분됨. 계절근로자제는 농업부문에 한정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는 농업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제와 고용허가제 모두 농업부문의 인력 확충 정책으로 기능한다고 해도,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과 내국인의 고용노동시장등과 연결되므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관계됨.
-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인력부족 산업에 고용한 것은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첫 시작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로 논의를 거쳐 2003년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후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완전히 통합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음(박민선 외, 2012; 김정섭 외, 2014: 17).
-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임. 고용허가제의 취업기간은 3년이지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으로 구분됨. H-2는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사증인 H-2를 발급받거나, 국내에 친척방문(F-1-4)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H-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 사업체에 취업함. E-9은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어시험 등을 비롯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갖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증임. 농업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E-9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임.
- 고용허가제는 제조업·서비스업·농업을 모두 포함한 제도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로 출발함. 따라서 농업부문에서 허용품목도 1

5) 「3. 한계 및 문제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들로, 대부분 연중고용이 가능한 시설원예, 축산, 작물재배업(채소, 과수 등), 시설버섯, 농업관련서비스업임. 그러나 일부 시설원예와 작물재배업은 계절성을 강하게 띄고 있고, 계절별 인력수요 편차가 매우 큼. 특히, 농한기인 겨울철에 인력 수요가 급감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땅한 일거리를 제공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9년 7월부터 ‘근무처 추가제도’를 농업부문 고용허가제 내의 하위 정책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제는 2015년 10월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됨. 계절근로자제는 기존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 부족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시작함. 즉, 농작물의 인력 투입은 계절에 따라 규모 편차가 매우 큼. 인력부족은 작물주기에 따른 농번기에 주로 발생하고, 농한기에는 농번기와 비교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 농가에서는 1년 동안의 고용이 필요 없게 됨.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제가 시행됨.
- 계절근로자제의 형태는 타국가 지자체와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간 MOU를 맺거나,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초청 형태, MOU와 결혼이민여성 가족초청 형태의 혼합으로 구분됨. 계절근로자제 외국인 근로자는 C-4비자로 입국하고 90일 미만 동안 단기체류를 함.

Ⅲ.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황

1.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Quota)

-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은 인력조정위원회, 배정위원회에서 각각 정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공급은 시장의 수급이 아닌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임. 각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아래 표들과 같음.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큰 증가를 하였음.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사업 시행초기에 비해 도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고용허가제

<표 1>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쿼터

단위: 명, %

업종 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3,167	31,658	28,973	34,788	76,505	62,693	38,481	49,130	53,638	58,511	51,556	51,019	57,950	56,000	58,000	56,000
농축 산업	43	419	699	2,333	4,515	2,332	3,079	4,557	4,931	5,641	6,047	5,949	7,080	6,600	6,600	6,400
비 중	1.4	1.3	2.4	6.7	5.9	3.7	8.0	9.3	9.2	9.6	11.7	11.7	12.2	11.8	11.4	11.4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고용허가제고용동향」

<표 2>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E-9) 체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합계 (A)	33	308	892	6,504	6,778	7,896	9,849	13,487	16,484	23,687	25,428	27,984
남 성	32	276	736	-	4,982	5,753	7,107	9,550	11,507	16,335	17,261	18,676
여성 (B)	1	32	156	-	1,796	2,143	2,742	3,937	4,977	7,352	8,167	9,308
여성 비율 (B/A, %)	0.3	1.04	17.5	-	26.5	27.1	27.8	29.2	30.2	31.0	32.1	33.3

자료: 법무부. 연도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출처: 엄진영 외. 2017

□ 계절근로자제

<표 3> 계절근로자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C-4) 도입 규모

단위: 개(곳), 명

	2015	2016	2017	2018. 9월 기준
신청 지자체 수	1	6	21	35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9	200	1,086	2,173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출처: 이혜경 외. 2018

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요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현재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료로 각 제도별 농가의 신청건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파악함. 다만 유념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 실수요는 최소 신청건수와 같거나 이보다 많을 수 있음.

□ 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가가 수요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16년 기준 최소 13,823명으로 추정됨. 참고로 한 농가당 신청할 수 있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품목별 규모별로 최소 1인부터 최대 4인까지 허용되므로, 농가가 신청한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표 4> 연도별 고용허가 신청건수 비중

단위: %

업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제조업	64.41	60.49	52.83	87.03	89.56	90.58	86.82	86.59	83.4	82.79	78.76	78.47	76.54
건설업	0.05	0.02	0.01	5.74	3.49	1.53	1.26	1.13	1.2	1.24	1.38	1.27	1.01
농축산업	1.55	1.06	2.03	3.08	4.89	5.35	7.82	8.65	10.97	10.77	12.83	11.87	14.05
서비스업	33.99	38.42	45.09	2.6	0.12	0.19	1.59	0.22	0.19	0.17	0.23	0.23	0.21
어업	0	0	0.04	1.55	1.95	2.35	2.52	3.41	4.24	5.03	6.79	8.16	8.1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원자료

출처: 엄진영 외, 2017

주: 신규, 사업장 변경신청, 성실재입국 포함 / 재발급 구인신청, 특례외국인신청 제외

<표 5> 농업부문 업종별 연도별 신청건수

단위: 건수

업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작물재배업	63	246	471	1,690	2,925	3,207	4,676	5,325	7,218	6,673	7,168	6,846	9,941
축산업	24	91	598	1,566	1,819	1,570	1,810	1,783	2,584	2,325	2,459	2,762	3,765
농업관련 서비스업	1	3	16	39	28	33	55	66	85	74	79	105	11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원자료

출처: 임진영 외, 2017

주: 신규, 사업장 변경신청, 성실재입국 포함 / 재발급 구인신청, 특례외국인신청 제외

□ 계절근로자제

<표6> 계절근로자제 지자체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C-4) 신청 인원 수

단위: 명

	2017년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강원도	232	1,700	378
경기도	3	36	14
세종시	0	0	8
충청북도	151	605	103
충청남도	0	48	36
경상북도	83	166	276
경상남도	19	0	0
전라남도	11	49	7
제주도	130	58	0
총합	629	2,662	822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 종합해 보면,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노동공급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인원수는 2018년 기준으로 총 3,484명이었음.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서 수요가 많았음.
- 종합해 보면,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노동공급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VI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근무 환경

1. 임금과 고용기간

- 엄진영 외(2018)의 연구에서 실시한 농가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축산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과 월 평균 임금은 <표 7>과 같음.
- 축산 농가 중 외국인 노동력을 12개월 이하로 고용한 비중은 76.7%였음. 양돈 농가는 평균적으로 19개월을 고용했고, 다른 축종의 고용 기간은 1년 미만이었음. 다만, 응답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1년 이상 장기 고용 비중을 과소 추정했을 수 있음.
 - 한우/젖소와 양계 농가 중 절반 이상이 월 200만 원 미만을 지급함. 반면 양돈 농가 중 절반 이상이 200만 원대 월급을 지급함. 월 평균 급여도 양돈 농가가 유의하게 많음. 작업 난이도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음.

<표 7>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

단위: %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이상	평균
전체	13.3	3.3	6.7	20.0	33.3	23.3	13.2
한우/젖소	44.4	0.0	0.0	33.3	22.2	0	4.2
양돈	0.0	5.9	5.9	11.8	35.3	41.2	19.1
양계	0.0	0.0	25.0	25.0	50.0	0	8.0

출처: 엄진영 외. 2018

주: 농가대상 설문조사로, 이 자료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표 8> 설문 응답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급여

단위: %

구분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53.3	36.7	6.7	3.3	199.8
한우/젖소	77.8	11.1	11.1	0.0	174.4
양돈	35.3	52.9	5.9	5.9	221.5
양계	75.0	25.0	0.0	0.0	164.5

출처: 엄진영 외. 2018

주: 농가대상 설문조사로, 이 자료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 같은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물재배업 농가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월 평균 고용 일수와 임금 수준은 <표 9>와 같음.
- 일용 근로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월 8~9일 정도 일함. 일당은 가을철에 8.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름철에 7.6만 원으로 낮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임금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음. 고용 규모는 가을철에 7.72명으로 가장 많이 고용하였고, 겨울철에 3.84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고용함. 임금은 일당으로 평균적으로 약 8만 원을 지급하였음. 가을철 일당이 8.3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참고로 현재의 농업부문 외국인력 정책 내에서는 외국인이 일용 근로자로 고용될 수 없음. 그러나 농촌의 만연한 일손부족 문제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실태조사는 수확기에 일용인력부족 문제에 농가가 더욱 직면해 있을 가능성을 역으로 제시함.
- 농가의 임시근로자 평균 고용 인원은 봄철에 6.25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을철 4.62명으로 조사됨. 봄철의 파종·정식기 때와 수확기 때 많이 고용되고 있음. 고용일수는 계절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대략 3개월 기간 동안 평균 51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임금은 월평균 152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조사됨. 겨울철과 여름철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봄과 가을철의 월평균 임금은 비슷함.
- 상용 근로자 고용 규모는 평균적으로 3~4명으로 조사됨. 가장 많이 고용되고 있는 시기는 가을철로 평균 4.1명이 고용됨. 고용명수가 가장 적을 때는 겨울철로 2.98명이 고용됨.

2. 주거시설 및 식사

- 농업 관련 사업장은 지역적으로 산재하고 농촌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숙박을 개인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농가가 숙박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내의 지침 상에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농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 명시적 조항이 없어 과거에 일부 농가의 과도한 숙박비 공제와 임금에서의 차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간, 숙박비 공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숙박비 공제 합의서에는 숙박비 공제율을 내부적으로 월 정액임금의 8~20%로 권고하고 있음. 계절근로자는 내부적 공제율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고 농가의 자율로 맡겨두고 있지만, 다수의 농가는 현재 숙박과 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표 9> 설문 응답 작물재배업 농가의 외국인 평균 고용 일수 및 급여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1개월 미만	고용 인원(명)	6.39	5.47	7.72	3.84
	고용 일수(일)	8.1	7.4	7.9	8.7
	일당(만원/일)	7.9	7.6	8.3	7.9
기간 1-3개월 미만	고용 인원(명)	6.25	4.08	4.62	2.88
	고용 일수(일)	56.9	51.0	51.2	50.0
	월급(만원/월)	151.6	173.7	153.7	179.8
3개월 이상	고용 인원(명)	3.32	3.68	4.10	2.98
	고용 일수(일)	90.0	90.0	90.0	90.0
	월급(만원/월)	156.8	158.9	156.0	155.8

출처: 엄진영 외. 2018

주: 농가대상 설문조사로, 이 자료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많음.

- 계절근로자제는 2017년 본 사업이 되면서 농가 선정 단계에서 주거 필수 구비시설 및 물품⁶⁾을 정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는 불허함. 고용 허가제도 2018년부터는 숙소시설 기준에 따라 농가 선정 시 점수에서 가점, 감점을 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인력 배정을 중단하는 것으로 변경됨. 또한 불법적인 숙식비 공제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전 공제 동의서 없는 공제는 사업장을 즉각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전에 비해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는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저녁까지 제공하거나, 아침/저녁에 필요한 식재료 제공하기도 함. 아침/저녁까지 제공하는 농가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기도 해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의 없이 임금에서 차감하는 사례가 과거에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고자 고용허가제에서는 식비도 숙박비처

6) 법무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필수 구비시설 및 물품은 냉난방 설비, 안쪽 잠금장치 마련된 화장실,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취사도구 및 침구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이다.

럼 공제율을 권고하고 있음. 고용허가제에서 식비를 공제할 경우, 숙박비 공제에 더하여 월 정액임금의 13~20%를 권고함.

3. 보험

-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피고용인에 대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4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예외가 있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법인이 아닌 농업사업자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할 때 예외임. 국민연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름.
- 고용허가제에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은 가입자 주체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음. 출국 만기보험, 보증보험,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귀국비용 보험,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함.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가입함.
- 보험료는 보험에 따라 상이함. 월 급여 또는 연 임금 총액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거나, 근로자 1인당 또는 나라에 따라 그 보험료를 정하고 있음(표 10 참고).
- 현재의 체계에서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예외로 두고 있어,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농업부문에서 상시근로자가 1~4인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7,283명이었음. 이들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음.
- 계절근로자제는 2017년부터 산재보험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작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병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 이용이 어려움.

<표 10>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보험

	가입자	가입목적	보험료	의무가입여부 (농업부문에외인정여부)
출국 만기보험	사용 자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확보	월 급여의 8.3%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의무가입
보증보험	사용 자	임금채불에 대비	1인당 연 1만 5천 원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의무가입
귀국비용 보험	외국 인 노 동자	귀국경비 확보	국별 40~60만 원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 의무가입
상해보험	외국 인 노 동자	업무상 재해 외 의 상해 또는 질 병대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의무가입
건강 보험	사용 자 노동 자	질병 및 상해 대 비	월 급여의 6.0% (장기요양보험료 포 함)	의무가입여부
4 대 보 험	산재 보험	사용 자	업무상 재해대비	연임금총액X2.6%
	고용 보험	사용 자 노동 자	실업대비	노동자: 임금액 x0.45% 사용자: 임금액x 0.7~1.36%
	국민 연금	사용 자 노동 자	노후생활안정	표준월소득의 4.5%
				국가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 만기 귀국 시 납입금 환불

자료: 박민선(2012: 342).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V.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문제점 검토

1. 제도 설계상의 한계

1)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산출 방식

○ 2015년, 2016년 두 차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농업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

- 첫째, 가장 문제는 외국인력 수요 산출시 활용되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표임.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이므로, 농축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일부의견만 반영된 결과임.

- 둘째, 2016년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중장기 외국인력 부족인원 전망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음. 향후 인력수급과 출산율, 그리고 지속적인 농업부문 인력감소 추세를 이용하여 농업부문 전체 인력 고용이 감소함을 전제하고 도출되었음. 하지만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면, 농업부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중, 상용근로자 고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는 농업의 규모화와 연관되며, 동시에 축산과 시설원예에서 연중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농업 부문에서 전체 인력규모는 줄더라도 고용노동력의 수요는 유지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함.

○ 더불어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우는 국내인력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고, 외국인력 유입이 필요한 부문으로, 국내인력과 외국인력은 보완관계로 추정된다는 견해가 우세함.

- 2017년 9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KREI 현장통신원, KREI 표본관측농가 110농가를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고용력 확보(58.82%),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성(29.41%), 내국 인대비 인건비 절감효과(7.84%), 작업능력 우수(3.92) 순서였음.⁷⁾

- 일반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관계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절감효과가 우세할 때 발생함.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일손부족으로 인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음.

2) 농가선정 점수제 평가지표

- 점수제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성폭행 사업장의 경우 5점을 감점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임금체불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업장은 1건당 0.2점(감점 상한 2점)에서 0.5점 감점(감점 상한 3점) 사항임. 반면 기본항목의 각 세부항목은 최저 14점부터 30점까지 주도록 되어 있음.
- 성폭행 등을 비롯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농가(농업경영체)는 다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7) 2017년 9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1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KREI 현장통신원, KREI 표본관측농가 대상으로 전문설문업체(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화설문조사한 결과임.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관리·감독의 한계·미비점

- 고용허가제를 통해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농가경영주 간 노동쟁의 및 갈등 또는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중재하거나 교정하는 역할은 여러 기관⁸⁾이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음.
- 현재 농업부문 사업장별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1명에서 2명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작업장별 고용규모가 영세함.⁹⁾ 또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농업은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인이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고용허가제 도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서비스 이용 정도도 미흡함.
- 그 결과, 농업현장에서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농가경영주는 농협이나 고용센터를 이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련 인권단체나 자국민으로 구성된 사적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¹⁰⁾

4)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관계 정립(농림부 인력정책 청사진 필요)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고용허가제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계절근로자제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에서 관할함. 현재까지 고용허가제는 농업부문에서 상용근로자 수급 문제에, 계절근로자제는 임시근로자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는 농업노동력 인력운용의 큰 틀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자국의 인력으로 필요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농업노동력 관련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이는 농업 생산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임. 특히 고용인력 투입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여부는 해당 품목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인력정책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보다 통합적으로 중장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제도와 운영을 해 나가야 함.

8)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채류지원사업(위탁), 산업인력공단이 관리, 감독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8개소 거점센터, 29개 소지역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가 이에 해당한다.

9) 농협관계자 인터뷰. 2017년 5월.

10) 농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 농협관계자, 행정담당자와의 면접조사 결과

2. 제도 적응상의 한계

1) 빈약한 교육 제공: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가. 농가 교육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또는 농업경영체 고용자) 교육은 현장에서 외국인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용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인계 받는 당일 교육장에서 1시간 교육을 받음. 이후 신청자에 한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사용자 교육 내용은 고용허가제 일반과 노동관계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유의사항 등으로 1시간의 교육으로 복잡·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움.

나. 외국인 근로자 교육: 언어, 의사소통, 영농작업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에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음.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 외국인력고용지원팀에서 담당함.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크게 언어교육과 근로조건 및 안전 안내 교육으로 나뉨. 그러나 이 교육시간마저도 총 16시간에 지나지 않음.
- 1월에 시행한 KRE리포터 현장조사에서 농가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충분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숙련도 또는 작업숙지능력이었음. 현행 E-9으로 농업부문에 입국하는 근로자는 자국에서의 영농작업 수행 경험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 또한 입국 후 영농작업 교육을 따로 실시하진 않음. 따라서 농가에 배정된 이후 농가가 교육을 담당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 :근로기준법 제 63조와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임.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노동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엠네스티, 2014). 박신규 외(2014)에 따르면,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 설문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10시간(55.7%), 10시간-12시간(24.1%)이 대다수를 차지함.
- 외국인 근로자의 초과 노동시간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기존 연구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일한만큼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이는 근로기준법 63조에서 기인함.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 가산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 농업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내국인도 근로기준법 63조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높은 강도의 초과근무를 근로자와 농가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뤄지거나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임금)를 받지 못하는 경우임.
- 근로기준법 63조의 폐지 찬반과 별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시간과 조건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필요하고, 갈등발생 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농축산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촌지역에서의 연간 필요 노동시간과 투입되는 노동력 등에 대한 기초적 자료가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합의된 농업부문 표준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에 관련된 최소한의 사항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유럽연합의 근로시간에 관한 입법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3) 열악한 근로 환경: 숙박비, 주거환경, 건강·안전의 문제

가. 숙박비

-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63조와 연결하여, 농가가 시간외 근로 가산금을 숙박비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현행 법률에서는 불법임).
- 농가의 과도한 숙박비 공제 문제로 인해 최근 숙박비 공제률을 내부적으로 정액임금의 13%~20%로 정해 권고하고 있음.
- 과도한 숙박비 공제률의 상한을 정해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해나간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현재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가 작성하고 있는 공제동의서를 보면, 공제항목(숙박비, 식비)과 각 항목별 공제률, 공제내역 교부에 대한 합의사항만 있음.
 - 숙소에 대한 세부정보 - 1인당 면적 기준 충족여부, 숙박 형태, 필수 위생 및 안전 시설 구비 여부 등 -와 현재의 숙소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숙박과 공제율에 동의했을 때 공제하는 것이 필요함. 즉,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건강과 안전의 문제

□ 건강 문제

- 현재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 현실에서는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농업부문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던 92명 중 과반수가 치료비를 직접 마련했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가입하지 않았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아플 때, 가입해 주거나, 아예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4%(전체 응답자 161명,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였고, 그 이유는 한국어 의사소통 불가, 비용 문제, 시간이 없음, 고용주가 보내주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음. 건강은 생명과 연결되는 인권의 최소한의 기본적 가치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국가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안전 문제

- 주거환경, 근무지역과 관계되어 나타나는 심각한 안전의 문제는 특히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임. 농업의 경우, 작업장과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 자체도 지역에 산재해 있어 주변지역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일부 열악한 주거시설의 경우 잠금장치가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야기함.
- 현재,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서에서 안내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처방법은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에게 조치 요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행정적 절차만을 명시한 것으로 실효성은 매우 낮음.
- 현재 관련 범죄 발생시 고용주와 관련된 제재 조항은 성희롱 사업장은 2점 감점, 성폭력은 5점 감점,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을 어긴 사업장은 3점 감점 패널티만 존재함.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교육에서는 고용허가제 일반과 노동관계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유의사항만 1시간에 걸쳐 전달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교육 자료를 보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이 나와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낮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행위 중 특히 고용인 또는 관리인이 가해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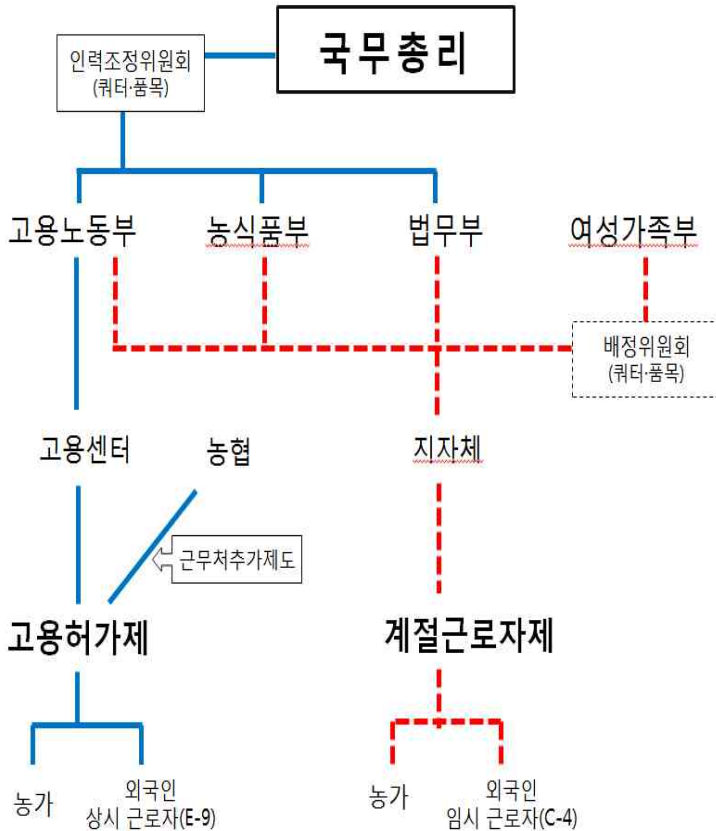
사업장과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가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외해야 함.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음. 둘째, 성폭력 피해 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 또는 원하면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머문 상태에서 소송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셋째,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정한 사법접근법이 보장되어야 함. 최소조건이라 할 수 있는 통역인을 제공하고,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공정한 상황에서 판단되어야 함. 넷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서에 나온 지방노동관서, 여성긴급전화에 상담원 역량을 강화해야 함.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상담원의 지원체계와 역할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하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VI. 정책 방향과 과제

1. 인력 계획·운영 정책과 부처 간 조율 필요

-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와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각각 정부의 인력조정위원회와 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됨. 이들 위원회 운영의 주무 부처는 각각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임. 농업부문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의 정책 영역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위원회에 관련 부서들도 참여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와 관계된 부처 및 기관, 제도 사이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음.
- 앞서 논의했듯이 농업부문 외국 노동자 도입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전체 인력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대응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인력조정위원회와 배정협의회는 명목상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보다 실효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조직이어야 함. 위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내용은 현재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선정 방식 등에 대한 것으로 부처별 다양한 의견들이 다뤄지고 합의된 결정이 필요함.

<그림 1>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결정 관련 부처



출처: 엄진영 외. 2017

○ 특히 외국인력 도입규모 논의에 있어 장기 인력정책 방향과 더불어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와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농업부문의 경우, 현재 고용허가제의 쿼터제는 타부문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농업의 특수성¹¹⁾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인력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임.

11)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사항, 타 부문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 작물 생장주기에 따른 일시적·대규모 고용, 낮은 고용안정성 등

2. 통계·현황파악 조사 체계 필요

- 장기 인력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에는 증거기반 접근(evidence based approach)이 필요함. 이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통계 구축과 현황 파악이 중요함. 특히 농업부문 필요인력 규모와 내국인으로 채워지지 않는 노동력 규모, 그리고 농업부문 내·외국인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바탕으로 농업 경영 인력 정책과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현재 사용 가능한 국내 농업노동력 공식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농어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농어업총조사는 거시적 층위이고 농가경제조사는 미시적 층위의 조사임. 농업부문 외국인력 현황 파악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외국인고용조사, 농어업총조사임.
- 각 통계의 장단점과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 <표 11>과 같음.
- 농업노동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위의 <표 11>의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또는 통계 발간 년도에 맞춰 농업노동력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와 분석결과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관련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향후 필요한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추가/보완/수정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통계주관 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자료의 체계적 축적 노력을 해야 함.
 - 셋째, 지역별·품목별로 농업 노동력 수급과 근로 작업장 상황, 임금 수준 등이 다른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 노동(일자리) 관련 맞춤형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정기적으로 현황조사와 분석을 실시해야 함.

<표11> 농업노동력 관련 국내 가용 통계 특징과 개선점

통계명	수집주체	공개여부	장점	한계	개선점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산업대분류까지만 공개	-월별, 연간 국내 농업노동력 변화 파악 가능	-농업, 임업, 어업 분리 불가능 -외국인 근로자 불포함	-산업중분류 자료 취득 가능 경로 확보
농어업총조사	통계청	공개	-농업면적, 작목 등 농업 관련 정보와 농업고용(상시, 임시) 간의 개략적 관계 파악 가능 -외국인 상시, 임시 고용 파악 가능	-월별, 연간 농업노동력 파악 불가능 -2010년, 2015년 통계만 있음	-장기적으로 농업노동력 관련 설문조사 항목 확충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공개	-영농형태별, 영농작업별, 면적별 등 농가단위 노동투입시간 파악 가능	임시, 상시근로자별 노동시간 파악 불가능 -외국인 근로자 불포함 -영농형태별 정확한 노동시간 파악 불가능	-조사항목 보완 및 수정 필요 -데이터연결 가능 검토(향후 패널데이터)
외국인 고용조사	통계청	공개	-개략적 농업부문 E-9근로자의 고용실태 파악 가능	-포함된 농업부문 E-9외국인 근로자 수 상대적으로 적음 -조사항목이 농업부문 실태 보여주기 힘들(예: 개방형 월급/노동시간 조사항목, 숙박형태 구체적이지 않음)	-일부 설문문항 답변 선택 조정
고용허가제 자료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협	비공개	-농업부문 E-9과 H-2입국 외국인 근로자 수요(신청건수), 쿼터 공급 인원 파악 가능 -외국인 근로자 지역별 배분 현황 파악 가능(농협내부자료)	-불법체류자 파악 불가능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자료 제한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특성 조사 추가(농협내부자료) -자료 구축 체계화
계절근로자제 자료	법무부	비공개	-계절근로자제 시행 지자체별 신청건수, 배정품목, 배정인원 등		

출처: 엄진영 외, 2017

3.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중재 기능 설정 필요: 관리·감독, 중재 기능 강화 방안과 현행 제도 내에서의 한계

- 고용허가제가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관리·감독이 전제되어야 함.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매년 쿼터를 정해 도입규모를 통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만 허용함. 즉, 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인력 공급 시스템임.
- 따라서 고용주와 고용인 간 노동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시, 시장에 맡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판단과 결정이 매우 필요함.
- 현재의 제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 관련 관리·감독의 1차적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관리·감독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 있음. 고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이 관리·감독 계획은 고용센터를 통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고용센터의 경우, 한 센터가 담당해야 하는 농업부문 평균 외국인 근로자 수는 최대 318명에 이름. 고용센터의 업무범위는 농업부문 외에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까지 포괄하며, 고용허가제 관련 행정적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센터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음.
- 게다가 고용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니며, 발생 시 근로감독관에게 안전을 올리게 됨. 따라서 고용허가제 하에서 임금체불, 근로시간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이외의 노동조건과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중재 및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현행 제도에서 존재하지 않음.
- 외국인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문제 및 외국인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나 일탈행위 등으로 인한 고용주 피해 발생 문제 등은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이 원활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아서 발생함. 이는 현재 제도 내에서 노사 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부재함으로써 발생함.
- 그러나 현실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규모 상승률 추세를 고려하면¹²⁾ 관

1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 도입되었던 2003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순 증가율은 847%이다.

리 기관의 인력충원과 조직 확대개편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 외국인 근로자 관리 범위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지자체(계절근로자제의 경우)의 관리 능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향후 도입 가능한 대안 검토를 고려할 시점임.

4. 향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대안 고려

1) 해외 외국인 근로자 제도 흐름과 추세

- 해외 선진국에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형태는 우리나라처럼 고용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유연한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많음. 특히 농업부문은 유연한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조달하고 있음. 농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편중 현상, 농작물의 생장주기 상, 농번기의 대규모 인력 필요 현상, 농업부문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내국인 인력 부족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세부 운영 사항과 제도의 변화 과정은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해외 선진국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흐름과 변화의 공통 사항은 다음과 같이 발견됨.
 - 첫째,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고용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각 기관 또는 부처들을 연결하는 매개 기관(통합된 정부부처¹³⁾, 공인 인력중개회사¹⁴⁾, 감리단체(농협)¹⁵⁾을 두었다는 점임.
 - 둘째, 매개 기관을 중심으로 각 기관 또는 부처들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가 갖춰져 있고, 매개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 후 사후관리를 시행함. 대부분의 국가는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와 부족한 인력 공급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간 이동 제약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이동이 어려운 국가들이 많음. 이러한 이동성의 제약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이 국가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셋째, 해외 선진국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 제도를 점차 유기적·유연적 형태로

13) 독일의 연방이민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4) 영국, 호주, 미국, 네덜란드 등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5)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

개선해 가고 있다는 점임. 독일은 고용허가제의 원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어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종종 참조되는 나라임. 그런데 독일도 고용허가제를 수정하여,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체류 허가를 한시노동, 계절노동 형태로 인정해 가고 있음(김환학 외, 2012). 최근 국제단체의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 UN 인종차별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여겨,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노예노동 강제하는 고용허가제 11년 규탄 높아”, 2015년 8월 17일 기사, 레드앙)¹⁶⁾.

2) 향후 국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안)

○ 그렇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인가?

○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에서는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노동조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부처가 필요함.

○두 번째로 높은 농업부문 외국인 임시근로자(현행 제도에서는 불법근로자일 가능성이 많음)의 문제임. 현재의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경직된 노동 고용 구조임. 노동시장 진입·퇴출(exit), 산업간 이동 등이 경직되어 있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속에서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으려면 각 노동시장 주체들이 시스템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의 기능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고용센터는 근로기준법 이외의 항목의 관리 감독에 의무를 지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Ⅶ. 개선안

○ 농업부문 노동력 고용의 문제는 농업노동시장의 미스매칭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의 이중노동시장 특성으로 인한 원활하지 않은 노동 공급 구조, 농작업의 특성(계절적 수요 편차)에 따른 노동시장의 특이성 등이 서로 맞물려 발생함.

16) <http://www.redian.org/archive/91749> 2017년 11월 3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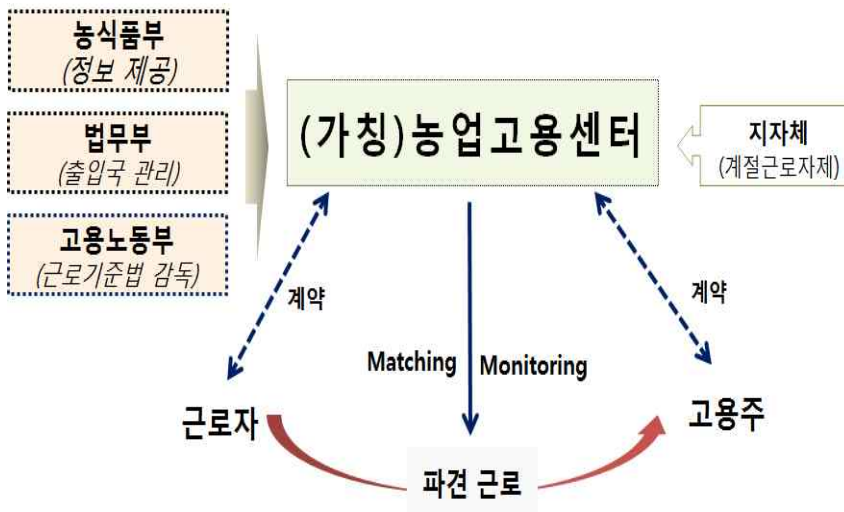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내국인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현상 완화 목적으로 시작됨.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경직적인 구조로써, 관리 감독의 기능이 충실하게 유지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주가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경우, 임시노동수요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용 노동수요에만 대응함. 물론 계절근로자제는 계절적인 노동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쿼터를 유지하고 있음.

○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쿼터를 유지하고, 관리·감독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부문 노동시장의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현재의 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그림 2>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체계 개선(안)



출처: 엄진영 외. 2017

○ (가칭)농업고용센터를 설치한다.

- (가칭) 농업고용센터의 주 역할은 첫째, 근로자와 고용주와 각각 계약하여 인력을 매칭함(Matching).
- 물론 이 기능이 가능하려면 법률 개정을 통해 농작업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해야 함. 또한 파견근로가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농업고용센터는 비영리단체(준 정부기관)형태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와 관련해서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의거 30여 업종에서 허용되지만 농업은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려면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함.
- 근로자 파견은 정규직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종사상 지위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으나 농업 노동시장에서는 상용직을 제외하고 장기 파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미 계절적 수요가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단위노동당 임금 측면에서 상용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농업부문 근로자 파견이 노동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낮추면서 노동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음 (김정섭 외, 2014:79).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리 감독의 부재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될 경우, 파견근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김정섭 외, 2014:80). 현실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 파견의 불법적인 요소를 낮추려면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 실현 가능한 방안은 행복사업권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2016년 기준 6개 권역에서 3년 사업기간동안 실시)의 확대된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 (가칭)농업고용센터의 근로자 매칭은 단순히 외국인만 아니라 내국인 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형태로 정하고 (가능하다면)파견근로 체계를 갖추. 단, 국내 노동시장 보호 원칙으로써, 내국인 고용 우선 원칙을 세움.
- 또한 각 지자체별로 품목과 계절적 또는 상용 노동 수요가 상이하므로, (가칭)농업 고용센터는 각 지자체별 또는 권역단위로 설치하고,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가칭)농업고용센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의 부담을 경감함.
- (가칭)농업고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 정부(농림부)가 농산업인력지원 센터를 지원하는 것처럼 사업기간동안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관련 예산확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 역할은 고용센터가 관리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이외의 노동환경 관련 사항에 관리·감독의 기능과 조정권한을 부여함. 특히 현행 제도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고용주 피해 발생 문제, 외국인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중재 및 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함(Monitoring).

- 세 번째 역할은 농협이 (가칭)농업고용센터 형태에 포함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임. 특히 고용주들의 형식적이고 점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률과 노무관리 등의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불법적인 사항을 최소화함.

○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력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에서 각 산업부문별 인력정책 방향과 장단기 인력 수급 상황, 산업의 특성을 논의한 후 각 부처의 합의에 따라 쿼터를 정하고 각 산업부문별로 쿼터를 배정함.

- 둘째, 현행 제도처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함.

○ 법무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농업부문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을 관리하며, 비자 체류와 관련한 업무와 권한을 가짐.

- 계절근로자제와 관련하여 인력배정위원회를 소집하며, 외국인력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농업부문의 인력정책 방향과 장단기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력 규모와 품목 등을 결정함.

○ 농림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농업부문 인력 수급 상황과 향후 인력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야 함. 지역별로 구체적인 작목과, 인력 고용시기, 필요인력 규모 등에 대한 현황과 자료를 구축해야 함. 나아가 농가의 인력 수급 구조와 고용 작동체계 등에 대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향후 외국인력 수급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는 내국인 고용문제, 그리고 일손부족 문제와 모두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임.

- 둘째,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 협조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함. 특히 고용주의 교육을 개선하고 강화함. 미국의 경우, 농림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또는 농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행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장기적 방향] 위에서 언급한대로 농업고용센터 및 각 부처의 역할이 원활히 작동하고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농업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타 국가처럼 보다 유연하게 농업노동시장 외국인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인력이 상용근로자로 고용되고 있는 타 산업부문과 달리 농업은 농번기에 일시적, 대규모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큼. 현재의 제도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이의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경직적인 구조임.
 - 게다가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다 채우지 못하는 인력부분은 외부로부터의 인력 공급이 필요한 부분으로써, 외국 인력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정섭·오내원·허주녕. 2014.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유찬희·엄진영. 2016. 『농업 고용 인력 실태 조사 및 수급 안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박민선. 2012.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농업전망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우병준·김윤진. 2017.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박준기·유찬희·김선웅. 2018.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이혜경·전용일·신영태·엄진영·송영호. 2018.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 한국이민학회.

고용노동부. 각 연도. 『고용허가제고용동향』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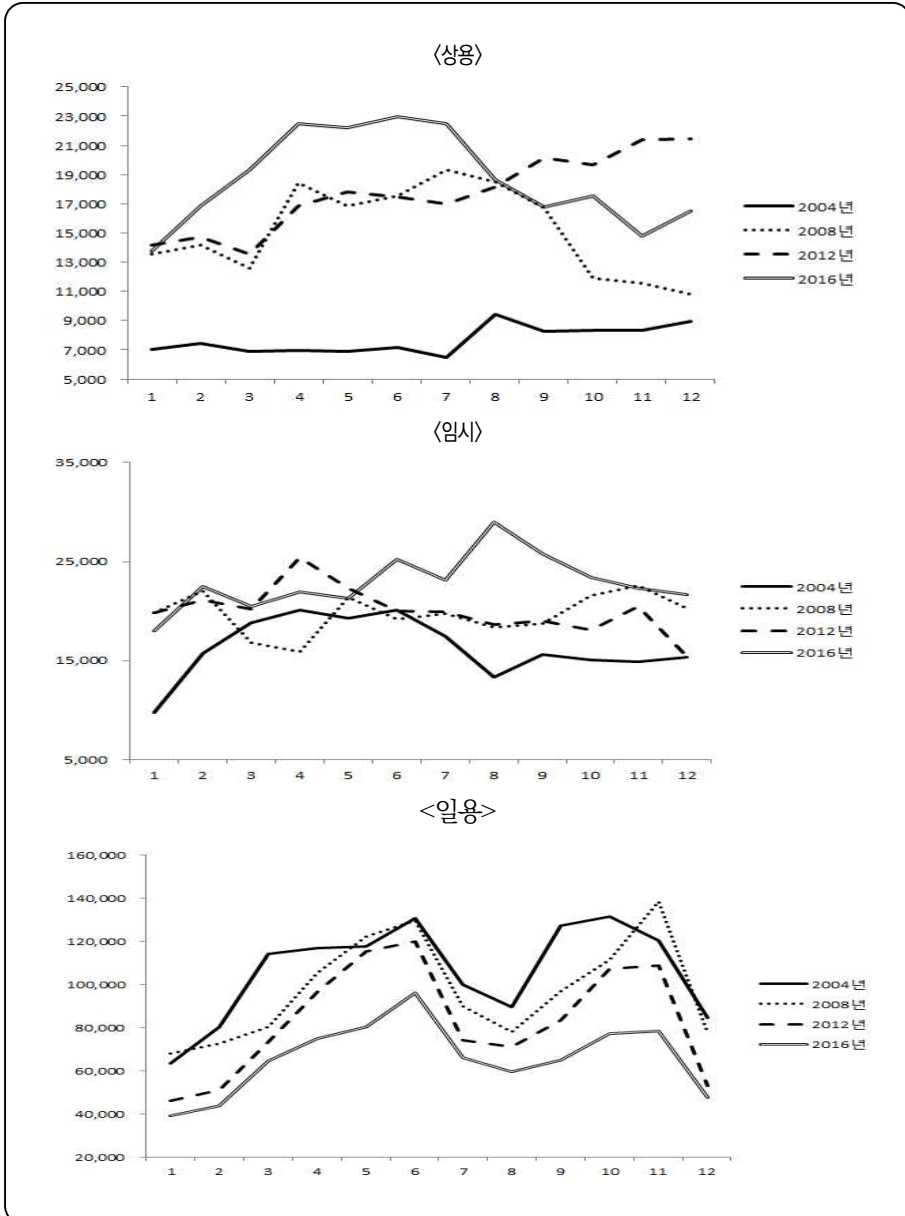
.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부록1. 종사상 지위별·월별 농업 부문 근로자 취업 규모

출처: 엄진영 외(2018:1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통계청.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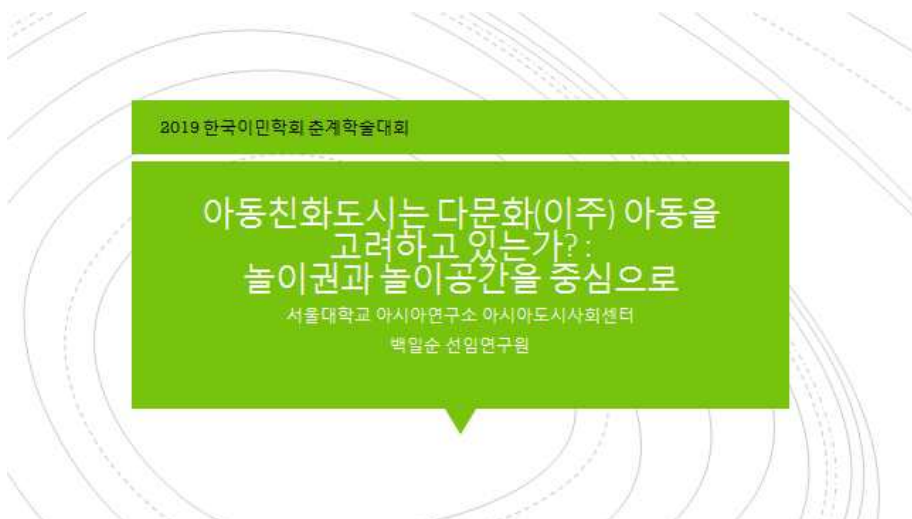


SESSION 5

아동친화도시는 다문화(이주)아동을 고려하고 있는가?: 놀이권과 놀이공간을 중심으로

백 일 순 (서울대학교)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78개 시·군·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유니세프의 인증절차를 거쳐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관인증을 받은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의 목표와 계획 내에 다문화(이주) 아동을 위한 세부 목표들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이주) 아동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권, 참여권, 보호권뿐만 아니라 놀이, 여가권에서도 여전히 다문화(이주) 아동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통합의 목표는 다문화(이주) 아동에서부터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선행연구

■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계획과 조성에 대한 연구

아동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가 다수. 아동 중심의 도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방안이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음(이태수, 2016; 서영미, 2018; 홍승애, 이재연, 2014 등)

■ 아동친화도시의 평가 지표 연구

현재 지정되어 있는 아동친화도시의 정책 달성도 평가 혹은 지정이 되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항목들의 지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Howard, 2006; Gearin, 2008; Woollock and Steele, 2008; 팔옥경 외, 2014; 최아수, 2018)

■ 행위결정자로서 아동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결정자로서 국가, 지자체 중심이 아닌 아동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사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Riggo, 2002; McAllister, 2008)

아동지리학과 놀이공간

■ 아동 지리학(Geographies of Children)

대부분의 학문들이 성인 중심(Adult-centered)의 행위자에만 주목해왔다는 점을 비판하고, 아동 중심(child-centred)의 공간적 사고가 국가, 민족과 같은 거시적인 스케일뿐만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 개인에 이르는 미시적 스케일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학문분과임(Philo and Smith, 2003; Holloway and Valentine, 2004; Weller, 2006; Skelton, 2009; Jeffrey, 2012)

■ 놀이공간(Playground)과 아동

학습권만큼이나 놀이나 여가권도 중요한 아동의 권리임. 지리학자들은 놀이가 아동의 삶과 사회-공간적 정체성, 물리적 실천의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Skelton, 2009). 특히 Valentine and McKendrick (1997)은 지역의 양육 문화가 자녀들의 장소 인식과 공간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해 지역사회-부모-아동 사이에서의 놀이공간이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공간 포용성 (Spatial Inclusion)

■ 포용 도시(박인권, 2015)



-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 : 포용 도시의 가장 기본 조건으로서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만한 공간'을 도시 내에서 갖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 약자들도 충분히 지를 가능한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태
-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공간 포용성의 함의



출처 : 인구총조사(2010)

한국의 아동친화도시 사례1:서울시 성북구

- 성북구, 전국 최초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OHL투데이 | 2011.12.15. | SEOH뉴스 | [기타](#)
/사진제공=성북구 News1 성북구(구청장 김명배)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구 의회를 통과한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로 및 교통, 공원...
- 성북구, 일교후 돌봄센터 설치 '전국 최초'**
연합뉴스 | 2012.02.08. | SEOH뉴스 | [기타](#)
일일할 성북구 아동권도 전립해 지역사회의 함께 어린이 안전함을 구축해 달 방침이다. 구는 불통센터 및 어린이 안전감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 성북구, 어린이 안전 도시 선결** 아시아경제 | 2012.02.15. | SEOH뉴스 | [기타](#)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2011.12)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친화적 무신당선을... 지역아동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한 결 심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성북구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으로...
- 김명배 성북구청장,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선결 노력으로 전수**
OHL투데이 | 2014.01.24. | SEOH뉴스 | [기타](#)
김명배 성북구청장이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선결 노력상을 수상하고 있다. 김명배 구청장 2월 서울시민청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선결' 노력상 소개 (김명배 성북구청장이 행정혁신 사례로서 전국 최초 '유네스코'...
- 성북구,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선결' 제정**
OHL투데이 | 2014.05.01. | SEOH뉴스 | [기타](#)
김명배 구청장은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내부 협정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예산 상에 아동친화도시의 대상 업무를 구분, 효율하게 되도록 아동권리법 제정까지 분석..."



조례에 보장된 '놀이 권리'와 결혼이주여성 자녀로서의 배제

- 2011년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2017년 개정안에서 아동의 '놀이 권리'를 조항에 삽입하는 것을 입법화함.

제3조 "놀이 권리"란 아들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 ① 구정장은 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정장은 아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들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는 '여성가족과' 담당이며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실시되고 있음.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 내에 다문화 아동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즉, 다문화 아들은 '결혼이주 여성' 정책 내에 포함되어 있음.

놀이 프로그램의 이원화와 참여의 방식에서의 차별



다문화 정류소 캠프 사업



한옥마을 만들기 놀이

*다문화 아동- 결혼이주여성 간의 연결관계

- 이러한 다문화 아동 놀이권의 부재는 '아동'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아동의 보호자인 이주 여성의 지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 진행중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대다수의 이주 여성들이 놀이터와 같은 공공 공간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자제하는데 자신의 등장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배제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임.
- 따라서 보호자 없이 놀이공간을 갈 수 없는 영·유아나 저학년 아동일수록 놀이공간에 대한 경험이나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국한된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제3의 정체성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고민함.
- 다문화 아동이 성장하여 초등 고학년, 중 고등학생이 된다고 해서 쉽게 놀이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린시절의 놀이공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더욱 놀이공간을 외면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이주)아동의
놀이 공간 지표 예시
(정성적 측면)

내용
1. 보호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놀이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쉬운가
2. 다양한 내, 외부에 간섭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인가
3. 놀이공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다문화 아동의 생활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가
4. 내, 외부의 위험, 위협(따돌림)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가
5. 놀이공간의 구성에 있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조성되었는가
6. 학교-여가-주거 공간에서 다문화(이주) 아동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는가
7. 해당 놀이공간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뒤섞여 놀 수 있는가
8. 지역 사회(주민)가 다문화(이주) 아동의 놀이공간 보장에 긍정적인가
9. 다문화(이주) 아동의 놀이 참여가 다른 아동의 다양성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가
10. 다문화(이주) 아동의 놀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혹은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결론: 놀이권을
부정당하는
다문화(이주)아동

- 존중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아동'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이주) 아동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학습권, 참여권, 보호권뿐만 아니라 놀이, 여가권에서도 여전히 다문화(이주) 아동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통합의 목표는 다문화(이주) 아동에서부터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특히 포용도시의 공간적 포용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 공간에 대한 다문화 아동의 선택이 자유로워질 때, 아래로부터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진전될 것임.

SESSION 5

이주배경 청년의 배움터를 거쳐 일터에서 겪은 경험

최 희 진 (서울대학교)

현대 이민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정점은 이민 2세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그에 따른 정치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대부분 언론과 정책입안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격차를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며,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부진’, ‘열등한 성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자녀교육에 신경을 못 쓴다’ 등 양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그들을 재단한다. 또한 ‘다문화’와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정치적 입장 혹은 관점이 작동한다. 지난 보수집권 정당에서는 온정주의적 시혜를 특징으로 하는 다문화 담론을 만들어냈으며, 타자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감춰 한국문화에 대한 우월한 민족주의를 내세웠다.¹⁾ 한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글로벌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중언어라는 언어적 능력, 문화적 습득과 적응력 등을 가진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게 되면, 이들을 국제 자본주의의 최전선에 서서 신자유 다문화주의 (“Neoliberal multiculturalism”)의 도구적 수단 혹은 다문화의 정치 슬로건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Pei-Chia Lan, 2018). 최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낙인, 편견을 갖게 하는 차별적,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있음을 파악해, 이 용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다.²⁾ 특히 현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넘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포괄적 범위를 설정하고, ‘사회통합’과 ‘포용사회,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포용사회’로의 지향점에 동의하지만,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존

1) 주간경향(2018.9.16.). “다문화 20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61038011

2)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다문화 개인 호칭 사용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진행(2019.05)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142958&type=m

재’로 간주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교육 현장과 노동시장에서 겪은 경험에 주목하고, 당사자성과 현장성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다.

2000년대 이후,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자녀, 새터민 등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린 연구들이 등장한다. 이주민 자녀에 주목한 연구는 ‘코시안³⁾’의 교육기회를 접근-경험-성취의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해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며, 특히 자녀의 취학 전후 단계에서 높은 중도탈락률과 낮은 학업 성취도를 지적한다(오성배, 2006). 이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의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이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및 난민 자녀의 증가와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제도가 예상하지 못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의 입양과 파양,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송효진 외, 2015).

최근 신윤정 외(2018)의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보고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을 세분화해 살펴보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취업 실태를 분석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외 거주 한국 이주배경 아동의 현황도 파악하였다. 이렇게 방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둔 보고서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적 대안도 탐색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주 배경 청년층과 내국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비교”와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 프로그램 관련 기관 담당자와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의 자료를 이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살핀다. 현재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연구자는 이주배경 청년과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진행할 것이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을 찾으면서, 수행하면서 겪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활동하는 사례(정현주, 2007)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생활(최병두, 2009)하는 공간적 특성과는 다른 측면과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3) 코리안(Korean)과 아시안(Asian)의 합성어, 코시안은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아시아계 외국인의 결혼을 통하여 출생한 2세를 일컫음(오성배, 200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자신이나 부모세대가 다른 사회에서 한국 사회로 이주를 경험한 복수의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청소년을 지칭하며,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신윤정 외, 2018).

-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 ② ‘결혼이민자 등’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중도입국 아동·청소년)
 - ③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 ④ 재외국민 아동·청소년
 - ⑤ 외국 국적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 ⑥ 재한외국인 아동·청소년
 - ⑦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 ⑧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 ⑨ 난민 지위 인정자 또는 난민 지위 인정 신청자 아동·청소년
- (유형별 아동·청소년은 다시 ① 국적(국민, 외국인), ② 체류 자격(합법, 비합법), ③ 현재 체류국(출신국, 도착국, 경유국), ④ 부모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7년 외국인주민수는 186만 명, 총인구 대비 3.6%이며, 60.3% 이상 수도권(경기 32.4%, 서울 22.2%, 인천 5.6%) 거주한다(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 중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222,455명에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자녀가 212,302명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2050년 다문화 인구 비중은 3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대한민국미래보고서, 2015; 양계민, 2019 재인용). 특히 양계민(2019)은 이들을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여기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권리의 측면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권과 생존 및 발달의 권리’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해외에서 논의되는 1.5세 논의와 맞닿아 있다. Danico(1998)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1.5세대가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ies)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하는데, “1.5세”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한 세대, 1세대와 2세대와 달리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bicultural and bilingual)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대학에 진학

한 멕시코인 1.5세가 주류에 대한 접근과 사회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1.5세에 관한 두 부류의 쟁점(“segmented assimilation” theory)으로 논의를 이어간다(Rojas-Garcia, 2013). 이 쟁점은 1)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자녀의 지위도 하향(downward assimilation)하거나 2)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기에 지위 향상(upward mobility)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Rojas-Garcia(2013)는 후자에 기반을 둔 논지를 펼치며 “glass-ceiling assimil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1.5세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뛰어넘을 수 있으나, 미등록 1.5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⁴⁾ 2002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미등록 이주자가 공립대학에 등록 가능(Assembly Bill 540 (AB 540))하기에, 법적 지위의 부족이 높은 성취를 막을 수 없지만, 대학 졸업장을 얻은 후 노동시장에 기회는 쉽게 얻기 힘들며, 여전히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1.5세를 권한은 부여되지만 배제된 자(“qualified but excluded”)라고 명명한다.

다시 한국 사례로 돌아가서, “이주 배경 청년층과 내국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비교”(신윤정 외, 2018)를 살펴본다. 2017년 5월 내국인 청년층의 고용률은 43.0%, 실업률은 9.2%이며, 같은 기간 이주배경 청년층 고용률은 48.9%, 실업률은 12.2%로 집계된다.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 산업분포별을 살펴보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40%로 내국인 청년층 17%보다 월등히 높다. 그리고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에서는 100만~200만 원이 5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00만~300만 원 32.6%이다. 내국인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00만~200만 원 67.2%, 200만~300만 원은 13.9%. 이는 이주 배경 청년층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더 높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 17명 중 대부분은 단순 노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17명 중 5명은 미등록 체류자, 8명은 시민, 4명은 영구 거주자로 체류 중(Rojas-Garcia, 2013).

<이주 배경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출처: 신윤정 외, 2018)>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전체	100.0	100.0
• 농림어업	7.7	6.9
• 제조업	41.0	40.3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51.3	52.8
- 건설업	3.3	1.8
- 도소매·음식숙박업	24.2	27.2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5	2.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1.3	21.7

자료: 1) 통계청, (2016b),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2) 통계청, (2017), 2017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청년층의 직업별 취업 분포(출처: 신윤정 외, 2018)>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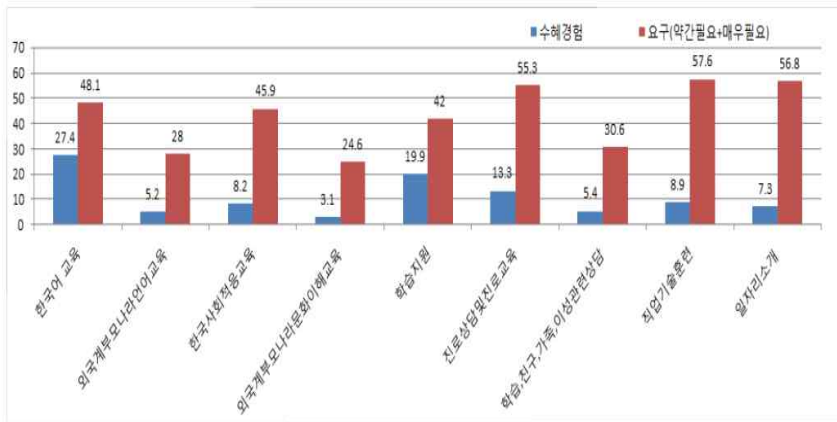
구분	2017. 5.		
	졸업·종퇴 취업자	구성비	전체 취업자 구성비
전체	3,286	100.0	100
• 농림어업	28	0.8	5.3
• 제조업	624	19.0	17.0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634	80.1	77.7
- 건설업	100	3.0	7.5
- 도소매·음식숙박업	803	24.4	22.5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363	41.5	36.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67	11.2	11.2

주: '전체 취업자 구성비'는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의 산업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2018), 2018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에서 인용.

이들의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실제 이용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인다. 기존 서비스의 공급 문제 이외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제도적, 실질적 접근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신윤정 외, 2018).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서비스 요구와 수혜 경험>

(단위: %)



자료: 정해숙 등. (2016).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pp. 482-498.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 프로그램 관련 기관 담당자와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진행한 자료(신윤정 외, 2018)를 살펴보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는 드물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움터 : 무지개청소년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드림교육센터, 다문화대안학교(폴리텍다솜학교, 서울다솜학교), 다누리(온라인)

한국 사회는 이중문화포용성을 가진 이주 배경 청소년을 취약집단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성장을 통해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은 미미한 실정, 오히려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지지, 사회적 능력, 긍정적 정체감을 강화,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최원희, 김영인, 2018). 또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사회에 부적응하고, 비행청소년, 취약집단으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기에 앞서, 내국인 청소년들과 같이 학교 적응력이 떨어질 수록 나쁜 문화에 쉽게 빠져들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이주 배경 아동 가정의 특수성인지, 한국 사회의 교육, 취업 구조 자체의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 배경 청소년을 특정 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전부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보편성과 이주 배경 청소년만의 고유한 특성과 여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정수정·최순중, 2015).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배경 청년들이 실제로 구직활동과 노동 현장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동과 사회적 차별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교육·노동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사강(2019).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관련 사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 김이선 외(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대한민국미래보고서(2015). 대한민국미래보고서. 국제미래학회. 교보문고.
- 박은혜·심혜선·마다마(2018). 이주배경 청소년의 눈을 통해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와 방법 - 포토보이스 방법의 적용 -. 한국가족복지학회 23(2), 283-313.
- 서덕희·조은혜(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성향과 그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217-247
- 송효진 외(2015).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5.
- 신윤정 외(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양계민(2019).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67
- 이혜숙(2015). 서울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서울연구원.
- 심영희(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장의 경험과 초국적 정체성 연구. 비교한국학 19(1), 7-44.
- 정수정·최순종(2015).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 26(3), 77-101.
- 정현주(2007). 공간의 뒤편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53-68.
- 최영미(2015). 독일 이주민 자녀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이주민 부모 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로. 다문화사회연구 8(1), 171-199

최원희·김영인(2018).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자산이 공동체주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문
화교류연구. 7(4), 153-178.

최병두(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19-343.

Danico, Mary Yu(1998). The Process of Becoming 1.5 Generation Korean American: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on ethnic ident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Pei-Chia Lan(2018). Raising global families : parenting, immigration, and class in Taiwan
and the U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Rojas-Garcia, Georgina(2013). Transitioning from school to work as a Mexican 1.5er:
upward mobility and glass-ceiling assimil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Californi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8.

경향신문(2012.06.02.). 밖으로 내몰리는 다문화 2세대...‘고교 졸업하면 불법체류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6021328341 (검색
일자: 2019.1.15.)

경향신문(2018.09.16.). 다문화 20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61038011 (검색
일자: 2019.1.15.)

경향신문(2018.12.31.). 독일로 갔던 젊음,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그들의 2세, 3세는 어
떤 모습?

http://www.khan.co.kr/allthataart/art_view.html?art_id=201812311136001 (검색일자:
2019.1.15.)

시사인 제246호(2012.06.08.), 다문화 2세의 분노가 터진다면, 이의현 (점프 대표)
<https://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0> (검색일자:
2019.1.15.)

육아신문 베이비뉴스(2018.08.24.). "이주배경 아동 한국 법령, 국제기준에 못 미쳐".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804> (검색일자: 2019.03.20.)

주간경향(2018.09.16.). “다문화 20대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9161038011 (검색일자:
2019.03.20.)

SESSION 6

초국적 연결망과 학생 이동성: 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을 중심으로

김도혜 (대구대학교) · 최희정 (전북대학교)

한국 정부가 200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위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유학생 인구는 해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학생 인구의 한국으로의 이동 과정에 주목하여 특정 지방 대학으로 중국을 제외한 특정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초국적 학생 이동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경상권에 위치한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특정 아시아 국가와 특정 지방 대학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면서 학생 이동성이 형성, 강화되는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초국적 학생 이동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한국 지방대학과 유학생 주체 양쪽 모두에 주목하여 각각의 주체가 형성하는 초국적 연결망이 특정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의 특정 지방대학으로의 초국적 이동성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기존 유학생 연구가 주로 “왜 유학을 선택하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미권으로의 유학에 주목하여 중산층 이상의 가계들이 유학을 통해 계급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선택한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유학 동기 연구에서 더 나아가 유학이라는 초국적 이동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대학 주체와 유학생 주체가 형성하는 초국적 연결망이 이동성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으로의 초국적 학생 이동성을 오늘날 한국 및 아시아 국가의 교육 환경, 한국 대학 시스템, 그리고 유학생 이주자 네트워크와의 연관관계로 읽어내고자 한다.

주제어: 학생 이동성, 초국적 연결망, 외국인 유학생, 지방 대학, 유학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580).

I. 들어가는 말

미얀마 출신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했고 현재 미얀마 대학에 재직 중인 차임은 면담을 위해 경북지역에 있는 미얀마 학생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미얀마 유학생들은 경북에 없다. 모두 C대학에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 대학 학부 과정에 있는 미얀마 학생 137명 가운데 18%가 C대학에 재학 중이고 나머지는 1-3명씩 전국의 대학에 흩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임은 이 같은 일종의 쏠림 현상이 C대학이 최근 몇 년 간 미얀마 현지에서 열리는 유학박람회에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박람회에 방문하는 미얀마 학생들이 박람회 현장에서 해당 대학 입학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하고 바로 유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얀마 출신 유학생들의 사례와 같이 특정 지방 대학으로 중국을 제외한 특정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에 주목한다.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 12,314명에서 2017년 123,858명으로 지난 15년간 열 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순수 학위 과정에 등록한 외국인의 경우도 같은 기간 7,981명에서 72,032명으로 거의 열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7년 현재, 중국 유학생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55%를 차지하여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중국 유학생의 비율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감소한 수치다. 2012-2017년, 중국 유학생 비율은 66%에서 55%로 감소하였고, 그 자리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메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11개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은 2012년 12,533명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 28,607명, 2018년 45,569명으로 지난 6년 동안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8년 전체 유학생 142,205명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 유학생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특정 대학, 특히 특정 지방 대학으로 “쏠리고” 있다.

이 연구는 경상권에 위치한 A 대학과 B 대학의 사례를 연구하여 특정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특정 지방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을 학생 이동성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정주 커뮤니티 연구를 통해 주로 인간 이동의 사회적 결과를 연구하는 기존 이주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뿐 아니라 아이디어와 사물의 움직임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이동의 시스템을 밝히고, 나아가 이러한 이동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함의들을 연구하는 것을 이동성(mobility) 연구라 할 때 본 연구는 이러한 이동성

의 관점에서 한국 지방대학으로의 이동성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대학 주체와 유학생 주체가 만들어내는 초국적 연결망에 주목하여 학생 이동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오늘날 한국으로의 학생 이동의 특질을 밝히고 그 사회적 함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분석의 대상이 된 A대학과 B대학 유학생 인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대학의 경우 2017년 현재, 전체 유학생 311명 가운데 50% 이상을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많아서 두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A 대학 유학생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 전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10명에 불과해 A 대학 유학생 중 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대학의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2017년 현재 B 대학 전체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30%, 베트남 출신이 27%, 몽골 출신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55%, 베트남 출신 12%, 몽골 출신이 4%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B 대학에는 베트남과 몽골 출신 유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출렁” 현상을 한국 지방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낳은 학생 이동성의 특질로 본다. 학생 충원율이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현실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생 충원이 쉽지 않은 지방 사립대학은 등록금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서도 경쟁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¹⁾ 또한 A 대학과 같이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학은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고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각종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관련 지표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학생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²⁾ 일선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와의 면담 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지의 유학원을 통해서 유치하는 방법과 유학 박람회를 통해 홍보, 유치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현지 대학, 현지 고등학교와 협약관계를 맺어 학생들을 한국으로 오도록 유도하거나 현지에 사무소나 거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직접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해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1) 매일경제. 2016. 7. 8일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7/491027/> (2019. 05. 28 접속)

2) 중앙일보. 2018. 10. 24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059047> (2019. 05. 28 접속)

투자를 할 것인가는 각 대학의 선택의 몫이다.

이런 현실에서 연구자가 인터뷰한 B대학 교수의 말처럼 “유학생 유치가 대학 재정
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존폐의 문제인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 특히
아직 한국 유학 시장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를 타깃으로 삼
아 접근하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 A 대학의 경우는 유학생 업무 담당자의 말처럼 “한
국의 지방 도시에 있지만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것이 설립 당시부터의 비전”이기 때
문에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해 한국의 다른 대학에서 이미 다 유치해 온 중국인 유
학생이 아니라 “자원이 많은 저개발국”이면서 한국으로 유학을 별로 오지 않고 있던
중앙아시아에 노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다. 즉, “쏠림”의 특징을 보이는 한국 지
방대학으로의 학생 이동은 “유치”에 사활을 건 지방 대학 주체의 적극적인 초국적
연결망 구성 행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초국적 학생 이동은 국가나 학교의 노력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Beech(2015)는 영국대학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유
학이라는 형태의 초국적 이주야말로 “자원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행위자
들의 집합체”(334)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이주를 추동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학을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간다면 어
느 나라, 어느 대학,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인지 이 모든 과정에 유학을 다녀와
본 혹은 유학 중에 있는 친구, 친척, 지인들의 정보, 조언, 독려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 대학이 초국적 이동의 “다리”를 건설하고 동시
에 이러한 “다리”가 유학생 주체가 구성하는 초국적 연결망과 만나면서 단단히 강화
되는 과정을 드러내어 한국 지방대학-특정 아시아 국가 사이의 초국적 학생 이동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밝힌다.

기존의 유학생 연구가 유학이라는 초국적 현상을 연구하면서 “왜” 유학을 선택하
는가(혹은 유학이 선택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로 노력해온 반면, “어떻
게” 이들이 이동하는 학생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Carlson 2013). 초국적 이동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이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
할 수 있게 루트를 만드는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Lindquist,
Xiang, and Yeoh 2012). Lindquist 외(2012)가 주장하였듯이 이 두 가지가 서로 대
립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님에도 기존 이주 연구에서는 이주자 네트워크와 에이전트

를 따로 분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학생 이동성 연구들도 이동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유학원과 같은 이주 에이전트에 초점을 맞추거나(Thieme 2017) 학생 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초점(Beech 2015)을 맞추는 등 분리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주 에이전트와 이주자 네트워크 둘 다에 주목하는데 특히 한국 지방대학의 이주 에이전트로서의 역할과 유학생이 만들어내고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사이의 상호 작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특정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특정 지방 대학으로 유학 오게 되는 이동의 과정을 살핀다. 이를 통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한국 지방 사립대학과 지방도시에 위치하지만 세계 속의 대학으로 거듭 나려는 지방 국립대학이 외국인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아직 한국 대학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유학에 관한 정보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를 타깃으로 삼아 초국적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을 밝힌다. 그리고 이렇게 국경을 건너 온 유학생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같은 국가 출신 청년들의 유학이 연쇄적으로 추동되는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학생 이동성을 교육 환경, 대학 시스템, 그리고 유학생 이주자 네트워크의 연관관계로 읽어내고자 한다.

II. 초국적 네트워크와 학생이동성

학생 이동성을 추동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학생 이주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의 도입을 구조적 요인으로 놓고, 해외 학위 취득을 통해 글로벌 취업 시장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학생 개인과 가족의 욕망을 행위자 요인으로 놓는 경향을 보인다(Altbach 2006; Altbach and Knight, 2007; Altbach and Teichler, 2001; Gürüz 2008; Rizvi 2011; Waters 2012).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도입과 함께 국가가 고등 교육에의 지원을 줄이게 되자 대학과 연구소들은 유학생 유치 및 교육 프로그램 수출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게 되었고, 고등교육의 목적과 가치에도 시장 경제 논리가 적용되어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Gürüz 2008; Rizvi 2011). 이러한 변화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중산층 이상의 가계에게 유학이라는 초국적 옵션을 통한 계급 재생산

을 모색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고 있다(Findlay, King, Smith, Geddes, and Skeldon 2012; Waters 2006; Ong 1999; Huang and Yeoh 2005; Waters 2012). 이 같은 관점은 글로벌 랭킹이 높은 영어권 고소득 국가의 “명문대학”으로 몰리는 학생 인구의 이동 경향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

한국의 맥락에서도 이 같은 분석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왔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대학의 국제화 지표 향상, 미래의 친한파 양성, 대학 진학생 수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적, 경제적 문제의 완화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와 한국 대학의 적극적 유치 전략의 결과로 인식되어 왔다(안영진·최병두 2008; 박소진 2013; 하연섭·이주현·신가희 2015). 또한 한국 정부와 대학뿐만 아니라 이주 동학의 주요 주체로서 유학생들이 왜 한국 대학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 왔는데 해외의 사례와 흡사하게 주로 경제적 동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져 왔다.

주로 한국 내 가장 규모가 큰 중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예를 들어 박소진(2013)과 안경주(2016)의 인류학적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의 역동적 동학을 살피면서 글로벌 교육 위계질서 상 다각화된 초국적 교육이주로서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현상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국, 캐나다 등의 영미권 국가로의 유학에 비해서 글로벌 대학 위계구조 속에서 한국 대학으로의 유학과 학위 취득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자본과 경제력을 가지고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초국적 교육 옵션으로 여기면서 한국 대학에서 받을 학위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영향, 한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국 내 한국 관련 네트워크의 증가 등의 동인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을 선택하며 한국어와 한국에서의 경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자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한국 학위가 발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며 중국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된다고 이 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 위계구조 속에서 한국 대학, 특히 지방 소재 대학이 점하고 있는 위치성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더해 유학의 동인으로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어떠한 다른 요인들이 지방도시로의 이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최근의 많은 유학생 연구들은 경제적 요인을 학생 이주를 추동하는 주된 구조적, 행위자적 요인으로 놓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 “비경제적 요인”에도 초점

을 맞출 것을 강조한다(Carlson 2013; Collins 2008; Perkins and Neumayer 2014). 즉 유학이 가져다 주는 교육의 경제적 보상 가능성 이외에 다른 역사,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학생 이주자의 유학 결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찾는 연구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일례로 Collins(2008)의 연구는 비경제적 요인들 중에서도 초국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 한인 유학생이 집중 유입되는 요인을 분석하면서 오클랜드의 한국인 커뮤니티, 유학원과 같은 에이전시 등 뉴질랜드와 한국을 잇는 초국적 사회경제 활동과 연결망이 학생이주를 추동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초국적 연결망의 역할을 강조하는 Collins(2008)의 연구에 기대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한국의 특정 지방 대학으로 특정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초국적 연결망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대학교가 직접 만들어내는 초국적 네트워크로 타국이 되는 국가에 직접 사무소를 건립하거나 타국 국가의 교육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만들어 내는 초국적 연결망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들어온 유학생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관계로서의 초국적 연결망이다. 경상권의 A 대학과 B 대학이 유학을 추동하는 주체로 특정 국가의 교육기관, 유학원, 혹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든 초국적 연결망과 유학생들이 본국의 친구와 가족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하는 초국적 네트워크가 특정 아시아 국가에서 A 대학과 B 대학으로의 학생 이주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으로의 유학이 선택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이 같은 접근은 유학의 목적과 방향이 다변화되고 있는 오늘날 유학의 다각화된 의미와 실제 학생 이동 과정에서의 특징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 과거 유학은 남반구에서 북반구, 특히 영어권 고소득 국가로의 이동으로 이해되었고 유학생은 국가나 대학의 지원을 받는 소수의 남반구 출신 엘리트들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유학 목적지는 훨씬 다양해졌고 유학 역시 소수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유학생은 각 대학의 치열한 “유치”의 대상이 된 자비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며 여러 사회계층에서 유학을 선택하는 대중형 유학의 형태를 띤다(안영진·최병두, 2008: 478; Kim 2015). 이 같은 상황에서 중산층 이상 학생들의 영미권 국가로의 유학을 주로 연구해 온 기존 유학 관련 연구들이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로 손꼽는 계급 재생산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의 유학에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전통적인 이주 목적국이

아닌 한국의 사례를 통해 다변화된 유학의 목적과 형태를 학생 이동성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드러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이 글은 특정 아시아 국가 유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상권 소재 A 국립 대학과 B 사립대학의 사례를 통해, 이들 대학에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아시아 국가 유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대학의 유학생 유치 전략과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A 대학과 B 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된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A대학에서의 연구는 2017년 2월과 9월 두 차례 연구자가 A대학을 방문하여 키르기스탄 출신 유학생 5명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2명과 만나 진행한 심층인터뷰와 유학생 유치 사업과 유학생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실무자 1명에 대한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A대학에서 유학생들은 모두 영어로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인터뷰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다. 유학생 인터뷰 대상자 모집은 A대학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과 교류가 있었던 교수의 소개와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이 다른 유학생들을 소개해주어 가능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A대학 유학생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학부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한국의 지방 소재 A대학으로 학부 유학을 오게 되는 과정에서 대학과 학생들이 구축해온 초국적 연결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B대학에서의 연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몽골출신 유학생 5명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 1명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B대학 유학생 담당자 2명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유학생 인터뷰 대상자 모집은 B대학의 몽골 유학생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학생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면담 대상자 역시 B대학 베트남 유학생 모임을 통해 소개받았다. 유학생 면담 대상자들은 각기 어학 연수 과정, 학부과정,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B대학에서 수학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재학 기간의 다양성은 유학 선택 과정의 변화를 보는 데 적합했다. 인터뷰는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었으나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미만의 몽골출신 어학연수생의 경우 인터뷰가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몽골어와 한국어를 능숙히 구사하

는 통역자를 대동하고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대학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는 두 차례 모두 유선 전화로 이루어졌다. A 대학과 B 대학에서의 인터뷰 모두 대체로 한 번에 1~2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모든 심층면접자료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여 녹취하였다.

IV. 초국적 네트워크와 한국 지방도시로의 유학

1. A 대학과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

유학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취업의 기회를 모색하려 한다는 기존의 연구가 보여준 유학의 동인들도 물론 학생들의 선택에 중요하지만, 그러한 동인들은 학생들이 한국 지방의 대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가도 좋겠다는 판단을 하도록 돕는 초국적 연결망 안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한국 지방의 공대 중심 국립대인 A 대학에 유학 온 중앙아시아 학생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학생 모집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중앙아시아의 학생들이 한국의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결정하는 데 A 대학과 유학생들이 만들어온 초국적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인터뷰에 참여한 7명의 중앙아시아 학생들(키르기스스탄 5명, 우즈베키스탄 2명) 중 6명이 한국의 A 대학으로 어떻게 유학을 오게 되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먼저 A 대학에 유학 온 선배, 친구들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 혹은 A 대학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 리쿠르팅을 위해 했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라고 대답했다. 물론 학생들은 본국에서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취업 기회를 모색하면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글로벌 욕망과 경제적 동인을 갖고, 외국 대학 학위가 귀국 후에도 취업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유학을 욕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재정적으로) 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유학 옵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³⁾ A대학에서 일정 기준 학점 이

3) 국민소득이 학생들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다 보여줄 수 없으며, 계층, 지역, 성별 등의 구분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국민소득)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할 때 재정적 제약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키르기스스탄은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1254 달러, 우즈베키스탄은 1326달러였고, 2018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만 2046달러였다.

상일 경우 제공하는 100% 학비 장학금과 매달 30만 원가량의 생활비, 그리고 영어로 진행되는 높은 교육 수준 등은 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되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유학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통로, 즉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학생들을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있는 A대학과 이어준 다리는 바로 학생들 사이의 그리고 A대학과 중앙아시아 교육협회와 고등학교가 맺고 있는 초국적 연결망이었다.

아래 두 개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먼저 학생들이 A 대학으로의 유학을 선택하는데 학생들의 초국적 관계망, 즉 먼저 A 대학으로 유학을 온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얻은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연구자: A 대학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안나4):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친구들 몇 명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자주 A 대학이 정말 좋고, 장학금 제도도 정말 좋고, 한국 사람들도 진짜 친절하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먼저 A대학으로 유학 온 친구들은 만약 제가 A대학으로 유학 오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A 대학으로의 유학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A 대학으로의 진학에 흥미가 생겼고 지원하게 되었죠. (인터뷰, 2017.09.15, 영어로 진행, 연구자가 한글로 번역)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안나는 친구들을 통해 A 대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장학금, 교육 수준,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A 대학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헬레나 역시 A 대학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을 통해 A 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헬레나: (...)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두 명의 남학생이 벌써 A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 그 선배들이 고등학교로 A 대학의 홍보 브로슈어, 입학 관련 정보 등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게시했고, 저는 그 자료들을 보고 A 대학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검색도 해보고 A 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2017.09.15, 영어로 진행, 연구자가 번역)

위의 두 학생의 이야기에서 먼저 A대학에 유학온 친구들, 선배들의 이야기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안나와 헬레나에게 한국의 지방

4) 이 글에 등장하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이다.

도시에서 있는 A 대학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국적 관계망을 통해 얻은 A 대학의 교육수준, 장학금 제도, 생활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해 안나와 헬레나는 재정적으로 가능하면서 자신들의 글로벌 교육, 유학에 대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경로로서 A 대학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또, 인터뷰에 응했던 학생들 중 몇몇은 한국의 다른 도시에 형제, 자매 혹은 친척, 친구 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들 모두 한국에서 유학을,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초국적 연결망 속에서 한국에 대해서, A 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A 대학으로 유학 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많은 학생들이 터키계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유학생들과 A 대학의 유학생 모집 담당 실무자의 설명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터키에 도움을 요청해서 터키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 학교를 만들어 주고, 터키 기업인들이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해주었던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1990년대부터 터키계 고등학교가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이고, 카자흐스탄의 KATEV(Kazakh-Turkish Educational Foundation)라는 교육재단에서 이러한 학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 소개했던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안나는 터키계 고등학교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엄청 크다고 말하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거의 모든 A 대학 학생들이 터키계 고등학교 학생이에요”라고 말했다.

명문 터키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A 대학으로 주로 진학한다는 것은 초국적 연결망이 학생들의 유학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더 강화시켜 준다. 터키계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A 대학 입학과 생활에 대한 정보 공유가 더 용이할 것이며, 카자흐스탄에서 29개의 터키계 고등학교를 포함 3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KATEV라는 교육재단은 A 대학과 과학교육분야 상호 업무교류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A 대학의 카자흐스탄 학생 유치활동을 위한 입학 설명회, 강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A 대학의 여름 과학 캠프 참여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7명의 학생들 중 3명이 A 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로 A 대학에서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학생 리쿠르팅 프리젠테이션을 꼽았다. 이러한 학생 유치를 위한 입학 설명회는 바로 A 대학과 KATEV라는 교육재단, 그리고 터키계 고등학교들 사이의 상호협력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 재단 등의 기관들 사이의 초국적 연계망 또한 학생들의 유학 결정에 주요한 동인으로 작동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에르킨과의 인터뷰 내용은 A 대학이 키르기스스탄의 터키계 고등학교와 쌓아온 네트워크, 그를 통한 현지 입학설명회가 A 대학으로의 지원 결정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르킨: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A 대학 분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A 대학을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A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었는데.. 유럽이나 터키.. 혹은 다른 나라로 지원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A 대학에 관한 설명회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A 대학에 지원했죠. (...) A 대학은 터키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선발했는데, 특히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터키계 고등학교가 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들에 속해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과학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러한 이유로 A 대학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겠지요. 그리고 A 대학이 그 터키계 고등학교들이랑 어떤 협약을 맺어서 서로 잘 알고 있고요. (...) (인터뷰, 2017.03, 영어로 진행, 연구자 번역)

에르킨의 이야기는 A 대학이 중앙아시아 현지의 교육 기관들과 만들어온 초국적 연결망,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한 현지 입학설명회를 통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이 A 대학의 교육과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학생 모집을 실제로 담당하며 매년 중앙아시아에서 학생 리쿠르팅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했던 실무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A 대학과 KATEV 교육재단, 또 각 고등학교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실무자 J는 A 대학교가 각종 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초기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주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이야기했다. 세계 여러 곳 중 중앙아시아 지역에 집중한 까닭은 2011년 당시 한국에 이미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던 나라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의도에서, 또 학생들과 한국에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자는 생각에서 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 중 특히 터키계 고등학교와 초국적 연결망을 구축해 왔는데, J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본 생각이 우리는 선발을 한다예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입학
을 시키는 것이다. 국내 학생도 입학을 시키는 것처럼 외국인 학생도 입학을 시
키는 것이니깐 이것은 선발을 해야하는 개념인 거죠. 가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지원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활동인 것이지 유치하기 위한 활동과 다르다는 것
이다. (...)그 나라에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되
니까, 제가 어느 나라를 가든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가요.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
한 학생이 다닌다라고 하는 학교에 가는 거죠. 일반학교는 안가는 거죠. 어차피
수업을 못 따라 오니깐...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다니는 학
교가 어딘지를 서치를 해서 학생을 만나는 거죠. (인터뷰, 2017.09.15.)⁵⁾

우수한 학생을 만나고 입학시키려는 A 대학의 초국적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실무
자 J는 “학생 뽑는 것은 사람의 관계인데 생판 모르는 한국에서 날라와서 ‘제가 A 대
학 입학 팀장이다’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하며 중앙아시아 현지의 기관, 사
람들과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오래 동안 노력해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처음이었죠. 제가 처음이었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던
키르기스탄을 가던, 터키를 가던...아시잖아요 이 나라들이 보면 대한민국 유학생
들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우리 학교를 방문한 대한민국 대학 관계자들 중에 처
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 말은 한국 대학들이 아무도 간 적이 없다...
아무 관심도 없고...

(신뢰를 쌓기 위해) 초창기에 제가 썼던 방법이 이 친구들에게 신뢰를 줘야겠다
고 생각해서 제가 첫 출장에서 당신도 우리 학교에 와봐라...해서 교장 10명을 초
대 했어요. 그래서 그 재단 교장들이 방문 했었고. 본인들도 눈으로 보니 신뢰가
쌓인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며 J는 매년 중앙아시아로 A 대학 리쿠르팅 설명회를 가서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A 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들의 적응과 생활을 위해 중앙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대부분 무슬림이라

5) A 대학의 실무자 J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는 말에 비판적이었지만, 이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학교를 알리기 위해 A 대학이 중앙아시아에서 초
국적 연결망을 구축해 온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A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별다른 선발 기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는 것을 고려해 기도실을 만들고, 학생식당에 할랄 음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학교와 기관 사이의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초국적 관계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알려지며 더욱 A 대학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들을 챙겨주는구나’ 하겠죠. ‘이곳은 가도 되겠구나’... 현지 교사와 부모들은 ‘보내도 되는구나’... 가 되는거죠. 그래서 제가 팀장할 때 같이 하던 직원하고도 그런 관계 많이 하죠. (중앙아시아 학교에)가면 (A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부모들이 와요. 그래서 애들 먹을 것 셔틀해주고. 이런 관계를 하는거죠. 우리 대학 관계자가 가면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책임지고 챙겨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예요. 외국인 재학생들에게도 ‘너희 나라 후배들이니까 너희가 책임져. 애가 적응 못하면 너희 책임이야.’ 라고 말해요.

J의 이야기는 A 대학 실무자들이 중앙아시아 현지의 교육 기관과 교육 담당자들, 부모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초국적 관계망이 중앙아시아 학생들이 한국의 경상지역에 위치한 A 대학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앙아시아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한국의 A 대학은 굉장히 낯설고 먼 곳이었지만, A 대학이 만들어진 초국적 관계망을 통해서 A 대학은 ‘가도 되고’ ‘보내도 되는’ 신뢰할 만한 곳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A 대학이 이러한 초국적 신뢰 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 기도실을 만들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재학생들에게 같은 국가 출신의 후배들의 적응을 도우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학교와 학생들이 만들어진 초국적 관계망이 학생 이주를 추동하는 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2. B대학과 몽골, 베트남 출신 유학생

B대학에는 한국 전체 유학생 통계와 비교했을 때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이 유독 많이 재학하고 있는데 B대학보다 유학생의 수가 월등히 많은 같은 지역의 타 4년제 대학과 비교해 보면 이런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 B대학보다 전체 유학생 수가 2배 많은 이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학생은 0.4%, 베트남 학생은 10%에 불과한 데

비해 B대학에서는 각각 17%, 27%를 차지하고 있다(2017년 현재). 이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대학이 몽골과 베트남에서 어떠한 초국적 연결망을 만들어 학생들의 유입을 주도해 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유입된 학생들 각자가 어떻게 연쇄적인 이주를 돕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B대학을 선택 가능한 가장 유력한 초국적 옵션으로 인지하는데 대학 스스로가 어떤 연결망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자. 현재 B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르반은 유학 10년 차의 몽골 출신 학생으로 인터뷰에 응한 6명의 학생들(몽골 5명, 베트남 1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에 발을 디딘 경우 중 하나이다. B대학 내에 몽골 유학생이 거의 없던 2009년 B대학을 선택해 유학을 오게 된 데에는 아르반이 재학 중이던 몽골 대학과 B대학이 그 몇 해 전 맺은 양해각서를 통한 협력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B대학에 온 것은 당시 우리 학교와 B대학이 뭘 맺었다는 (연구자: MOU요?) 네. 그걸 맺었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등록금이 20% 감면된다고 하더라고요, B대학에 입학하면. 영문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돈만 됐으면 물론 서양으로 유학을 갔겠죠. 당시에 한국은 일하러 가는 나라라는 이미지였는데 ‘아, 공부를 하러도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냥 당시에는 유학한다는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안 알아봤고. (인터뷰, 2019.01.07, 한국어로 진행)

일하러 가는 나라로 알고 있던 한국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등록금 감면 덕분에 우선 한두 학기 학비 정도는 마련해 볼 수 있으니 지금 형편으로도 큰 무리 없이 해외 학위를 딸 수 있는 대학으로 인지된 데에는 몽골 Y대학과 한국 B대학이 맺은 협력관계가 주효했다. 1990년대 시장경제 체제로의 개혁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취업시장에서 해외 학위의 가치가 몽골 대학 학위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한 아르반은 몽골 대학 4학년 재학 중 미련 없이 그만두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아르반의 1년 학교 선배인 에드텐 역시 자신이 다니던 몽골 Y대학이 B대학으로의 유학을 광고하는 것을 보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경우이다. 흥미로운 것은 아르반과 에드텐 모두 B대학 어학당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Y대학에 적지 않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점이다. 아르반은 몽골의 Y대학이 자기 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알선하면서 장사를 했다면 불만을 표하였다. B대학에 몽골학생들이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에는 B대학과 Y대학의 협력관계가

주요했으나 여기에 경제적 이익을 노린 몽골 Y대학의 적극적인 홍보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까지 더해져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B대학에 몽골학생들이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은 2007-8년 즈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수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2007년 고작 1명에 불과하던 몽골 유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데에는 B대학 스스로가 에이전트로 기능하면서부터이다. 2011년 몽골 수도에 상근 직원이 있는 유학을 위한 오피스를 개설한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몽골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 오피스를 통해서 B대학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아르반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여기 몽골학생이 유난히 많아요. (연구자: 왜 그런 거예요?) 현지 오피스 때문인 것 같아요. B대에서 운영하니까 수수료 없이 들어오고. 다들 여기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대학에서 직접 운영한다니까 더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터뷰, 2019.01.07, 한국어로 진행)

B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몽골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학교 차원의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몽골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시장이었고 이런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한국 대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었다. 인터뷰에 응한 몽골 학생들에 따르면 이 오피스는 B대학에서 실제 유학을 한 몽골 사람이 학교 소개를 담당하고 입학 서류, 비자 발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한국어 수업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 교육 기능과 비자업무 기능을 갖춘 대학의 입학처가 현지에 복제되어 설립된 셈이다. 어학당, 여행 에이전시, 유학 에이전시, 입학처의 다중 역할을 하는 학교 기관이 있기에 체책은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

엄마랑 같이 오피스 가봤을 때 분위기 좋았고 학교 장점 많이 이야기해 줬다...한국어 점수만 되면 무료로 학교도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왔다. 다른 학교는 알아보지도 않았다. (인터뷰, 2019. 2. 13, 몽골-한국어 통역으로 진행).

한국의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유학생 유치가 대학 생존 여부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해진 B 대학은⁶⁾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시장,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이처럼 오피스 건립이라는 직접 유치의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오피스가 몽골과 한국 대학을 중간자 없이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초단기간 안에 유학생이 국경을 넘어 지역의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오피스가 아니라 현지의 유학원과 협력관계를 맺어 다리를 형성하였다. 베트남 대학 3학년 재학 중 베트남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유학을 알아보았던 후이는 하노이에 있는 유학원을 통해 B대학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인데 베트남 현지의 유학원들이 특정 외국 대학들과 협약을 맺어 특정 대학으로의 유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유학원이 베트남 현지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B대학 입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입시 상담도 해주며 유학 에이전시이자 입학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B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초반 아직 한국 대학이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B대학은 베트남에 주목을 했고 현지의 팬층은 유학원들과 네트워크를 맺었기 때문에 베트남 유학생 수가 증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B대학으로 몽골과 베트남 학생들이 단기간 안에 대량 유입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이 만든 초국적 연결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B대학 담당자는 베트남 학생들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입소문”을 함께 꼽았다.

(우리가) 빨리 시작한 것이 있고 또 잘 케어한 것도 있고 또 졸업했던 학생들이 현지에서 자리잡았던 게 주효했죠.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많이 중요하니까. (인터뷰, 2019. 04. 24)

삼성의 베트남 진출과 함께 베트남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한 베트남 청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능통한 한국 유학파들이 많지 않았기에 베트남에서 B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을 구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소문을 들은 베트남 학생들이 B대학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B대학 관계자가 말한 “입소문”의 중요성은 유학 결정과정에서는 유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히 친구, 친척, 지인들의 정

6) B대학 담당자는 “유치”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주저하면서 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을 단순히 유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시선은 부당하다는 뉘앙스를 전달하였다. 외국인 학생들이 B대학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시피”라고 말을 흘리면서 재정적인 도움을 이야기하였다.

보, 조언 등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인터뷰에 참가한 몽골, 베트남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 유학생의 사회적 관계망이 어떻게 B대학과 현지를 바로 이어주는 다리로서 초국적 연결망을 구성하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첵에게 B대학 몽골 오피스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한국으로 유학 보낸 동료 교사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동료교사가 ‘우리 아들이 B대학에서 공부한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무소 통해서 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엄마와 사무소 찾아가 본거다(인터뷰, 2019. 02. 13. 몽골어-한국어 통역으로 진행).

몽골이 아닌 곳에서 대학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엄마가 동의를 한 뒤에는 주변에 유학을 보낸 혹은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수소문을 했고 그런 와중에 B대학 오피스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이 대학 오피스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니 큰 고민 없이 B대학으로의 유학을 결정한 것이다. 체첵이 엄마 동료교사의 소개로 B대학을 알게 된 것처럼, B대학 어학당에 들어오고 몇 달 뒤 체첵은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메신저를 통해 몽골에 남아있던 고등학교 동창의 메시지를 받고 B대학과 친구를 연결시켜주게 된다.

내가 여기 온 뒤에 그 친구가 연락 와서 ‘어떠냐’ 물어보길래 ‘괜찮다’ 그랬더니 개가 ‘알았다’ 그러더라. 그리고 한 달 만에 ‘나 간다’ 이렇게 연락오더니 바로 여기 어학당으로 들어왔다(인터뷰, 2019. 02. 13. 몽골어-한국어 통역으로 진행)

체첵의 이 고등학교 친구 역시 오피스를 통해 한 달 만에 B대학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처럼 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대학이 설립한 오피스와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며 몽골과 한국 대학 사이의 초국적 연결망이 유지, 강화되게 디딤돌 역할을 담당한다. 이뿐 아니라 이주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유학 에이전트로 역할하기도 하는데 특히 유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학생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유학원을 통해 B대학에 들어온 후이는 현재 본인 스스로가 유학 에이전트로 베트남 친구, 친척들의 소개를 받은 또래 학생들을 한국의 대학들과 연계시켜주고 있다.

유학원 통해서 들어오면 돈이 2배가 들어요. 온 뒤에도 도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돈 거의 안 받고, 오면 학생들 어떻게 한국어 공부하는지 어떻게 아르바이트 구하는지 다 알려줘요 (인터뷰, 2019. 03. 05. 한국어로 진행)

후이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벌써 20명 정도의 베트남 학생을 B대학 인근의 지방 대학들에 입학시켰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처럼 유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보제공, 대학의 초국적 연결망에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 스스로 연결망을 구성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결망은 유학생의 유학 생활 전반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원이 된다. 예를 들어 B대학에서 학부·석사·박사까지 10년째 공부하고 있는 아르반의 경우 현재 자신의 동생이 B대학의 같은 과 석사과정생으로 수학하고 있다. 동생의 B대학으로의 유학 결정에는 아르반 본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동생은 (몽골 대학) 학사 졸업 후에 법원에서 직원으로 일했는데 학력이 부족해서 검사가 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몽골대학 졸업보다는 외국 대학 졸업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10명 검사 뽑는다고 하면 10명 전부가 해외 학위자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와라’ 이래서 오게 했고 석사 들어가게 했어요. (인터뷰, 2019.01.07, 한국어로 진행)

이 때 아르반의 역할은 단순히 유학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서 B대학으로의 유학 전반의 과정을 검토하고 동생의 한국살이를 전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아르반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학부와 석사를 마치며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거주한 몽골 출신 유학생 에드덴 역시 동생이 B대학에서 함께 유학하고 있었고, B대학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 또 다른 몽골 출신 유학생 불간 역시 최근 동생의 한국 유학행을 결정지었다. 아르반은 이러한 가족 연쇄 유학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몽골 대학 학비도 갈수록 비싸져서 한국 유학 오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별로 차이도 없어요. 몽골 대학 나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외국에서 하는 게 취직하는데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나가 여기 있으니까 기왕 나가서 하는 거 여기서 하는 게 낫잖아요 (인터뷰, 2019.01.07, 한국어로 진행)

앞서 언급했듯이 유학이 더 이상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상황

에서 존폐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 (지방)대학들은 직접 초국적 연결망을 구성하며 더 많은 학생을 더 빨리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한국 대학의 현실과 몽골, 베트남의 대학 교육 및 취업 시장의 현실이 맞물리면서 유학생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한국 대학의 초국적 연결망과 함께(혹은 때로 연계하여) 외국 학생과 한국의 지방대학을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연결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리’들을 통해 B대학으로 몽골과 베트남 출신 학생들이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 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경상권의 A, B대학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특정 지방대학으로 중국을 제외한 특정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국적 학생 이동성 형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지방 대학과 유학생 주체가 만들어어나가는 초국적 연결망이 각기 어떻게 독자적으로, 혹은 때로 서로 연결되며 특정 지방 대학과 특정 아시아 국가를 직접적으로 잇는 다리를 건설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유학 연구들은 주로 영미권으로의 유학 집중 현상에 주목하며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유학생과 그 가족들의 계급 재생산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이 유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영미권의 대학들뿐 아니라 “변방”의 유학 목적국이었던 여러 나라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학은 더 이상 중산층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여러 사회계층에서 선택 가능한 “대중형 유학”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학이 가져다 줄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계산뿐 아니라 유학진행 과정의 편리성, 입학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유학 결정의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학의 목적과 유학 선택 과정에 대한 연구는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환경, 취업 현실 등이 맞물리면서 한국 지방 대학과 유학생이 만드는 초국적 연결망이 어떻게 특정 아시아 국가에서 특정 지방 대학으로의 학생 이동성을 구성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초국적 학생 이동성의 특징을 밝히고 특히 글로벌 대학 랭킹 시스템 안에서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국의 지방 대학들이 아시아 학생 이동의 목적지로 부상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으로의 초국적 학생 이동성의 특징을 밝히고 이 이동성 안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소진, 2013, “한국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한국문화인류학』 46(1):191-234.
- 안경주, 2016, “ 제한 중국 유학생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호혜성과 선물의 ‘문화적 하우(hau),” 『한국문화인류학』 49(3):183-227.
- 안영진·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476-491.
- 하연섭·이주현·신가희, 2015,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제적 효과 추정,” 『교육재정경제연구』 24(3):89-112.
- Altbach, Philip, 2006,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Reflections on policy and practice*. Chestnut Hill, Massachusetts.
- Altbach, Philip and Knight, Jane, 200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3-4): 290~305.
- Altbach, Philip and Teichler, Ulrich, 2001, “Internationalisation and exchanges in a globalized universit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5(1): 5~25.
- Beech, Suzanne, 2015,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the role of social networks,” *Social & Cultural Geography* 16(3): 332-350.
- Carlson, Sören, 2013, “Becoming a mobile student: a processual perspective on German degree student mobility,” *Population, Space & Place* 19: 168~180.
- Collins, Fleo, 2008, “Bridges to learning: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ies, education agencies and inter-personal networks,” *Global Networks* 8(4): 398~417.
- Findlay, Allan, King, Russell, Smith, Fiona, Geddes, Alistair, and Skeldon,

- Ronald, 2012, “World class? An investigation of globalisation, difference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7: 118~131.
- Gürüz, Kemal, 2008, *Higher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uang, Shirlena, and Yeoh, Brenda, 2005,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China’s ‘study mothers’ in Singapore,” *Global Networks* 5(4): 379~400.
- Kim, Jeehun, 2015, “The ‘Other Half’ Goes Abroad: The Perils of Public Schooling in Singapore,” in Adrienne Lo, Nancy Abelmann, Soo Ah Kwon, and Sumie Okazaki (eds.), *South Korea’s Education Exodus: The Life and Times of Study Abroad*, Seattle and London: A Center for Korea Studies Public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 103-124.
- Lindquist, Johan, Xiang, Biao and Yeoh, Brenda, 2012, “Introduction: Opening the Black Box of Migration: Brokers, the Organization of Transnational Mobility and the Changing Political Economy in Asia,” *Pacific Affairs* 85(1): 7-19.
- Ong, Aihwa, 1999, *Flexible Citizenship: The Cultural Logics of Transnationa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erkins, Richard and Neumayer, Eric, 2014, “Geographies of educational mobilities: Exploring the uneven flow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Geographical Journal* 180(3): 246~259.
- Rizvi, Fazal, 2011, “Theorizing student mobility in an era of globalization,”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7(6): 693~701.
- Thieme, Susan. 2017. Educational consultants in Nepal: professionalization of services for students who want to study abroad. *Mobilities*, 12(2), 243-258.
- Waters, Johanna, 2006, “Geographies of cultural capital: educ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family strategies between Hong Kong

and Canad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1(2): 217~237.

_____ 2012. “Geographies of international education: mobilities and the reproduction of social (dis)advantage,” *Geography Compass* 6: 123~136.

<자료>

『매일경제』, 2016. 7. 8일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7/491027/>

『중앙일보』, 2018. 10. 24일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059047>

Transnational Network and Student Mobility: Educational Migration to Korean Provincial Universitie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its ‘Study Korea Project’ in 2005 to pull more international students to Korean institu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r nationals from various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provinci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national student mobility.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A and B universities located in Kyungsang Province, we aim to show the processes of constructing the “bridges” between particular Asian countries and particular provincial universities in Korea, as a way to create and strengthen student mobility. This study gives attention to the both actors in this process of bridge building – Korean universities and students from Asian countries, and argue that the transnational network they have made spurred student mobility from particular Asian countries to particular Korean provincial universities. Previous stud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mainly dealt with educational migration to English speaking European/North American countries, and argued that study abroad is a strategy for class reproduction among the rich. This study tries to go beyond this “why” question regarding study abroa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ts economic motivation, and it aims to reveal “how” the transnational mobility of study abroad has been made. Analyzing the process of forming and strengthening transnational mobility in virtue of transnational network constructed by the universities and students, we understand the transnational student mobility from Asian countries to South Korean provincial universities as a result of the relation among educational environment in Korea and sending countries, Korean university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students’ social network.

Key Words: Transnational Network, Student Mobility, Study Abroad, International Students, Provincial University

SESSION 6

한국 내 인도출신 연구자의 노동 경험:

노마드성 인재인가 불안정한 노동자인가?

현 채 민 (성균관대학교) · 이 상 지 (서울대학교)

한국 정부가 2005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위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유학생 인구는 해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학생 인구의 한국으로의 이동 과정에 주목하여 특정 지방 대학으로 중국을 제외한 특정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초국적 학생 이동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경성권에 위치한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특정 아시아 국가와 특정 지방 대학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면서 학생 이동성이 형성, 강화되는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초국적 학생 이동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한국 지방대학과 유학생 주체 양쪽 모두에 주목하여 각각의 주체가 형성하는 초국적 연결망이 특정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의 특정 지방대학으로의 초국적 이동성을 구성하게 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기존 유학생 연구가 주로 “왜 유학을 선택하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미권으로의 유학에 주목하여 중산층 이상의 가계들이 유학을 통해 계급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선택한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유학 동기 연구에서 더 나아가 유학이라는 초국적 이동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대학 주체와 유학생 주체가 형성하는 초국적 연결망이 이동성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으로의 초국적 학생 이동성을 오늘날 한국 및 아시아 국가의 교육 환경, 한국 대학 시스템, 그리고 유학생 이주자 네트워크와의 연관관계로 읽어내고자 한다.

주제어: 학생 이동성, 초국적 연결망, 외국인 유학생, 지방 대학, 유학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580).

한국 내 인도출신 연구자의 노동경험: 노마드성 인재인가 불안정한 노동자인가?

현채민(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상지(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목 차

1

연구배경

2

개념적 정의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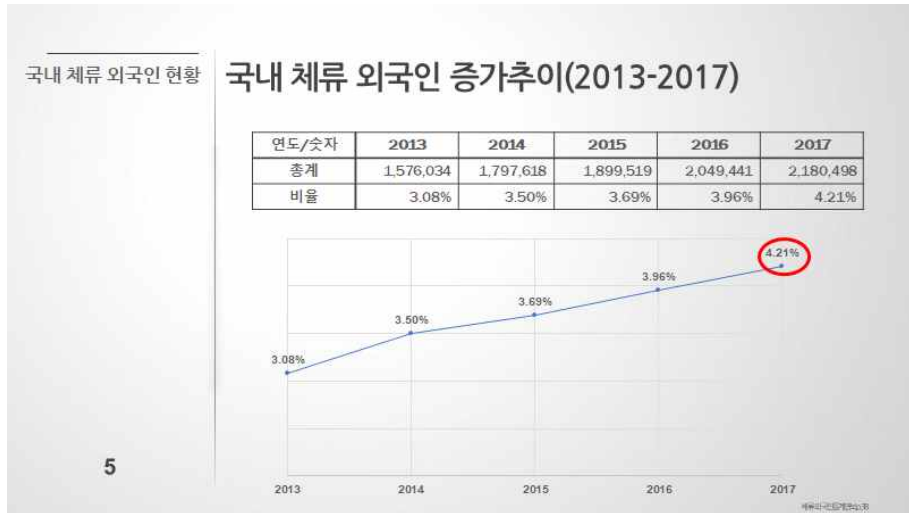
연구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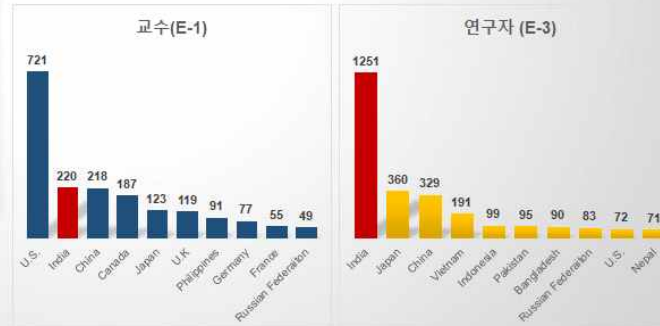
외국인 거주자의 급속한 증가

-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7년 12월 기준, 한국 내 체류외국인 수는 약 21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21%를 차지함



인도 출신 외국인 현황

국적별 교수 (E-1) 및 연구자(E-3) 비자 소지자 수



7

정부의 전문인력 정책

정부의 전문인력 정책

-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
- 한국 정부 역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가족 재결합, 영주권 제공 등의 혜택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고자 함



8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2010년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발효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확대됨



9

2

불안정 노동의 개념적 정의와 차원

개념적 정의

불안정 노동의 개념

- 불안정 노동의 다양한 개념정의 및 차원
 -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이라는 용어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
예) 비표준 고용(non-standard employment), 비정형 고용(atypical employment), 비정규노동(contingent work)
 -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불안정 노동이란 "고용주가 위험과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수단이자 공식/비공식 경제에서 수행되는 업무로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객관적(법적지위) 및 주관적(감정) 특성의 다양한 수준과 정도를 특징'으로 함
 - Kalleberg, 2009 "고용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위험한 상태"로 정의
 - Vosko, 2010는 불안정 노동의 특성을
1) 고용의 확실성 2) 보호 규제, 3) 노동과정의 통제 4) 소득의 적절성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

출처: ILO 2011,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p.5.
김종만, 2015, '불안정 노동(非正規)의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 p.4.

외국인
전문인력



불안정한 노동자?

1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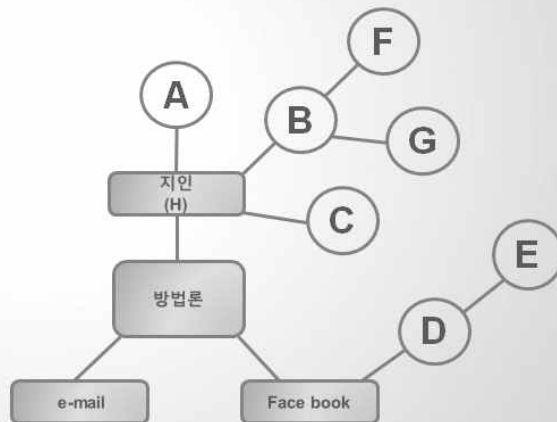
- 한국 내 인도출신 박사 후 연구원들의 지위는 어떠한가?
- 인도출신 박사후 연구원들이 한국에 정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선택인가?

11

3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모집방법

13



연구참여자 특성

1. 연구참여자

이름	학교 위치	연령	성별	비자	혼인상태	박사 학위를 받은 국가	한국 입국년도
A	경기	1986.32	남성	E-3	O	인도	2015
B	서울	1986.32	남성	E-3	O	인도	2017
C	서울	1983.35	남성	E-3	O	인도	2011
D	서울	1985.33	남성	E-3	O	일본	2016
E	서울	1983.35	남성	E-3	O	인도	2011
F	서울	1985.33	남성	E-3	X	한국	2013
G	서울	1990.28	남성	E-3	X	인도	2018
H	서울	1981.37	남성	E-1	X	인도	2013

14

2. 방법론: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뷰 시행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주경로

15



4

연구결과

연구결과 요약

18

배출요인

- 기회 부족
- 공급 과잉
- 연구비 및 연구 인프라 부족
- 해외에서의 박사 후 연구원 경험 필요

흡입요인

- 한국 교수로부터 노동허가 발급이 왔기때문.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음
(한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지 않음)
- 교수의 능력 및 명성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는가?

- 계약 과정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설명 없이 계약서에서명)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개인적 문제는 스스로 감당해야함
- 새로운 곳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문제
-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일할수 있다고 생각함

언제 그리고 왜 그들은 떠나는가?

- 한국 체류에 대한 계약 ->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 있음
- 자녀 교육 등과 같은 가족 구성원 문제 ->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 한국은 단순히 경험을 쌓기위한 장소

왜 인도를 떠나는가?

1. 인도를 떠나는 이유? (배출 요인)

- 기회 부족
- 공급 과잉
- 연구비 및 연구 인프라 부족
- 해외에서의 박사 후 연구원 경험 필요

"Indian job market is very limited. Especially, now who are doing like Ph.D and more than that like post doctor. Then industry job is very limited in India." (C)

"There is too much competition. Funding is a problem, and most important is competition. There are so many candidate for the same position." (D)

"The facility is good then India. Because we cannot get that much facility India, so we have to move in other city like that. But here we can get all the facilities in one place like that. That facility is available here, so that is why I want get experience and I want go back."(A)

19

왜 한국으로 오는가?

2) 한국으로 오는 이유? (흡입요인)

- 한국 교수로부터 노동허가에 대한 답장이 왔기 때문.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음 (한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지 않음)
- 교수의 능력 및 명성

"(the professor) gave me the job position that's why I came" (A)

"This (Professor's reply) was actually very fast.
So he selected and he just asked me to come." (D)

20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는가?

3) 한국 입국 과정

- 계약 과정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설명 없이 계약서에 서명)

"That is one difficulty I faced. We could not understand what is written. We just only sign. Nobody also explain. Why that much amount getting less or something. There is no such rule to understand. " (A)

Q: You didn't get the contract paper?

G : No. I signed it, but I asked her, give one copy but that time she told after sign some professor, after that I will give you. (G)

21

노동 지속 요인은
무엇인가?

4) 한국에서 일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열악한 노동조건

- 높은 노동강도
- 불안정한 노동조건 → 불안정한 체류자격

Why do they continue to work

- **Personal problem should endure by my self**

What is beside me, what is available, I work according to my own things. So if you asked me, I should able to give same result, if I'm in Korea, or if I'm in India. It depends on me. study or anything. So I won't, I won't any excuse, what do you call, any reasoning, that ways not good, that ways are not. **Finally depend on me and I realize it after coming here.** (D)

22

노동 지속 요인은
무엇인가?

-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 그들이 원할 때 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

Because if I go to other country then I have to match that situation and that environment to take again, sometimes, it's better to stay here only and continue the Work (G, less than 1year)

23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언제 그리고 왜 한국을 떠나는가?

- 한국 체류권리> 전적으로 고용주(교수)에게 달려있음

Q : Is it extend your contract like 4 or 5 years?
 A : Actually, that is not officially he said, if you want to stay here~
 Q: What if you want to stay Korea more, but the professor could not hire you cause of financial problem?
 A : Then I don't know. (B)

24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자녀 교육 등과 같은 가족구성원들의 체류 문제 ->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Nowadays India, India is big country different district, different languages so most of school use English. This is basic problem. That is why they are avoid to stay for longer time. if they have a job like secure job like 10 years or 15 years, then they can send the children Korean school, because they can send Korea school they can survive, they can stay here like what if you have 5 year 6 year plan, just start your kid, maybe to the age of 6 plus, graduate school, and then you teach to the English. Very difficult for me. This is the problem. (E)

Because my family and everything is in India and secondly in the future because in Korea English is not that much popular language(lots of communication problem), may be in the future we have a baby. He or she will have problem for the study. So that is one of the reason. (A)

25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은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한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Secondly, we have family, have to go back. Because we cannot stay outside India for long. Just get the experience and go back (A)

I am planning to have more post-doc. And then I go back to in India. I don't have any plan to settle down anywhere. I will go back to India. My plan is just to make my CV strong, like getting some better experience and exposure, from better labs, that's it. (D)

26

5

결론

결론 28	• 한국내 체류하고 있는 인도 출신 연구자(박사 후 연구원)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로 정책적으로도 유입을 장려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임 •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인도를 떠나 한국으로 들어온 박사 후 연구원들은 노동계약과정에서부터 연장, 체류과정 전반에 걸쳐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함 - 짧은 계약기간은 언제 실직이 될지 모르는 위험과 이로 인해 한국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장기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체류 권리를 제한함 • 본국에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경험을 쌓는 곳으로 한국을 선택했지만, 이와 함께 불안정한 노동 및 체류조건은 한국에서의 정착 보다는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들은 불안정한 노동자가 되어 한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음
---	---

차후 연구 계획 29	차후 연구 계획 • 정책, 고용 및 사회 환경과 같은 다양한 측면과 차원에서 한국에 정착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자세히 연구하고자 함 • (정책) 장기 체류자격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검토 (인도 출신 박사 후 연구원들이 충족하기에 어려운 기준들이 있음) • (노동 환경)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한 검토 - 단기적인 계약기간으로 인해 가족과 동반한 이들의 경우 국내에서 장기적인 미래설계를 하기 어려움 -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장기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도 존재 • (사회 환경) 은행 업무, 집 계약, 차별 등과 같은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파악
---	---

THANK YOU!

현재민

chaeminism@gmail.com

이상지

lsj4482@hanmail.net

